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131-01

# 2013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14개 가공식품 36종 식품유형



인도네시아

농림축산식품자료실



0000744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Contents

## 목 차

조사요약 .....	1
일러두기 .....	3
<b>제 1 장 서 론 .....</b>	<b>9</b>
<b>제1절 조사 필요성 및 목적 .....</b>	<b>11</b>
1. 조사 필요성 .....	11
2. 조사 목적 .....	11
3. 기대 효과 .....	12
<b>제2절 조사 내용 및 방법 .....</b>	<b>13</b>
1.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 .....	13
2. 가공식품 교역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	13
3.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법규 정보수집 .....	14
4.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 .....	14
<b>제 2 장 조사 수행내용 및 결과 .....</b>	<b>15</b>
<b>제1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 .....</b>	<b>17</b>
<b>제2절 가공식품 교역현황 .....</b>	<b>19</b>
1. 수출입 동향 .....	19
<b>제3절 수입식품 관리제도 .....</b>	<b>33</b>
1. 수입검사제도 .....	33
2. 수입규제제도 .....	64



# Contents

## 목 차

<b>제4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b> .....	<b>113</b>
1. 식품분류와 기준 및 규격 .....	113
2.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정의 .....	130
3.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및 금지첨가물 Data Base 구축 .....	155
<b>제5절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조사</b> .....	<b>157</b>
1.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	157
<b>제6절 식품안전관련 사건·사고</b> .....	<b>157</b>
1.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건 발생 사례 .....	157
2. 식품안전정보 조사 .....	160
<b>제7절 가공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 및 첨가물 관련 Q&amp;A</b> ...	<b>161</b>
1. 수출 시 유의사항 .....	161
2. 첨가물 관련 Q&A .....	162

### [부록]

1. 조사대상 가공식품의 선정기준 .....	163
2.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도 .....	169
3. 가공식품등록 규정 .....	173
4. 가공식품등록절차 규정 .....	189
5. 가공식품수입감독 규정 .....	201
6. 수입제품검사 규정 .....	209
7. 라벨 영양표시 안내 .....	229
8. ML 등록안내서 .....	233
9. 할랄 인증기관 MUI 소개서 .....	237
10. 수입식품관련 규정(인니어) 링크 .....	247



# Contents

## 표 목 차

【표 2-1】	1차 선정 조사 대상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	17
【표 2-2】	조사 대상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	18
【표 2-3】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2003~2012년)	20
【표 2-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유형별 수출입 동향 (2009~2012년)	22
【표 2-5】	과자류 수출입 동향	24
【표 2-6】	빵 또는 떡류 수출입 동향	25
【표 2-7】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수출입 동향	25
【표 2-8】	식용유지류 수출입 동향	26
【표 2-9】	면류 수출입 동향	27
【표 2-10】	다류 수출입 동향	27
【표 2-11】	커피 수출입 동향	28
【표 2-12】	음료류 수출입 동향	28
【표 2-13】	장류 수출입 동향	29
【표 2-14】	조미식품 수출입 동향	30
【표 2-15】	김치류 수출입 동향	30
【표 2-16】	주류 수출입 동향	31
【표 2-17】	기타식품류 수출입 동향	32
【표 2-18】	유가공품 수출입 동향	32
【표 2-19】	식품 수입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인증서	42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50
【표 2-21】	식품 영양 라벨	82
【표 2-22】	라벨링 영양정보 표기 (세로)	83
【표 2-23】	라벨링 영양정보 중 인분(人分) 표시 규정	85
【표 2-24】	열량 표시 규정	86
【표 2-25】	지방 표시 규정	86
【표 2-26】	나트륨 표시 규정	87
【표 2-27】	클레스테롤 표시 규정	88





# Contents

## 표 목 차

【표 2-28】	식이섬유 표시 규정 .....	89
【표 2-29】	비타민 A 일일 섭취 권장량 표시 규정 .....	89
【표 2-30】	라벨 작성 시 특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	90
【표 2-31】	라벨링 영양정보 표기 .....	91
【표 2-32】	라벨링 영양정보 표기 (가로) .....	93
【표 2-33】	라벨링 영양정보 표기 (나열식) .....	93
【표 2-34】	영양정보 미표시 라벨 .....	93
【표 2-35】	분유용 라벨 서식 .....	94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	98
【표 2-37】	식품분류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	113
【표 2-38】	한국의 식품유형에 따른 인도네시아 식품분류표 .....	114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	117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	135
【표 2-41】	식품의 비소 기준 .....	147
【표 2-42】	식품의 카드뮴(Cd) 기준 .....	148
【표 2-43】	식품의 수은(Hg) 기준 .....	149
【표 2-44】	식품의 주석(Sn) 기준 .....	150
【표 2-45】	식품의 납(Pb) 기준 .....	150
【표 2-46】	식품의 Aflatoxin 기준 .....	152
【표 2-47】	식품의 Deoxinivalenol 기준 .....	152
【표 2-48】	식품의 Fumonisin B <sub>1</sub> + B <sub>2</sub> 기준 .....	153
【표 2-49】	식품의 Ochratoxin A 기준 .....	153
【표 2-50】	식품의 Patulin 기준 .....	153
【표 2-51】	식품의 Benzopiren 기준 .....	154
【표 2-52】	식품의 Dioxin (2,3,7,8-TCDD) 기준 .....	154
【표 2-53】	식품의 1,3-Dichloropropan-2-ol (1,3-DCP) 기준 .....	155
【표 2-54】	식품의 3-Monochloropropan-1,2-diol (3-MCPD) 기준 ..	155
【표 2-55】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관련 사건·사고 .....	159



# Contents

## 그림 목 차

【그림 1-1】	조사 목적 및 개요 .....	12
【그림 2-1】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2003~2012년) .....	21
【그림 2-2】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2003~2012년) .....	21
【그림 2-3】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출 비중(2012년) .....	23
【그림 2-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입 비중(2012년) .....	23
【그림 2-5】	식품 수입증명서 신청 절차 .....	44
【그림 2-6】	수입식품 통관 절차 .....	61
【그림 2-7】	과자류-과자 표시사항 예시 .....	66
【그림 2-8】	과자류-캔디 표시사항 예시 .....	66
【그림 2-9】	과자류-초코릿가공품 표시사항 예시 .....	67
【그림 2-10】	과자류-껌 표시사항 예시 .....	68
【그림 2-11】	식용유지류-콩기름 표시사항 예시 .....	69
【그림 2-12】	식용유지류-참기름 표시사항 예시 .....	70
【그림 2-13】	면류-국수 표시사항 예시 .....	70
【그림 2-14】	면류-당면 표시사항 예시 .....	71
【그림 2-15】	면류-인스턴트면 표시사항 예시 .....	71
【그림 2-16】	다류-침출차 표시사항 예시 .....	72
【그림 2-17】	다류-액상차 표시사항 예시 .....	73
【그림 2-18】	커피-조제커피 표시사항 예시 .....	73
【그림 2-19】	커피-액상커피 표시사항 예시 .....	74
【그림 2-20】	음료류-과일주스 표시사항 예시 .....	74
【그림 2-21】	음료류-과채주스 표시사항 예시 .....	75
【그림 2-22】	음료류-녹두음료 표시사항 예시 .....	76



# Contents

## 그림 목 차

【그림 2-23】	음료류-인삼음료 표시사항 예시 .....	77
【그림 2-24】	장류-된장 표시사항 예시 .....	78
【그림 2-25】	장류-고추장 표시사항 예시 .....	78
【그림 2-26】	조미식품-소스류 표시사항 예시 .....	79
【그림 2-27】	주류-탁주 표시사항 예시 .....	79
【그림 2-28】	주류-맥주 표시사항 예시 .....	80
【그림 2-29】	기타식품류-조미김 표시사항 예시 .....	80
【그림 2-30】	기타식품류-즉석섭취식품 표시사항 예시 .....	81
【그림 2-31】	유가공품-크림치즈 표시사항 예시 .....	81
【그림 2-32】	유기농 식품 로고 .....	96



## 조사 요약

대 인도네시아 총 수출액 중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규모는 1.1%인 1억 5,100만 달러로 2003년 이후로 세계 금융위기에도 변함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출은 중량이 6.7%, 금액은 16.6%씩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중량이 3.9%, 금액은 10%씩 증가하였다. 10년 전인 2003년보다 총 수출액이 약 4배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한국문화 열풍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한국 농림수산물 수출은 앞으로도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식품의 유형 분류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며, 해당 내용에 따라 식약청 산하기관에서 주관한다. 관련 규정이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인도네시아에 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각 제품별로 인도네시아 식품 유형 분류와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확인해 적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은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제정한 인도네시아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 대대적으로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제정했다. 첨가물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관련 법령도 이후 추가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 드라마 등의 매체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열풍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 추세이다. 특히, 기존의 대도시 중심의 중산층의 거주지인 자카르타 등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시장의 유통 및 수출품목의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식품이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한다면 태국, 일본의 식품처럼 대중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 요약

인도네시아로의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공식품 각 품목마다 매우 까다로운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현지 등록된 수입업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 수출을 하는 것보다 수입대행업체를 이용한다. 식품과 관련된 라벨표시, 광고내용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금번 과제를 수행한 결과, 국내와 주요 수출대상국(태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비교하고 식품첨가물 DB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식품 수출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효율화를 도와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과제의 수행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출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조사대상국, 조사품목, 조사기간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 일러두기

## 1. 조사 추진 단계

### 1.1 조사 추진 단계

추진 단계		조사 추진 내용
1 단계	조사 계획 설계	조사 기본 방향 설정 조사대상 항목 설정 및 조사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대상 및 항목 선정
2 단계	조사 실시	문헌조사, 실태조사, 면접조사 실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자료 조사 및 협조 요청
3 단계	자료 분석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품목별 현황분석 조사된 자료의 Database화 분석결과에의 활용을 위한 전문가, 기업의 자문
4 단계	보고서 작성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보고서 작성

### 1.2 조사 내용

-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
- 수출국의 수입관리제도 조사
- 가공식품 품목별 식품첨가물 관련 법규 정보수집
-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식품안전정보 사건·사고 조사
- 수출국 대상 번역자료 및 보고서에 대한 확인 절차

### 1.3 조사 방법

#### 1.3.1.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

- 조사대상 식품유형은 주요 수출대상국(인도네시아, 태국, 네덜란드)에 대한 식품유형별 수출액, 매출대비 수출비중, 해외 수출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식품을 조사하여 14개 가공식품을 1차로 선정하였다.

- 1차 선정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최종 조사대상 수출국과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수출 주력 식품유형, 기업별 주요 관심 식품첨가물, 수출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간담회<sup>1)</sup>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주요 수출대상국별 가공식품을 분류하는 체계가 상이하고 국내의 가공식품 분류기준으로는 조사 범위 등이 방대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관련 조사원이 최종 품목선정 회의에 참석,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14개 가공식품, 37개 식품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가공식품별 식품유형의 수출액
  - 수출대상국 수출시 통관 부적합 사례 여부
  - 해외 수출 식품기업 대상 수출 주력 식품유형 수요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적 수출 장려 대상 식품유형

### 1.3.2 국가별 자료의 수집 및 식품첨가물 Data Base화 작업

-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조사와 현지 유통업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식품유형을 조사하여 비교하고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기준 및 규격을 조사하여 DB 구축을 위해 엑셀로 입력하였다.
- 이상 번역자료 및 보고서 내용을 확인, 검토하였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각주의 해당 국가 웹사이트와 부록에 첨부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및 금지첨가물 Data Base 활용

-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네덜란드 4개국의 식품첨가물 현황을 품목코드, 품목명, 물질코드, 물질명으로 제시하여 향후, 식품첨가물 관련 정보 검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1) 2013.01.24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한국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식품공전(한국식품산업협회, 2013년)」, 「식품첨가물공전(한국식품산업협회, 2013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3-137호,2013.4.5)」 및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의 적용범위(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 본 Data Base의 식품첨가물 허용량 비교표는 국가별 유사 기준을 적용하여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료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수출에 활용 시 해당국가의 현행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국가별 식품첨가물 허용량 비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한 국

- ① 기준없음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로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한없음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는 경우로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금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다.
  - \* 기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을 원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네덜란드

- ① 기준없음 : 식품첨가물 목록에 있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로, 생산에 필요한 최소량을 의미한다.
- ② 금지 : 식품첨가물 목록에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다.
  - \* 기타 : EU의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EU 위원회의 사용허가를 받아 E-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위원회는 EU 식품안전청(EFSA)의 자문을 받는다. 신청 절차는 EU규정 1331/2008/EC에 의거한다.

## 태 국

- ① GMP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해당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에 따라 식품 분류에 따른 최소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금지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 \* 기타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태국 식약청(Thai FDA)의 지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인도네시아

- ① 기준없음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 ② GMP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해당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에 따라 식품 분류에 따른 최소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금지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 \* 기타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식약청(FDA)의 지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국가별 식품첨가물 자료 출처
  - 한국 식품첨가물 자료 출처 :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  
<http://www.mfds.go.kr>
  - 네덜란드 식품첨가물 자료 출처 :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EU 규정 Regulation 1129/2011/EU
  - 태국 식품첨가물 자료 출처 : 보건부 규정 Food Act No.281. 식품첨가물 사용제한기준, Codex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 인도네시아 식품첨가물 자료 출처 : 식약청 법률정보문서네트워크 (Jaringan Dokumen dan Informasi Hukum)  
<http://jdih.pom.go.id>



# 제1장

## 서론

---





## 제1절 조사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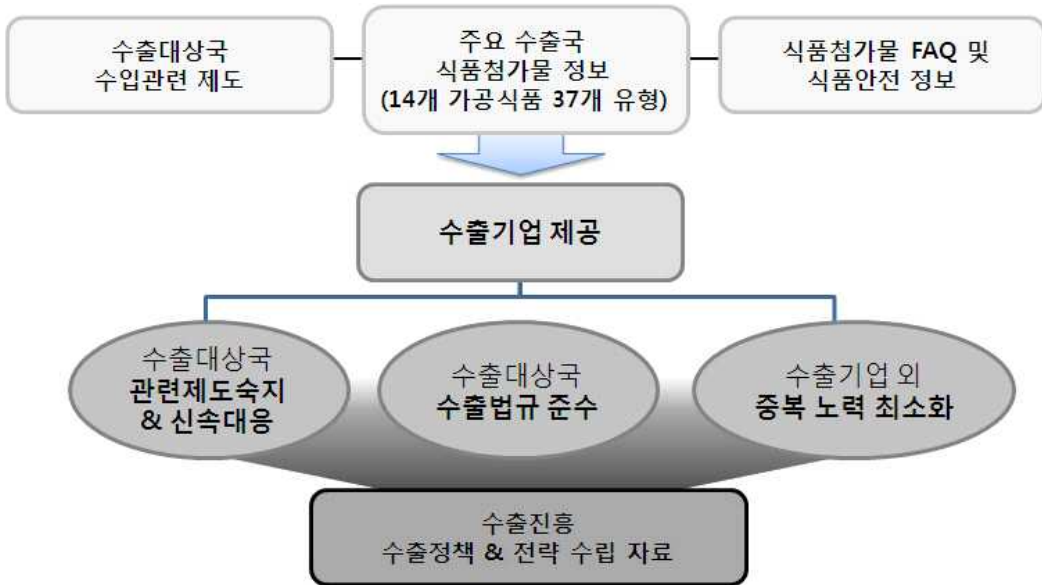
### 1 조사 필요성

- 주요 수출국의 식품관련 규정이 상이하고 수시로 변경되어 다양한 식품 원료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수출과정에서 부적합 등 수출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식품관련제도 및 절차 등의 미숙지로 인한 통관역류 및 부적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되어 중장기적으로 식품 수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과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제품개발 단계에서 정보 활용을 독려하고 예상되는 통관상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국제무역 마찰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다양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주요 수출국(태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식품 수입관련 정보, 특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Data Base 구축 및 업데이트가 시급한 실정이다.

### 2 조사 목적

- 14개 주요 가공식품별 총 37개 식품유형에 대한 조사국의 식품첨가물 관련 법규 정보 수집 및 식품첨가물 DB 구축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가공식품의 수출 시 상이한 식품제도 및 규제로 인한 통관상의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 수출기업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출 법규 위반 방지와 신속한 대응 및 개별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중복 노력을 최소화하며, 수출 정책 및 수출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림 1-1】 조사 목적 및 개요



### 3 기대 효과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식품 관련 제도 및 정보 제공으로 수출 시 신속 대응 가능
- 주요 식품(14개 가공식품, 37개 식품유형)에 대한 수출 대상국의 관련 법규 준수
- 식품첨가물 DB 구축 등 정보제공으로 개별 기업의 정보수집 중복 노력 최소화
-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효율화로 한국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 수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출 진흥에 기여
- 기업 및 국가의 대외 신뢰도 증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제2절 조사 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

- 선정방법
  -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수출실적을 고려하여 향후 가공식품 수출유망 대상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선정
  - 주요 수출 가공식품 중 면류, 과자류, 음료류 등 14개 가공식품을 1차 선정

과자류	면류	조미식품
빵 또는 떡류	음료류	기타식품류 (조미김, 즉석조리식품)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렛류	식용유지류	유가공품(아이스크림)
두부류 또는 묵류	절임식품	식육가공품(양념육류)
장류	커피	

- 조사설계
  -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수출관련 회원사, 식품기업 수출협의회, 수출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

### 2 가공식품 교역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 조사내용
  - 수출 대상국의 수출입 개요 및 양국 간의 교역상황
  - 수입검사제도(수입허가사항, 검역 및 검사절차 등)
  - 수입위생제도(수입검사관련제도, 성분 및 금지 첨가물 등)
  - 수입규제제도(식품표시제도, 수입할당제도, 관세제도 등)
  - 주요 정부기관 내역(기관명, 웹사이트 등)



### 3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법규 정보수집

- 조사내용
  - 식품유형별 기준 및 규격
  - 조사대상 국가별 14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현황
  - 조사 대상국의 가공식품 품목별 식품첨가물 사용량, 유해물질 조사

### 4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

- 조사내용
  - 가공식품 부적합 사례조사
  - 국가별 식품안전 사건·사고 조사
- 조사설계
  - 가공식품 품목별 부적합 사례 및 첨가물 관련 FAQ수집
  - 최신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 조사
- 조사방법
  - 문헌조사, 전문정보사이트, 현지조사, 전문컨설팅/조사업체

## 제2장

# 조사 수행내용 및 결과





## 제1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sup>2)</sup>

- 조사대상 식품유형은, 주요 수출국(인도네시아, 태국, 네덜란드)에 대한 식품유형별 수출액, 매출대비 수출비중, 해외 수출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식품을 조사하여 14개 가공식품을 1차로 선정하였다.

【표 2-1】 1차 선정 조사 대상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

1	과자류	6	면류	11	조미식품
2	빵 또는 떡류	7	음료류	12	기타식품류 (조미김, 즉석조리식품)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렛류	8	식용유지류	13	유가공품(아이스크림)
4	두부류 또는 묵류	9	절임식품	14	식육가공품(양념육류)
5	잘류	10	커피		

- 1차 선정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수출 주력 식품 유형, 기업별 주요 관심 식품첨가물, 수출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sup>3)</sup>를 실시하였다.
- 주요 수출대상국 별 가공식품을 분류하는 체계가 상이하여 국내의 가공식품 분류기준으로는 해당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관련 법규 정보 등을 사업 기간 내에 모두 조사하기에는 조사 범위 등이 방대하여 조사에 애로점이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2013년 1월 24일 수출업무 종사자 및 기업 관계자와 한국 식품산업협회 조사원들이 모인 회의 결과를 수렴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품목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14개 가공식품, 37개 식품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2) 부록 : 1. 조사대상 가공식품의 선정 기준

3) 2013.01.24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가공식품별 식품유형의 수출액
- 수출대상국 수출시 통관 부적합 사례 여부
- 해외수출 식품기업 대상 수출 주력 식품유형 수요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적 수출 장려 대상 식품유형

【표 2-2】 조사 대상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

14개 가공식품	37개 식품유형	소계
1. 과자류	과자, 캔디, 추잉껌, 빙과류	4
2. 빵 또는 떡류	빵류, 떡류, 만두류	3
3.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 류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류	2
4. 식용유지류	콩기름, 미강유, 참기름, 들기름	4
5. 면류	국수, 당면, 유탕면류	3
6. 다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3
7. 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2
8. 음료류	과일·채소음료, 두유류, 인삼·홍삼음료,	3
9. 장류	양조간장, 된장, 고추장	3
10. 조미식품	소스류	1
11. 김치류	배추김치	1
12. 주류	탁주, 맥주, 소주	3
13. 기타식품류	조미김, 식염, 즉석섭취·편의식품류	3
14. 유가공품	가공유류, 아이스크림	2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수출국 중 인도네시아의 수입관련 제도, 식품첨가물 및 식품안전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가공식품 교역현황

### 1 수출입 동향

#### 1.1 수출입 개요

- 관세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 인도네시아 2012년 총 수출액 규모는 2003년 대비 4.1배 증가한 139억 달러이다. 이 중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규모는 1.1%인 1억 5천만 달러이다. 2012년 수입액 규모는 2003년 대비 3배 증가한 156억 달러이며, 이 중 농림수산물의 수입액은 10억 달러로 6.4% 규모이다.
- 2012년 한국의 농림수산물 총 수출액 약 80억 달러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억 5천만 달러로 약 1.8%를 차지한다. 이는 2003년 총 수출액 약 59억 달러 중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7천 6백만 달러, 즉 1.3%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 수출의 경우는 【그림 2-1】 과 같다. 2003~2012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출액 규모는 연평균 17%씩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2년에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25% 상승하여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보다 4배 증가했다.
- 수입의 경우는 【그림 2-2】 와 같다. 2003~2012년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입액 규모는 연평균 10%로 성장하여 2012년 수입액 약 1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3년에 비해 2.4배 증가하였다.

【표 2-3】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2003~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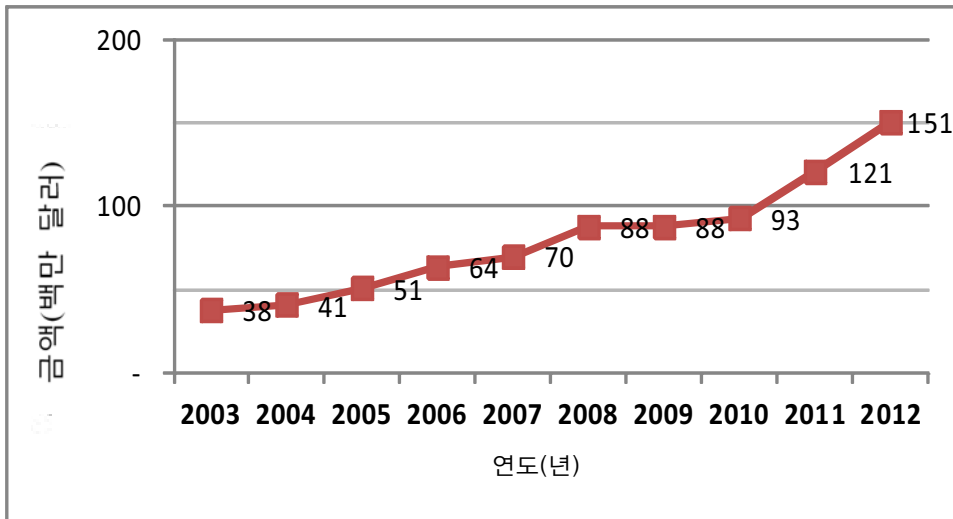
(단위 : kg, 달러)

년도	수출		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003	58,263,661	38,005,203	1,342,801,291	426,065,186
2004	53,111,706	41,536,840	1,259,797,132	387,036,064
2005	60,183,029	51,346,400	1,252,397,202	396,115,769
2006	76,854,213	64,429,608	1,183,937,457	388,777,027
2007	91,307,978	70,497,966	1,242,565,484	467,986,959
2008	71,296,271	88,073,253	1,381,357,135	613,222,252
2009	66,258,441	88,834,510	1,537,396,978	660,771,182
2010	92,023,940	93,963,164	1,644,389,008	880,368,786
2011	75,678,093	121,513,931	1,696,936,731	1,003,167,236
2012	104,454,709	151,929,659	1,889,851,919	1,012,617,972
연평균 증감률(%)	6.7	16.6	3.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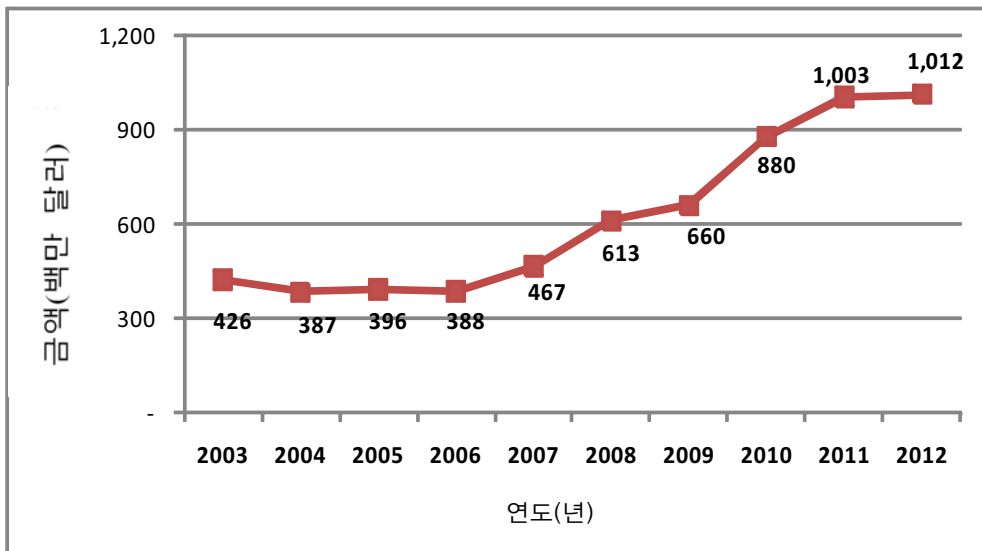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을 금액 증가율로 보면 수출입 중량보다는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한데 비해 수출 중량은 등락을 보였고, 수입 중량은 2006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는 19억 kg에 육박했다.

【그림 2-1】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출동향(2003~2012년)



【그림 2-2】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입동향(2003~2012년)



## 1.2 주요 가공식품 교역현황

### 1.2.1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식품관련 교역 현황

-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식품의 유형별 수출입 동향은 【표 2-4】 와 같다.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수출은 25%, 수입은 0.9% 증가하였다.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조미식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군의 수출이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과자류, 빵류, 면류, 음료류, 커피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과자류, 커피, 조미식품 등이다.
- 한국드라마 등에 노출되었던 식품, 상품 등의 경우엔 비교적 친근하게 느끼나 기본적으로 한국산 제품 그 중에서도 특히 유가공품류의 경우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할랄 인증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수입 및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한국산 축산물의 수출은 저조한 편이다.

**【표 2-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식품 유형별 수출입 동향 (2009~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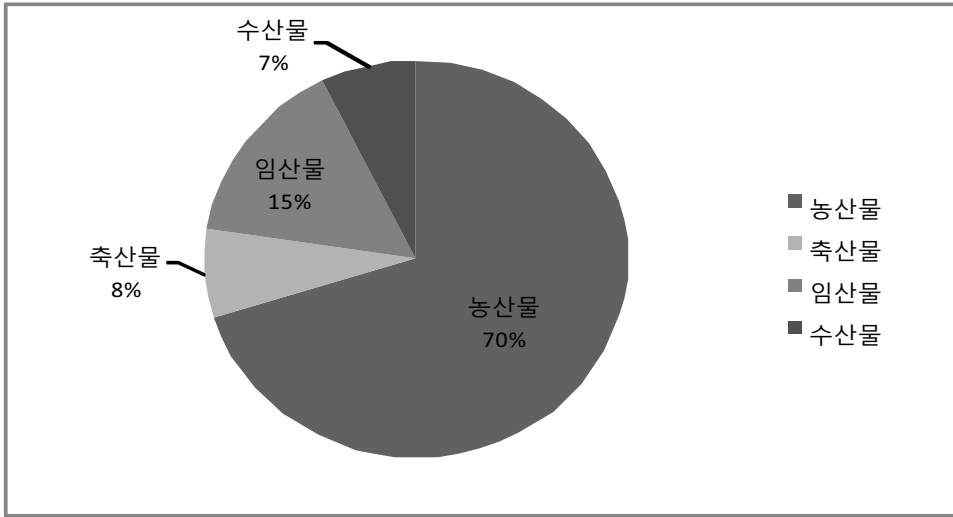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68	660	93	880	121	1,003	151	1,012
농산물	52	232	77	286	103	413	106	416
축산물	0.4	1	0.4	1	0.8	1	11	11
임산물	3	360	7	529	9	519	23	514
수산물	13	67	9	64	8	70	11	70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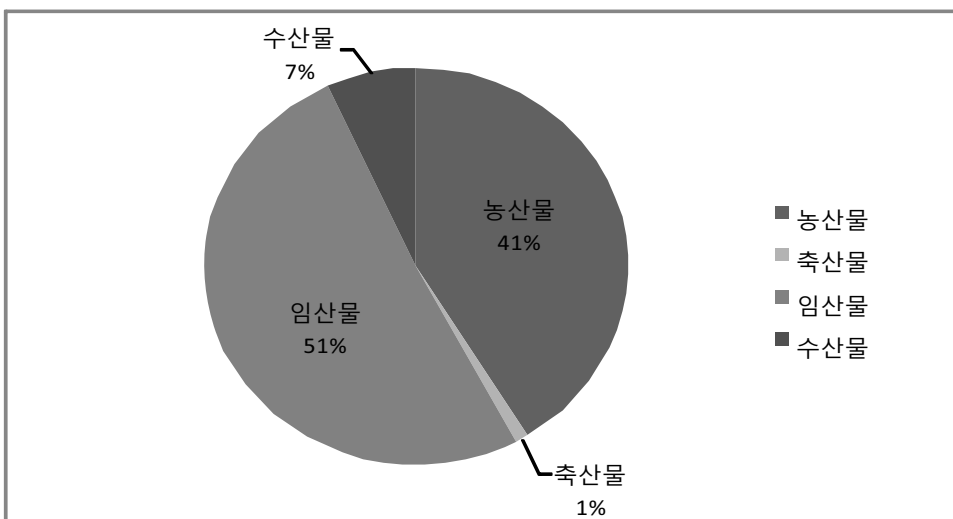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201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2년에는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림 2-3】을 보면,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농산물로 70%에 달하며, 이어 임산물(15%)과 축산물(8%), 수산물(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3】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출 비중(2012년)



- 수입의 경우, 2011년엔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2년 수입액은 10억 1천 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입 비중은 【그림 2-4】와 같다. 농림수산물 중 전체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산물로 전체의 약 51%를 차지하며, 뒤이어 농산물(41%), 수산물(7%), 축산물(1%) 순이다.

【그림 2-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림수산물 수입 비중(2012년)



## 1.2.2 주요 식품유형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 1.2.2.1. 과자류

- 과자류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은 【표 2-5】와 같다. 과자류 수출은 현지 진출 업체와 제과 수출업체들의 현지마케팅 강화 영향과 한국의 인지도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 상승세를 보인다. 2012년에는 전년보다 14% 증가해 약 185만 달러를 기록했다.
- 과자류의 경우에는 2012년 기준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약 3.9배 많은 7백 2십만 달러를 기록했다.
- 과자의 수출은 2011년에는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92만 달러 규모이다. 캔디 수출은 매년 20% 가량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은 2012년 기준 전년 대비 63% 증가하여 3백만 달러 수준이었다. 추잉껌의 수출은 2011년 전년 대비 32% 가량 감소했으나 2012년에는 5.4% 증가하여 약 66만 달러에 이른다.

【표 2-5】 과자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과자류	1,374,510	4,060,933	1,625,639	5,773,660	1,857,524	7,276,996
과자	318,199	793,995	922,494	1,839,465	919,405	3,005,443
캔디	98,158	2,172,064	81,114	2,120,452	59,676	3,057,903
추잉껌	928,022	1,094,861	622,031	1,813,743	656,179	1,213,650
빙과류	30,131	13	0	0	222,264	0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 1.2.2.2. 빵 또는 떡류

- 빵 또는 떡류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은 【표 2-6】과 같다. 수출을 보면, 빵류 수출은 2012년에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여 155만 달러 규모였고, 만두류는 2012년에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9만 6천 달러를 기록해 빵류와 만두류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 빵류의 수입액은 2012년에 17만 달러에 육박했으나, 떡류와 만두류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

【표 2-6】 빵 또는 떡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빵 또는 떡류	642,852	8	1,440,330	17	1,647,138	168,572
빵류	623,038	8	1,396,737	17	1,548,257	168,572
떡류	5,544	0	3,893	0	2,313	0
만두류	14,270	0	39,700	0	96,568	0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 1.2.2.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대 인도네시아 코코아류의 수출입 동향은 【표 2-7】 과 같다. 코코아가공품류와 초콜릿류 모두 2011년에는 수출이 각각 28%, 25%씩 증가하였으나 2012년 코코아가공품류 수출은 약 68% 줄었으며 초콜릿류는 2012년 수출 실적이 없다.
- 코코아류 수입의 경우, 코코아가공품류는 2012년에 전년 대비 155% 증가하여 79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초콜릿류는 2012년에 2백 5십만 달러 이상 수입했다.

【표 2-7】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코코아류	43,911	2,726,536	55,384	2,524,103	2,867	3,317,888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 버터 · 분말 등)	7,181	343,767	9,215	309,529	2,867	789,485
초콜릿류(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 밀크초콜릿 등)	36,730	2,382,769	46,169	2,214,574	0	2,528,403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1.2.2.4. 식용유지류

- 2010~2012년 대 인도네시아 식용유지류의 수출입 동향은 【표 2-8】 과 같다. 식용유지류는 2011년부터 콩기름(대두유)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시작되었고 2012년 기준,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하여 53만 달러를 기록했다.

【표 2-8】 식용유지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용유지류	0	0	425,563	0	536,731	0
콩기름(대두유)	0	0	205,993	0	238,180	0
미강유(현미유)	0	0	0	0	0	0
참기름	0	0	3,022	0	4,751	0
들기름	0	0	0	0	893	0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1.2.2.5. 면류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면류의 수출입 동향은 【표 2-9】 와 같다. 면류는 수출이 수입의 10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유당면류가 면류 전체 수출액의 83%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 면류의 경우, 특히 수입의 경우 유당면류만 들어오고 있어 양국 모두 라면을 비롯한 인스턴트면이 강제임이 확인된다.
- 당면의 수출은 2012년 기준, 전년 대비 약 52% 증가한 14만 달러 규모이다.

【표 2-9】 면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면류	0	0	2,812,700	228,654	3,432,367	217,973
국수	0	0	141,253	0	95,403	0
당면	0	0	92,257	0	139,827	0
유탕면류	0	0	2,349,987	228,654	2,873,483	217,973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1.2.2.6. 다류

- 다류는 2012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3.8배 증가하여 1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수입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는 수입내역이 없다가 2012년 인삼차 수입을 시작하였다.

【표 2-10】 다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다류	0	0	26,634	0	100,131	4837
다류	0	0	26,634	0	100,131	4,837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1.2.2.7. 커피

- 커피류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은 【표 2-11】 과 같다. 2011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수입하였으나 2012년에는 그 액수가 32% 가량 크게 감소하여 66만 달러 규모이다.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커피류의 수출을 살펴보면, 2011년에 전년 대비 수출액이 약 68% 가량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3천 4백 6십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표 2-11】 커피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커피류	20,650,565	446,337	34,705,446	969,008	34,610,654	657,794
커피	20,650,565	446,337	34,705,446	969,008	34,610,654	657,794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1.2.2.8. 음료류

- 대 인도네시아 음료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과일채소음료의 수출의 경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한 반면 수입은 매년 줄어들어 2012년에는 766달러의 소량만을 수입하였다.
- 인삼, 홍삼음료의 경우, 2012년에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87% 증가하여 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두유류는 2012년 수출액이 58만 달러로 수입액보다 2.9배 높았다.

【표 2-12】 음료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음료류	340,075	223,522	1,016,221	373,659	1,105,256	202,638
과일채소음료(농축 과채즙,과채쥬스, 과채음료)	263,494	156,129	278,513	121,388	488,248	766
두유류(두유액,두유, 분말두유 기타 두유)	42,690	67,355	715,996	252,271	576,421	201,872
인삼, 홍삼음료	33,891	38	21,712	0	40,587	0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1.2.2.9. 장류

- 장류를 살펴보면, 고추장, 간장, 된장 순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다. 고추장이 4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된장은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간장 수입의 경우 2012년에는 9만 6천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하였다.
- 인도네시아로의 장류 수출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약 49%, 7.5%씩 해마다 늘어 2012년에는 52만 달러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간장과 고추장의 수출이 2012년 전년 대비 각각 9%, 11%씩 늘어나 전체 장류의 수출 증가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표 2-13】 장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장류	324,025	82,472	481,612	75,447	517,840	97,281
간장	103,986	75,593	131,336	73,379	142,691	96,339
된장	59,037	0	100,899	16	98,853	136
고추장	151,368	0	226,420	0	250,809	0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1.2.2.10. 조미식품

- 조미식품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은 【표 2-14】 와 같다. 조미식품의 경우 2012년의 수출이 전년 대비 66% 감소했는데 2012년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소스류 수출의 경우 역시 2012년에 전년 대비 약 23% 감소하여 35만 달러를 기록했다.
- 수입의 경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조미식품은 132%, 소스류는 284%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표 2-14】 조미식품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조미식품	702,189	274,320	1,210,280	206,881	411,958	481,220
소스류	341,713	148,769	464,545	96,095	355,190	369,610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 1.2.2.11. 김치류

- 김치류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전통식품인 만큼 수입은 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이 매년 평균 19%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류 열풍으로도 볼 수 있다.

【표 2-15】 김치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김치류	160,787	0	209,748	0	247,862	0
김치	160,787	0	209,748	0	247,862	0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 1.2.2.12. 주류

- 대 인도네시아 주류 수출 가운데 탁주는 2011년 첫 수출을 시작했는데 2012년 약 24% 증가하였다. 반면 소주 수출은 2010년 32만 달러였던 것이 2011년에는 20% 가량 감소했다가 이듬해인 2012년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하여 31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바람소주’라는 이름의 소주를 만들어 유통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서 수입된 소주의 1/4 가격에 판매 되고 있어 소주 업체의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맥주를 살펴보면, 수출은 2011년에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약 95% 감소하여 381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맥주의 수입은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약 34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서 약 5만 7천 달러를 기록했다.

【표 2-16】 주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주류	326,832	1,558,626	304,353	508,308	360,885	4,752,109
탁주	0	0	16,214	0	20,148	0
맥주	321	52	8,139	167	381	57,497
소주	326,298	0	260,866	0	318,150	0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 1.2.2.13. 기타식품류

- 기타식품류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54%, 5.5%씩 계속 감소했는데 이는 옥수수전분 수출량이 매년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 반면 수입은 2011년 전년 대비 100만 달러 이상, 즉 17%의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약 천만 달러 규모이다.
- 조미김의 경우, 매년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에 전년 대비 195% 증가했고 2012년에는 전년 대비 54% 가량 증가해 84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 기타식품류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식염은 2012년 2만 5천 달러로 이는 전년에 대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인데 비해, 같은 해 죽석섭취 편의 식품류의 수입은 매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식염 수출의 경우, 2012년에 전년 대비 85% 늘었으나 이듬해 2012년엔 전년 대비 8% 가량 소폭 감소하였다. 죽석섭취, 편의식품류는 2012년 기준 약 5만 2천 달러를 기록했다.

【표 2-17】 기타식품류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기타식품류	5,070,692	8,891,963	2,335,540	10,417,969	2,206,034	10,015,108
조미김	185,109	0	546,572	0	840,968	0
식염	4,637	50	8,596	15	7,896	25,560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1,808	1,341	105,744	935	51,964	0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 1.2.2.14. 유가공품

- 대 인도네시아 유가공품 수출입 동향을 보면, 2012년 기준 수입액에 비해 수출액이 145배 크며 수출액은 84만 달러 규모이다.
- 아이스크림의 경우 2010년에 8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였는데 2011년엔 전년 대비 그 액수가 18%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약 12% 감소하여 84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표 2-18】 유가공품 수출입 동향

(단위 : 달러)

품목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유가공품	805,653	6,509	952,369	6,575	839,447	5,770
가공유류	0	0	0	432	0	293
아이스크림	805,573	0	952,369	0	839,447	0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http://www.kati.net/>)

## 제3절 수입식품 관리제도

### 1 수입검사제도

#### 1.1. 식품수입관련 법령 및 규정

##### 1.1.1. 식품수입 관련법

###### 1.1.1.1. 식품법 (Food Act No.18/2012)

- 식량 주권 및 자치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개정된 식품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 수입은 국내 생산으로 충분치 않거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식품법에서는 식품을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제품과 물 등의 생물 자원에서 유래한 모든 것으로 비가공 혹은 가공 할 수 있고 사람의 섭취 또는 음용이 그 목적이며, 여기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제조, 조리, 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초 식품재료 이외에 식품첨가물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는 안전, 품질, 영양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식품의 라벨 및 광고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식품법 조회 홈페이지
  - 다음의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 법률문서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식품법을 조회할 수 있다.
  - <http://jdih.pom.go.id/>

###### 1.1.1.2. 보건법 (UU RI No.36/2009 Kesehatan)

- 인도네시아는 2009년 보건법을 개정하였는데, 사회의 발전과 요구 및 법률적 필요 등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법으로서, 가공식품등록에 대한 식약청장 규정 등 많은 하위 법령들이 이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 1.1.1.3. 소비자보호법 (UU RI No.8/1999 Perlindungan Konsumen)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써, 소비자보호법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관련 규정으로는 가공식품등록 규정, 가공식품등록절차 규정, 식품의 미생물과 화학오염물 최대한도 결정 규정, 위해물질의 감독 등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 1.1.1.4. 수입수입 관련 규정

- 식품 안전과 품질 및 영양에 대한 규정 <Gov. Regulation No.28>
  - 국내 생산 식품 및 수입식품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관련 규정으로는 가공식품 수입 감독 규정과 가공식품 등록 규정 등이 있으며 식약청에서 제정하여 관리 및 시행하고 있다.
- 가공식품 수입 감독 규정 <Regulation No.HK.00.05.23.1455>
  - 식품의 안전과 품질 및 영양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2008년 식약청장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KBPOM)령으로 제정되었다. 가공식품, 식품 안전 및 등록승인서 등에 대해 정의하며 가공식품 수입, 조건 등을 규정하고 식약청이 감독한다.
- 수입제품의 검사 규정 <Regulation KDJBC No.07/BC>
  - 2007년 관세청장령으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절차와 과정보고 및 검사 결과 송부 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특정제품 수입조건에 대한 규정 <Regulation No.83//12/2012>
  - 식품 및 음료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HS(Harmonised System) 관세코드 505개 제품에 대한 강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상기 특정제품에 해당되는 관세코드에 따르는 식품 및 음료는 1.4.4.4. 특정제품 등록 수입자의 【표 2-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멜라민 식품의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 시행
  - 식품 및 음료 의무 실시 규정 <Regulation 20/M-IND/PER/2>

- 관세 코드(HS) 3924.10.00.10 해당 제품에 대해 SNI 7322:2008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려면 신청기관 또는 기업의 성적서, 수입 제품의 총량, 수입 원산지, 제품 사양 등의 서류를 준비해 산업개발국장 (Direktur Jenderal Pembina Industri, DJPI)에게 기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해당 제품은 국가인증위원회(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나 KAN과 상호인증협정(Mutual Recognition of Arrangement, MRA)을 맺은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기타 식품 관련 규정

- 식품 포장 감독 규정
- 식품에 영양소와 비영양소 첨가 조건 규정
- 알콜음료 유통과 판매 및 감독에 대한 무역장관 규정
- 유전자조작식품 안전 평가지침에 대한 규정
- 유아식 감독 규정
- 임신 및 수유 여성용 특수 음료 감독 규정
- 특수 의학적 필요를 위한 유아식 감독 규정
- 식재료로써 밀가루의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의무 시행 규정
- 유제품에 비타민 K 첨가 금지 규정

1.2. 식품수입관련 인도네시아 주요 정부기관

1.2.1.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

- 인도네시아에서 식품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문서는 식약청의 법률문서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sup>4)</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된다.
-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 기준규정 제정 및 사전시장 평가를 통한 허가발급 등의 업무를 하며 산하의 식품표준화이사회와 식품안전평가이사회 등이 업무를 분할 담당하고 있다.

4) 인도네시아 식약청 법률문서정보 네트워크: <http://jdih.pom.go.id/>

확인방법: 왼쪽 배너의 Produk Hukum > Produk > Pangan(식품) 순으로 클릭

##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식약청 웹사이트와 법률정보문서네트워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웹기반 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 식품등록을 위해 전자등록 웹사이트 (e-Registrasi)<sup>5)</sup>를 개설하고 식약청 웹사이트 내부에 연동해 운영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2.pom.go.id>  
주소: Badan POM Jakarta, Jl. Percetakan Negara No.23 - Jakarta 10560  
Indonesia  
연락처: 62-21-424-4691, 62-21-4288-3309  
팩스: 62-21-426-3333  
이메일: [Informasi@pom.go.id](mailto:Informasi@pom.go.id)

### 1.2.2. 관세청(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JBC)

- 관세청은 통관업무 및 관련 법규의 규제,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도착하는 모든 제품은 ‘수입’으로 간주되며, 수입 관세의 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서류 및 제품에 대한 검사 등의 관세청 확인이 이루어진다.
- 웹사이트: <http://www.beacukai.go.id/>  
연락처: 62-21-489-0308  
이메일: [humaskpdjbc@customs.go.id](mailto:humaskpdjbc@customs.go.id)
-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웹사이트<sup>6)</sup>를 통해 10자리 관세코드와 제품의 상세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다.

### 1.2.3. 통합정보시스템(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INSW)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무역부의 최근 업데이트 주요 규정과 법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동 홈페이지에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를 링크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5) 가공식품 전자등록 홈페이지: <http://e-reg.pom.go.id/>

6) <http://eservice.insw.go.id/index.cgi?page=hs-code-information.html>

- 또한 동물성 식품 등록수입업자 면허 발급을 위한 무역부로의 서면 신청서 제출 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 웹사이트: <http://www.insw.go.id>

#### 1.2.4. 국가표준청(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 인증을 담당한다. 식품 중 국가표준청에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 인증 의무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식품은 미네랄워터(포장식수: AMDK, Air Minum Dalam Kemasan), 초콜릿분말, 요오드 소금, 밀가루, 생선, 멜라민 식품의 여섯 가지만 해당된다.

- 웹사이트: <http://www.bsn.go.id>

주소: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Manggala Wanabakti Block N  
3-4, Jl.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연락처: 62-21-574-7043

팩스: 62-21-574-7045

이메일: [bsn@bsn.go.id](mailto:bsn@bsn.go.id)

#### 1.2.5. 인도네시아 식품음료협회(Gabungan Pengusaha Makanan dan Minuman Indonesia, GAPMMI)

- 한국식품산업협회(Korea Food Industry Association, KFIA)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협회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식품, 음료 관련 기업들이 GAPMMI의 회원이며, GAPMMI는 식약청(BPOM)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기업의 사이에서 의견을 절충하여 상호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gapmmi.or.id>

연락처: 62-21-7032-2626~2

팩스: 62-21-780-4347

이메일: [gapmmi@cbn.net.id](mailto:gapmmi@cbn.net.id)



### 1.3. 수입식품 허가사항

- 식품법(No.18/2012)의 식품수입 조항에 따르면 식품수입은 국내생산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여 이는 국내의 소비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안전, 품질, 영양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키며 종교, 신념, 사회문화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 1.3.1. 식품등록 및 수입증명서

- 식약청에 식품을 등록 할 때 및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식약청에 제반 서류와 함께 라벨 계획안 및 포장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청에서는 식품 뿐 아니라 라벨과 포장에 대해서도 검사와 확인 작업을 한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1.4. 수입식품 허가조건 및 사전확인사항

- 수입식품과 관련한 허가사항은 네 가지로 나뉜다.

#### - 가공식품 등록:

유통,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소매포장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다음의 규정에 의거한다.

- 가공식품 등록 규정 <Regulation No.HK.09955/2011><sup>7)</sup>
- 가공식품 등록절차 규정 <Regulation No.HK.09956/2011><sup>8)</sup>
- 가공식품 전자등록신청 규정 <Regulation No.1/2013><sup>9)</sup>

#### - 식품에 대한 수입증명서

#### - 할랄 인증

#### - 무역면허 및 수입자 등록:

수입자는 무역면허(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와 관세청 등록(Nomor Induk Kepabeanan, NIK), 일반 수입자 등록(Angka Pengenal Importir, API) 외에도 특정 제품 수입자 등록(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 ITPT)을 취득해야 한다.

7) 출처: <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POM/cdftrpangan.pdf>

8) 출처: <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POM/dtatalaksana.pdf>

9) 출처:

[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POM/Per%20KBPM\\_No%201%20tentang%20penerapan%20pendaftaran%20pangan%20olahan%20secara%20elektronik\\_net.pd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POM/Per%20KBPM_No%201%20tentang%20penerapan%20pendaftaran%20pangan%20olahan%20secara%20elektronik_net.pdf)

#### 1.4.1. 가공식품등록

- 모든 소매포장 가공식품은 등록 신청을 해서 가공식품 등록번호(**국내 제품: MD/ 수입 제품: ML**)를 발급받아야 하며 예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통기한이 상온에서 7일 이하인 가공식품
  - 기부용 가공식품
  - 식약청(BPOM) 등록, 연구 또는 개인 소비 제품 등의 특수목적을 위해 수입 되는 소량의 가공식품
  
- 국내 제조 또는 유통을 위해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소매포장 가공식품은 등록증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 가공식품등록 규정에서 ‘등록’이란 등록증인서를 받기 위한 가공식품의 안전, 품질, 영양 시험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증인서는 식약청장이 발행한다.
  - 가공식품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체생산 가공식품
    - 라이선스 가공식품
    - 재포장 가공식품
    - 계약 생산 가공식품
  - 가공식품등록 전, 등록자는 식약청 지역 사무소장에게 제조 설비와 유통 시설 감사 요청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다음의 사항에 따라 가공식품 마다 별도의 가공식품 등록을 한다.
    - 라벨 디자인
    - 포장의 종류
    - 구성
    - 제조업체 이름 그리고/또는 주소
  
- 수입가공식품 등록번호(Makanan Luar, ML 번호)
  - ML이란 ‘수입식품’을 뜻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소매포장 가공식품과 수입되는 모든 소매포장 가공식품 품목별로 식약청 검사를 거친 등록번호를 발급하게 된다.

##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소매포장 가공식품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다. 가공식품에 대해 사전 평가를 거쳐 승인하는 제도로써 등록될 식품은 안전, 품질, 영양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공식품 등록신청을 하면 식약청의 검사를 거쳐 ML 번호가 발급된다. ML 번호는 식품라벨과 같이 표기되는데 다음 예시와 같다.
  - 예시) BPOM RI ML(수입식품 인도네시아 식약청) : 8501 1800 2510
- 가공식품 등록 절차
-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제출서류에 대해 안전, 영양, 품질 기준과 라벨 조건 등에 관해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기능성 식품의 경우, 전문가와 협의한다.
  - 평가 결과 등록승인서 또는 등록 미승인서가 발급된다.
  - 비용: 품목당 약 미화 500달러의 비용(비세금국고납입금;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PNBPN)이 부과되며, 등록 요청 미승인 시 이미 지불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 의견경청 및 재고: 등록 미승인서에 대해서 신청자는 의견경청과 재고 요청을 할 수 있다.
  - 유효기간: 가공식품 등록승인서/등록번호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재등록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 재등록: 가공식품 재등록은 유효한 등록승인서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다.
- 가공식품 전자등록 신청
- 가공식품 전자등록은 위험등급에 따라 그룹화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위험등급 기준
    - 1) 대상 고객
    - 2) 원재료, 식품첨가물의 종류, 그리고/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타 재료
    - 3) 산도와 수분활성도 등급

- 4) 라벨에 영양 효능 그리고/또는 건강 효능 표시
- 5) 방사선, 유전자조작, 유기농과 같은 특정기술의 생산공정 사용.
- 가공식품 전자등록을 신청할 회사는 우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기 위한 신청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신청자 등록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pom.go.id> 를 통해 실시한다.
- 신청자가 전자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 완전하고 정확하면, 신청자는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는다.
-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미 받은 회사는 <http://www.pom.go.id> 의 가공식품 전자등록을 신청(application) 할 수 있다.

#### 1.4.2. 식품 수입증명서

- 식품 수입증명서(Surat Keterangan Impor. SKI)
  - 관할 기관 : 식약청(BPOM) 산하 식품검사 및 인증이사회(Directorate General of Foo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 목적 :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입 가공식품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
  - 수입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
    - ① 신청서 기입 내용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식품)
      - 수입자 이름 및 주소
      - 종류 및 상품명
      - 포장 종류/무게/부피
      - 수입량
      - 식품의 원산지
      - 공급업체 이름 및 주소
      - 송장 번호 및 날짜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번호 및 날짜
      - 제품 유효기간 (Exp. Date)
      - 롯/배치/생산 코드(Lot/Batch/Production Code) 번호
      - FEMA/ JECFA/ EC (식품첨가물/향료 해당)
      - 하역항구 이름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② 제품 사양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식품)
  - 설명 / 구성 / 성분
  - 물리적 특성
  - 화학적 특성
  - 미생물학적 특성
  - 포장
  - 사용 / 적용
  - 보관, 유효기간
- ③ 제품 사용목적 성명서(식품 원료, 식품첨가물에 한함)
  - 인지 6,000 루피아/ 한화 약 1,000원
- ④ 인증서
  - 식품의 수입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인증서의 종류는 【표 2-19】 와 같다.

【표 2-19】 식품 수입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인증서

No.	인증서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1	원산지 권한 기관의 유효기간이 있는 검역증명서 (Health Certificate) 또는 자유판매인증서(Free Sale Certificate) (원본)	-	√	√
2	생산자의 (매 배치마다의) 분석 증명서 또는 식품 안전 조건에 부합하는 분석 조건의 최대 유효기간 12개월인 공인 실험실로부터의 분석 증명서 (원본). 중금속 분석에 있어서, 매 제품 모니터링 때마다 분석 증명서를 줌 (최대 12개월)	√	√	√
3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함을 입증하는 인증서 (유럽산 유제품의 경우)	√	√	-
4	일본산 제품에 대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함을 입증하는 인증서	√	√	√
5	유전자조작생물(GMO) 증명서 (콩, 옥수수, 토마토, 및 감자 제품과 그 가공품)	√	√	√
6	3 MCPD(3-monochloropropane-1,2-diol or 3-chloropropane-1,2-diol) 분석 증명서 (가수 분해된 식물성 단백질, 대두분리단백, 간장 제품의 경우)	√	√	√

【표 2-19】 식품 수입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인증서

No.	인증서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7	동물성 제품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쇠고기, 젤라틴, 콜라겐, 껍질)	√	√	√
8	아플라톡신 분석 성적서 (견과류 제품)	√	√	-
9	할랄 인증서 (라벨에 할랄을 표시한 경우)	√	√	√
10	포르말린 분석 성적서 (포르말린 함유 의심 제품)	√	-	-
11	멜리민을 함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첨가물, 식품 원료 등 재료에 멜라민 분석 성적서 (Ammonium bicarbonate)	√	√	√
12	클로람페니콜 분석 성적서 (벌꿀 제품)	√	√	-
13	Sudan Red 분석 성적서 (Oleoresin Capsicum 제품)	√	√	-
14	동물성 제품에 대하여 농업부, 가축 이사회의 추천서 (Surat Rekomendasi Pemasukan, SRP)	√	√	-
15	유효한 등록번호가 있는 등록승인서 사본, 등록 시에 승인한 라벨 및 포장	√	-	-
16	등록승인서 (ML번호)의 것과 다른 회사명을 기재했을 때, 수입자와 수입설비를 소유한 회사 간의 협력약정서	√	-	-
17	제조일자 그리고/또는 유효기간 날짜를 기재한 서류 (원본)	√	√	√
18	배치 번호/롯 번호/생산 코드를 기재한 서류	√	√	√
19	<b>수입 지원 자료</b>	√	√	√
	a.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	√
	b. 송장	√	√	√
	c. 포장명세서	√	√	√

⑤ 등록비용(PNBP) 입금 확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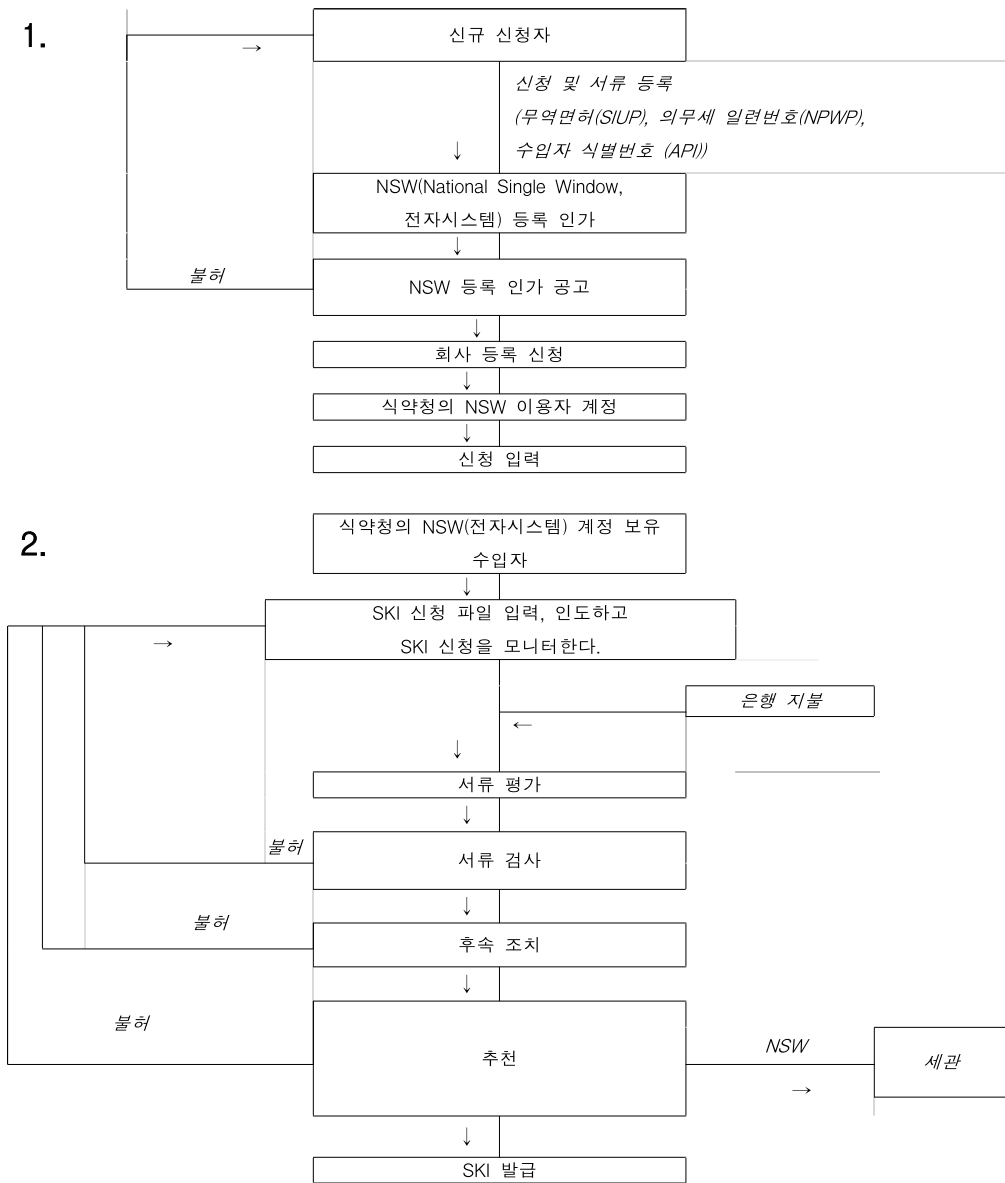
**등록비용** : 정부규정 <PP No.48/2010>에 따라 등록비용(PNBP)으로서 인도네시아 국영은행(Bank Negara Indonesia, BNI) 0008917348 계좌로 제품 항목 당 50,000루피아(한화 약 6,000원) 입금

**소요시간** : 수입증명서 발급은 1일(공휴일 제외)이 걸린다.

⑥ 식품 수입증명서(SKI) 신청 절차

- 【그림 2-5】는 수입증명서 신청 절차이다. 절차는 식약청의 National Single Window(NSW) 계정 보유/미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보유한 업체는 신규 신청자로 1,2번 모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계정 보유 업체는 1번은 생략하고 2번의 절차를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그림 2-5】 식품 수입증명서 신청 절차



### 1.4.3. 할랄 (Halal) 인증: 이슬람 허용식품 인증

- 할랄 (Halal: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
  - 인도네시아 국민의 85% 이상이 무슬림(이슬람교 신자) 인구이므로, 아랍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이슬람법에서 허용하는 식품임을 뜻하는 할랄(Halal) 인증은 인도네시아로의 식품수출과 유통 판매를 위해서는 반(反)강제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
  
- 하람 (Haram: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
  - 수입 시 대표적 하람(Haram) 식재료인 돼지고기와 부산물 등이 함유된 식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할랄인증이 없을 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등 수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할랄인증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전 수입 사전 허가로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 할랄 영역은 다음의 6가지로 구분한다.
  - 모든 원재료, 양념, 첨가물, 도구는 하람(Haram) 요소를 갖지 않아야 한다.
  -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양, 소, 닭고기와 그의 부산물이어야 한다.
  - 모든 종류의 야채와 과일, 곡류 및 해산물이 해당된다.
  - 제조공정과 제조자는 하람(Haram) 요소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 제조공정 시 사용되는 도구는 할랄(Halal)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제조자는 제조 공정, 저장, 운송 및 판매 시, 교차 오염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비정부기관인 인도네시아 이슬람 원로회(Majelis Ulama Indonesia, MUI)<sup>10)</sup> 부속의 할랄인증기관인 인도네시아 이슬람 원로회 식품 의약품화장품 평가기관(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 LPPOM-MUI<sup>11)</sup>)을 통해 직접 인증을 받거나, LPPOM-MUI에서 승인한 40여개의 외국 할랄인증기관의 검사와 인증을 거쳐 LPPOM MUI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할랄 인증마크가 발급된다. 이를 식품 포장 또는 식품 포장의 라벨에 게재해야 한다.

10) MUI 홈페이지: <http://www.halalmui.org/> <http://www.halalmui.or.id>

11) LPPOM-MUI 홈페이지: <http://www.e-lppommui.org>



- LPPOM-MUI에서 승인하는 40개의 외국 할랄 인증기관
  - 할랄 인증기관은 세 개의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소 등의 가축 도축 시 이슬람 율법에 따르는 기관을 지정한 것이고, 두 번째 가공식품 부문과 세 번째 향료 부문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하람(Haram)요소를 배제하고 할랄(Halal)요소로 식품을 생산, 가공하는 기관을 인정하였다.

#### 1.4.3.1. 소 도축 부문

-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소를 도축하는 기관에 발급한다. 식품 생산과정의 초기 단계인 가축 도축에서부터 할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다음 8개의 소 도축 부문의 할랄 인증기관이 있다.
  -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Majelis Ugama Islam Singapore, MUIS)
  -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JAKIM)
  - 필리핀 무슬림 관공실(Office Muslim Affairs, OMA)
  - 브루나이(Bahagian Kawalan Makanan Halal Jabatan Hal Ehwal Syariah Kementerian Hal Ehwal Ugama Negara Brunei Darussalam)
  - 태국 중앙 이슬람위원회(The Central Islamic Committee of Thailand, CICOT)
  - 일본 규슈 이슬람문화센터(Islamic Culture Center Kyushu, ICCKy)
  - 대만 할랄 개발협회(Taiwan Halal Integrity Development Association, THIDA)
  - 인도(Jemaat Ulama E-Maharashtra, JUM)
- 이 밖에 호주(6개), 뉴질랜드(2개), 유럽(9개), 미국(5개), 라틴 아메리카(2개)에 MUI 승인 외국 인증기관이 있다.

#### 1.4.3.2. 가공식품 부문

- 아시아에는 다음 5개 가공식품 부문의 할랄 인증기관이 있다.
  -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Majelis Ugama Islam Singapore, MUIS)
  -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JAKIM)
  - 태국 중앙 이슬람위원회(The Central Islamic Committee of Thailand, CICOT)
  - 대만 할랄 개발협회(Taiwan Halal Integrity Development Association, THIDA)
  - 일본 무슬림협회(The Japan Moslem Association, JMA)

- 이 밖에 호주(6개), 뉴질랜드(1개), 유럽(13개), 미국(5개), 캐나다(1개), 라틴 아메리카(2개)에 MUI 승인 외국 인증기관이 있다.

#### 1.4.3.3. 향료(Flavor) 부문

- 아시아에는 다음 3개 향료 부문의 할랄 인증기관이 있다.
  -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 MUIS; Majelis Ugama Islam Singapore
  -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JAKIM;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 일본 무슬림협회, JMA; The Japan Moslem Association
- 이 밖에 호주(2개), 유럽(5개), 미국(5개)에 MUI 승인 외국 인증기관이 있다.
- 이들 승인받은 기관의 효력은 2년간이며, 해마다 LPPOM-MUI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는다.
- 한국에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할랄 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슬람교중앙회는 2013년 7월 1일부로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의 동등성 인정 최종 심의를 통과해, 이슬람교중앙회(한국)의 할랄 인증이 말레이시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아직 MUI의 승인을 받은 할랄 인증기관이 아니므로 한국의(한국이슬람중앙회) 할랄 인증은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의(MUI)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현재 한국의 한국할랄협회<sup>12)</sup>가 할랄 인증 발급을 돕는 에이전시로 활동하고 있으며, MUI의 할랄 인증 발급을 돕는 일 또한 담당하고 있다.

#### 1.4.4. 수입자허가

##### 1.4.4.1. 무역면허(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sup>13)</sup>

- 인도네시아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무역면허(SIUP)를 발급받아야 한다. 무역면허증에는 회사의 활동범위 및 대표자 등이 기재되며, 무역면허증 발급부인 무역부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Letter of Good Conduct(우수기업인증서)를 요구할 수가 있다.

12) 한국할랄협회 웹사이트: <http://www.koreahalal.org>

13) 출처: [http://kpmptsp.metrokota.go.id/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84:artikel-ketentuan-si](http://kpmptsp.metrokota.go.id/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84:artikel-ketentuan-si)

- 무역면허증은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One Stop Shop Servic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재등록을 해야 한다.

#### 1.4.4.2. 관세청 식별번호(Nomor Induk Kepabeanan, NIK)

- 관세청 식별번호는 관세청의 정보기술 및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 등록번호로서, 관세청 등록에 대한 <Decision No.63/PMK/4/2011> 재무부장관 결의에 따라 모든 수입자, 수출자 및 관세청 이용자는 인도네시아 관세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 and Excise, DGBC)으로부터 관세청 식별번호(NIK)를 발급받아야 한다.

#### 1.4.4.3. 수입자 식별번호(Angka Pengenal Importir, API)

- 수입자 식별번호에 대한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 규정 <Regulation No.84/M-DAG/PER/12/2012>에는 API가 있는 수입자만이 수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보용 제품, 연구개발용 제품, 자가 섭취 제품, 한시적으로 수입하는 특정 제품 또는 수입 빈도가 적은 특수한 경우는 API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나, 장기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API의 취득이 필수적이다.
- API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서 신청하며, 수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갱신 신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 1.4.4.4. 특정제품 등록 수입자(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 ITPT)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발표된 무역부장관령을 통해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품음료 등 10자리 HS 관세코드 5대 품목군 505개 제품(이 중 식품 및 음료 항목 188개 포함<sup>14)</sup>)에 대한 수입 조건을 강화하였다.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무역부로부터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Registered Importer)로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특정물품의 수입자는 지정된 8개의 항구

14) 해당 식품 및 음료에 대한 목록은 【표 2-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및 5개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할 수 있으며, 선적전 검사(SGS 검사)<sup>15)</sup>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서(Laporan Surveyor)를 수입신고 시 제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특정제품 등록 수입자는 식품(식음료), 전통의약품, 식품 보조제, 화장품, 의류(기성복), 신발류, 전자제품, 장난감/완구 등의 특정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회사)를 말하며 이들 특정제품의 수입은 무역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사만이 할 수 있다. 특정제품 수입자는 서면으로 된 서류를 첨부서류와 함께 (무역장관이 IT-PT 임명 권한을 위임한) 위임자나 무역서비스부(무역부 산하의 부서; Pelaksana Unit Pelayanan Perdagangan)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한다. 신청 시 서류가 완벽하고 정확한 경우 제출 후 최장 2일 안에 위임자나 무역서비스부에서 특정제품 등록 수입자로 승인을 발급한다.
- 특정제품의 등록 수입자IT-PT는 다음 8개 항구와 5개 공항을 통해서만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 8개 지정 항구
    - 메단(Medan)의 벨라완(Belawan)항
    - 자카르타(Jakarta)의 탄중프리옥(Tanjung Priok)항
    - 스마랑(Semarang)의 탄중으마스(Tanjung Emas)항
    - 수라바야(Surabaya)의 탄중프락(Tanjung Perak)항
    - 마카사르(Makassar)의 수카르노하타(Soekarno Hatta)항
    - 두마이(Dumai)의 두마이(Dumai)항
    - 자야푸라(Jayapura)의 자야푸라(Jayapura)항
    - 타라칸(Tarakan)의 타라칸(Tarakan)항
  - 5개 지정 공항
    - 메단(Medan)의 폴로니아(Polonia)공항

15) **SGS**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수입상이 수출상의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는 제품단가를 줄이거나 높여서 관세를 포탈하거나 외화도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적 전에 제품을 검사한 후 선적하도록 요구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사증명서 발급기관이다. 동 검사증명서는 CRF(clean report of findings), LPS(laporan pemeriksaan surveyor)로 발급받아 부착하기도 한다.

한편, SGS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15개국 외에 중남미 4개국 등 총 26개국으로 이들 나라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특정한 품목과 내용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팅으랑(Tangerang)의 수카르노하타(Soekarno Hatta)공항
  - 스마랑(Semarang)의 아흐만야니(Achmad Yani)공항
  - 수라바야(Surabaya)의 후안다(Juanda)공항
  - 마카사르(Makassar)의 하사누딘(Hasanuddin)공항
  - 등록수입자(IT-PT)가 식품과 음료만 수입 가능한 항구
    - 두마이(Dumai)의 두마이(Dumai)항
    - 자야푸라(Jayapura)의 자야푸라(Jayapura)항
    - 타라칸(Tarakan)의 타라칸(Tarakan)항
- 다음 【표 2-20】은 특정제품 수입조건 규정에서 지정하는 관세코드(Harmonized System, HS) 10자리 505개 품목 중 식품, 음료 및 일부 식품보조제의 목록이다.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반드시 특정제품 등록수입자로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번호	관세 번호	식품 분류
A.	식품 및 음료	
	16.01	소시지와 고기, 부산물, 피 등 유사 제품; 이 제품으로 만든 가공 식품.
1	1601.00.10.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2	1601.00.90.00	- 기타
	16.02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고기, 부산물, 피와 기타 식품.
	1602.10	- 균질화한 조제품(homogenised preparations):
3	1602.10.10.00	-- 돼지고기를 포함,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4	1602.10.90.00	-- 기타
5	1602.20.00.00	- 동물의 간
	1602.31	-- 칠면조
6	1602.31.10.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 기타:
7	1602.31.91.00	---- 기계로 뼈를 제거하거나 분리한 고기
8	1602.31.99.00	---- 기타
	1602.32	-- <i>Gallus domesticus</i> 종 닭:
9	1602.32.10.00	--- 치킨 카레,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10	1602.32.90.00	--- 기타
11	1602.39.00.00	-- 기타
		- 돼지 고기:
	1602.41	-- 허벅지와 그 조각: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번호	관세 번호	식품 분류
12	1602.41.10.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13	1602.41.90.00	--- 기타
	1602.42	-- 어깨와 그 조각:
14	1602.42.10.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15	1602.42.90.00	---- 기타
	1602.49	-- 기타, 혼합물 포함:
		---- 런천 미트:
16	1602.49.11.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17	1602.49.19.00	----- 기타
		---- 기타:
18	1602.49.91.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19	1602.49.99.00	----- 기타
20	1602.50.00.00	- 소과 동물
	1602.90	- 기타, 동물 피의 가공품 포함:
21	1602.90.10.00	-- 양고기 카레,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22	1602.90.90.00	-- 기타
	<b>16.03</b>	<b>고기,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추출물과 육즙</b>
23	1603.00.10.00	- 치킨, 양념
24	1603.00.20.00	- 치킨, 양념 없이
25	1603.00.30.00	- 기타, 양념
26	1603.00.90.00	- 기타
	<b>16.04</b>	<b>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생선 알에서 가공된 캐비어와 캐비어 대용품</b>
		- 생선, 전체 또는 조각, 그러나 다치지 않은:
	1604.11	-- 연어:
27	1604.11.10.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28	1604.11.90.00	--- 기타
	1604.12	-- 청어:
29	1604.12.10.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30	1604.12.90.00	--- 기타
	1604.13	-- 정어리, sardinella 및 brisling 또는 sprats:
		---- 정어리:
31	1604.13.11.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32	1604.13.19.00	----- 기타
		---- 기타:
33	1604.13.91.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34	1604.13.99.00	----- 기타
	1604.14	-- 참치, 가다랑어(skipjack and bonito) ( <i>sarda spp.</i> )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35	1604.14.11.00	----- 참치
36	1604.14.19.00	----- 기타
37	1604.14.90.00	--- 기타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번호	관세 번호	식품 분류
	1604.15	-- 고등어:
38	1604.15.10.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39	1604.15.90.00	--- 기타
	1604.16	-- 멸치:
40	1604.16.10.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41	1604.16.90.00	--- 기타
	1604.17	-- 뱀장어:
42	1604.17.10.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43	1604.17.90.00	--- 기타
	1604.19	-- 기타:
44	1604.19.20.00	--- 다랑어/전갱이,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45	1604.19.30.00	--- 기타,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46	1604.19.90.00	--- 기타
	1604.2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
		-- 상어 지느러미, 소비를 위해 준비된:
47	1604.20.11.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48	1604.20.19.00	--- 기타
		-- 생선 소시지:
49	1604.20.21.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50	1604.20.29.00	--- 기타
		-- 기타:
51	1604.20.91.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1604.20.93	--- 냉동 다진 생선, 삶은 또는 찐:
52	1604.20.93.10	----- 물고기와 새우 미트볼
53	1604.20.93.90	----- 기타
54	1604.20.99.00	--- 기타
		- 캐비어와 캐비어 대용품:
55	1604.31.00.00	- 캐비어
56	1604.32.00.00	- 캐비어 대용품
	<b>16.05</b>	<b>조제 또는 가공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b>
	1605.10	- 게:
57	1605.10.10.00	-- 밀폐 용기에 담긴 제품
58	1605.10.90.00	-- 기타
		- 새우 및 보리새우:
	1605.21	-- 밀폐 용기 외에 담긴 제품:
59	1605.21.10.00	--- 새우 파스타
	1605.21.90	--- 기타
60	1605.21.90.10	----- 생선 파스타
61	1605.21.90.20	----- 가루 입힌 새우
62	1605.21.90.90	----- 기타
	1605.29	-- 기타
63	1605.29.10.00	--- 새우 파스타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번호	관세 번호	식품 분류
	1605.29.90	--- 기타:
64	1605.29.90.10	---- 생선 파스타
65	1605.29.90.20	---- 가루 입힌 새우
66	1605.29.90.90	---- 기타
67	1605.30.00.00	- 바닷가재(롭스터)
68	1605.40.00.00	- 기타 갑각류
		- 연체 동물:
69	1605.51.00.00	-- 굴
70	1605.52.00.00	-- 여왕 가리비를 포함한 가리비
71	1605.53.00.00	-- 홍합/늪말조개
72	1605.54.00.00	-- 오징어와 갑오징어
73	1605.55.00.00	-- 문어
74	1605.56.00.00	-- 조개, 굴, 꼬막/돌조개(ark shell)
75	1605.57.00.00	-- 전복
76	1605.58.00.00	-- 바다달팽이 이외의 달팽이
77	1605.59.00.00	-- 기타
		-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78	1605.61.00.00	-- 해삼
79	1605.62.00.00	-- 섬게
80	1605.63.00.00	-- 해파리
81	1605.69.00.00	-- 기타
	<b>17.04</b>	<b>코코아를 함유하지 않는 사탕 (화이트초콜릿 포함)</b>
82	1704.10.00.00	- 설탕 코팅 또는 하지 않은 껌
	1704.90	- 기타
83	1704.90.10.00	-- 약물을 포함하는 향정 및 드롭
84	1704.90.20.00	-- 화이트초콜릿
		-- 기타:
85	1704.90.91.00	---- 젤라틴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것
86	1704.90.99.00	---- 기타
	<b>18.06</b>	<b>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하는 기타 가공식품</b>
	1806.20	- 2kg을 초과하는, 용기 또는 즉시 포장된 액체, 파스타, 분말, 알갱이 또는 기타 판 형태로 중량 2 kg 이상의 블록, 판 또는 바 형태의 기타 가공품:
87	1806.20.10.00	-- 블록, 판 또는 바 형태의 초콜릿 캔디
88	1806.20.90.00	-- 기타
		- 기타 블록, 판 또는 바 형태의 것:
	1806.31	-- 속을 채운 것:
89	1806.31.10.00	---- 초콜릿 캔디
90	1806.31.90.00	---- 기타
	1806.32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91	1806.32.10.00	---- 초콜릿 캔디
92	1806.32.90.00	---- 기타
	1806.90	- 기타: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번호	관세 번호	식품 분류
93	1806.90.10.00	-- 타블렛 또는 마름모꼴 형태의 초콜릿 캔디
94	1806.90.30.00	-- 가루, 거친 가루, 전분 또는 맥아 추출물의 가공 식품, 중량의 40% 또는 그 이상의 코코아를 함유하나 50%미만의 코코아를 함유
95	1806.90.40.00	-- 04.01에서 04.04까지의 가공식품, 중량의 5% 또는 그 이상이나 10%미만의 코코아를 함유한, 아기용으로 특별 조제된, 소매 판매용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
96	1806.90.90.00	-- 기타
	19.01	맥아추출물; 분말, 싸라기, 거친 분말, 전분 또는 맥아 추출물의 가공식품, 전체 지방을 뺀 코코아베이스에 대해 계산했을 때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의 40% 미만의 코코아를 함유한, 다른 번호에 포함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04.01에서 04.04까지의 가공식품, 전체 지방을 제외한 코코아베이스에 대해 계산했을 때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의 5% 미만의 코코아를 함유한, 다른 번호에 포함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것.
	1901.10	- 유아용 가공품, 소매용:
97	1901.10.10.00	-- 맥아 추출물
98	1901.10.20.00	-- 번호 04.01 에서 04.04 까지의 제품
99	1901.10.30.00	-- 콩 분말의 것
		-- 기타:
100	1901.10.91.00	---- 의료 식품
101	1901.10.99.00	---- 기타
	1901.20	- 빵 제조를 위한 19.05의 혼합 및 반죽:
102	1901.20.10.00	-- 가루, 싸라기, 거친 가루, 전분 또는 맥아추출물,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103	1901.20.20.00	-- 분말, 싸라기, 거친 분말, 전분 또는 맥아추출물, 코코아를 함유한 것
104	1901.20.30.00	--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는 것
105	1901.20.40.00	--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
	1901.90	- 기타:
		-- 유아 식품, 소매 판매용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
106	1901.90.11.00	---- 의료 식품
107	1901.90.19.00	---- 기타
108	1901.90.20.00	-- 맥아추출물
		-- 기타,04.01에서 04.04.까지의 제품:
109	1901.90.31.00	---- Filled milk
110	1901.90.32.00	---- 기타,코코아분말을 함유한 것
111	1901.90.39.00	---- 기타
		-- 콩을 기반으로 한 기타 가공품: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번호	관세 번호	식품 분류
112	1901.90.41.00	--- 분말 형태의 것
113	1901.90.49.00	--- 다른 형태의 것
		-- 기타:
114	1901.90.91.00	---- 의료 식품
	1901.90.99	---- 기타:
115	1901.90.99.10	----- 새우 크래커
116	1901.90.99.90	----- 기타
	<b>19.02</b>	<b>파스타, 조리되거나 속이 채워지거나 그렇지 않은 (고기나 다른 재료가 들어있는) 또는 다른 형태로 조제된 것, 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라자냐, 뇨치, 라비올리, 카넬로니; 쿠스쿠스, 조제된 또는 그렇지 않은 것.</b>
		- 속을 채우거나 가공을 하지 않은 거친 파스타
117	1902.11.00.00	-- 계란을 포함
	1902.19	-- 기타:
118	1902.19.20.00	---- (쌀로 만든)국수, 당면
119	1902.19.30.00	---- 가는 국수, 당면
120	1902.19.40.00	---- 국수
121	1902.19.90.00	---- 기타
	1902.20	- 요리 또는 가공하거나 그렇지 않은 속을 채운 파스타:
122	1902.20.10.00	-- 고기 또는 나머지 고기로 속을 채운 것
123	1902.20.30.00	-- 생선, 달팽이 또는 연체동물로 속을 채운 것
124	1902.20.90.00	-- 기타
	1902.30	- 기타 파스타:
125	1902.30	-- 인스턴트 당면
126	1902.30.30.00	-- 가는 국수, 당면
127	1902.30.40.00	-- 다른 인스턴트 국수
128	1902.30.90.00	-- 기타
129	1902.40.00.00	- 쿠스쿠스
	<b>19.04</b>	<b>곡물 또는 곡물제품을 볶거나 팽창시키는 방법으로 얻은 가공식품(예를 들어, 옥수수 칩); 시리얼(옥수수 외), 알갱이 또는 조각 또는 기타 작업을 거친 형태의(분말, 싸라기, 거친 입자 제외), 조리 또는 가공하지 않은, 다른 번호를 포함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것.</b>
	1904.10	- 볶거나 팽창시킨 곡물 또는 곡물 제품에서 얻은 가공 식품:
130	1904.10.10.00	-- 코코아 함유
131	1904.10.90.00	-- 기타
	1904.20	- 볶지 않은 곡물 칩 또는 볶거나 팽창시킨 곡물 칩과 볶지 않은 곡물 칩의 혼합물에서 얻은 가공 식품
132	1904.20.10.00	-- 볶지 않은 곡물 칩에서 유래된 가공 식품
133	1904.20.90.00	-- 기타
134	1904.30.00.00	- 구워서 빵은 밀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번호	관세 번호	식품 분류
	1904.90	- 기타:
135	1904.90.10.00	-- 가공된 쌀(생쌀 포함)
136	1904.90.90.00	-- 기타
	<b>19.05</b>	<b>빵, 러스크, 케이크, 쿠키와 기타 빵제품, 코코아를 함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웨이퍼, 밀봉 웨이퍼, 라이스페이퍼와 그 유사제품</b>
137	1905.10.00.00	- 외각질의 빵(마른빵)
138	1905.20.00.00	- 생강빵과 동종품
		- 달콤한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1905.31	-- 달콤한 비스킷:
139	1905.31.10.00	---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140	1905.31.20.00	--- 코코아를 함유한 것
141	1905.32.00.00	-- 와플과 웨이퍼
	1905.40	- 러스크, 구운 빵과 유사 구운 제품:
	1905.40.10	-- 설탕, 꿀, 계란, 지방, 치즈 또는 과일을 첨가하지 않은 것:
142	1905.40.10.10	--- 빵가루
143	1905.40.10.90	--- 기타
144	1905.40.90.00	-- 기타
	1905.90	- 기타:
145	1905.90.10.00	-- 달지 않은 베어 먹는 비스킷
146	1905.90.20.00	-- 기타 달지 않은 비스킷
147	1905.90.30.00	-- 과자/쿠키/케이크
148	1905.90.40.00	-- 마른 과자
149	1905.90.50.00	-- 밀가루를 뺀 빵제품
151	1905.90.70.00	-- 웨이퍼, 밀봉 웨이퍼, 라이스페이퍼 및 유사제품
152	1905.90.80.00	-- 기타 바삭한(crisp) 제품
153	1905.90.90.00	-- 기타
	<b>20.02</b>	<b>식초 또는 초산과는 다른 조제 또는 가공 처리한 토마토</b>
	2002.90	- 기타:
154	ex. 2002.90.10.00	-- 병 또는 작은 봉지 포장의 토마토 페이스트
	<b>20.07</b>	<b>과일 또는 견과류의 잼, 과일젤리, 마멀레이드, 푸레와 페이스트, 조리된 열은 것, 부가적인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b>
155	2007.10.00.00	- 균질화한 조제품(homogenised preparations)
	2007.99	-- 기타:
156	2007.99.10.00	--- 망고, 파인애플, 딸기 이외의 과일 입자 및 페이스트
157	2007.99.90.00	--- 기타:
	<b>20.08</b>	<b>과일, 견과류 및 기타 먹거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식물 부위, 부가적인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다른 번호에 포함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것.</b>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번호	관세 번호	식품 분류
		- 콩/견과류, 땅콩 및 기타 씨앗, 혼합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
	2008.11	-- 땅콩:
158	2008.11.10.00	--- 구운 것/볶은 것
159	2008.11.20.00	--- 땅콩 버터
160	2008.11.90.00	--- 기타
	2008.19	-- 기타, 혼합물 포함:
161	2008.19.10.00	--- 캐슈너트
162	2008.19.90.00	--- 기타
	2008.40	- 배:
163	2008.40.10.0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164	2008.40.90.00	-- 기타
	2008.50	- 살구:
165	2008.50.10.0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166	2008.50.90.00	-- 기타
	2008.60	- 체리:
167	2008.60.10.0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168	2008.60.90.00	-- 기타
	2008.70	- 복숭아, 천도복숭아 포함
169	2008.70.10.0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170	2008.70.90.00	-- 기타
	2008.80	- 딸기:
171	2008.80.10.0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172	2008.80.90.00	-- 기타
		- 기타, 2008.19의 혼합물 이외 혼합물을 포함
173	2008.91.00.00	-- 야자 열매(Palm hearts)
174	2008.93.00.00	-- 크렌베리 ( <i>Vaccinium macrocarpon</i> , <i>Vaccinium oxycoccos</i> , <i>Vaccinium citisidaea</i> )
	2008.99	-- 기타
175	2008.99.10.00	--- 리치
176	2008.99.30.00	--- 줄기, 뿌리 및 먹을 수 있는 기타 식물 부위의 것, 과일 또는 견과류를 포함하지 않는 것
177	2008.99.40.00	--- 기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알코올을 첨가한 것.
178	2008.99.90.00	--- 기타
	20.09	<b>과일 주스 (포도 포함) 및 야채 주스, 발효하지 않고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설탕 또는 기타감미료를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b>
		- 기타 감귤류 과일 주스:
179	2009.31.00.00	-- 20 Brix를 초과하지 않은 것
180	ex. 2009.50.00.00	- 토마토 주스
181	2009.81.10.00	--- 이유식
182	ex. 2009.81.90.00	--- 기타
		- 기타 한 종류 과일 또는 야채의 주스: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번호	관세 번호	식품 분류
		-- 기타:
		--- 기타:
183	2009.89.91.00	---- 이유식
	2009.90	- 혼합 주스:
184	2009.90.10.00	-- 이유식
	21.01	<b>커피, 차, 또는 마테의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액과 이 제품 원료와 커피, 차 또는 마테의 가공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액</b>
		- 커피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액, 기초 커피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액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반으로 한 조제품:
	2101.11	--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액:
185	2101.11.10.00	--- 인스턴트 커피
186	2101.11.90.00	--- 기타
	2101.12	-- 커피 추출물, 에센스 또는 농축액 기반의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반으로 한 조제품:
187	2101.12.10.00	--- 볶은 커피를 재료로 한 페이스트 형태의 혼합물, 식물성 지방을 포함
188	2101.12.90.00	--- 기타
	2101.20	- 차 또는 마테와 조제품의 추출물, 에센스와 농축액, 차를 기반으로 한 추출물, 에센스 또는 농축액과 차 또는 마테 기체 조제품:
189	2101.20.10.00	-- 차, 분말 우유와 설탕의 혼합물로 구성된 차 조제품
190	2101.20.90.00	-- 기타
191	2101.30.00.00	-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 그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액
	21.03	<b>소스와 조제품; 혼합 조미료와 향료 혼합물; 겨자 가루와 거친 겨자 가루 및 겨자(mustar) 조제품.</b>
192	2103.10.00.00	- 소스(kecap)
193	2103.20.00.00	- 토마토케첩과 기타 토마토 소스
194	2103.30.00.00	- 겨자 가루와 거친 겨자 가루 및 겨자(mustar) 조제품
	2103.90	- 기타:
195	2103.90.30.00	-- 생선 소스
196	2103.90.40.00	-- 기타 허브 혼합물 및 혼합 조미료, 새우 조미료 포함
197	2103.90.90.00	-- 기타
	21.04	<b>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용 조제품; 가공식품의 균질 혼합물.</b>
	2104.10	-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용 조제품:
		-- 고기 포함:
198	2104.10.11.00	--- 이유식
199	2104.10.19.00	--- 기타
		-- 기타:

【표 2-20】 특정제품 식품분류

번호	관세 번호	식품 분류
200	2104.10.91.00	--- 이유식
201	2104.10.99.00	--- 기타
	2104.20	- 가공식품의 균질 혼합물:
		-- 고기 포함:
202	2104.20.11.00	--- 이유식
203	2104.20.19.00	--- 기타
		-- 기타:
204	2104.20.91.00	--- 이유식
205	2104.20.99.00	--- 기타
206	2105.00.00.00	아이스크림과 식용의 기타 얼음, 코코아를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것.
	22.01	물, 천연 또는 인공 미네랄워터와 소다수를 포함,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는 것; 눈과 얼음.
	2201.10.00	- 미네랄워터와 소다수:
207	2201.10.00.10	-- 미네랄워터
208	2201.10.00.20	-- 소다수
	2201.90.90.	-- 기타:
209	2201.90.90.10	--- 탈염수(Demineralised water)
	22.02	물, 미네랄워터와 소다수를 포함, 설탕 또는 기타감미료 또는 향미료 첨가, 기타 알코올을 첨가하지 않는 음료, 20.09의 과일 또는 야채 주스를 포함하지 않는 것
	2202.10	- 물, 미네랄워터와 소다수를 포함, 부가적인 설탕 또는 기타감미료 또는 향미료 첨가하는 것
210	2202.10.10.00	-- 스파클링 미네랄워터나 소다수, 가미한 것
211	2202.10.90.00	-- 기타
	2202.90	- 기타:
212	2202.90.10.00	-- 가미한 초고온살균(UHT) 우유
213	2202.90.20.00	-- 두유
214	2202.90.30.00	-- 희석 없이 즉석섭취용의 소다를 첨가하지 않은 음료
215	2202.90.90.00	-- 기타
<b>B.</b>	<b>전통 의약품 및 식품 보조제</b>	
	21.06	다른 번호에 포함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가공식품.
	2106.90	- 기타:
220	2106.90.70.00	-- 식품 보충제
221	2106.90.80.00	-- 신체 내구력 증강 혼합물
		-- 기타:
222	2106.90.91.00	--- 화학 제품과 식재료 또는 영양분 있는 기타 영양소의 기타 혼합물, 식품 가공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223	2106.90.92.00	--- 인삼 기반의 조제품

## 1.5. 수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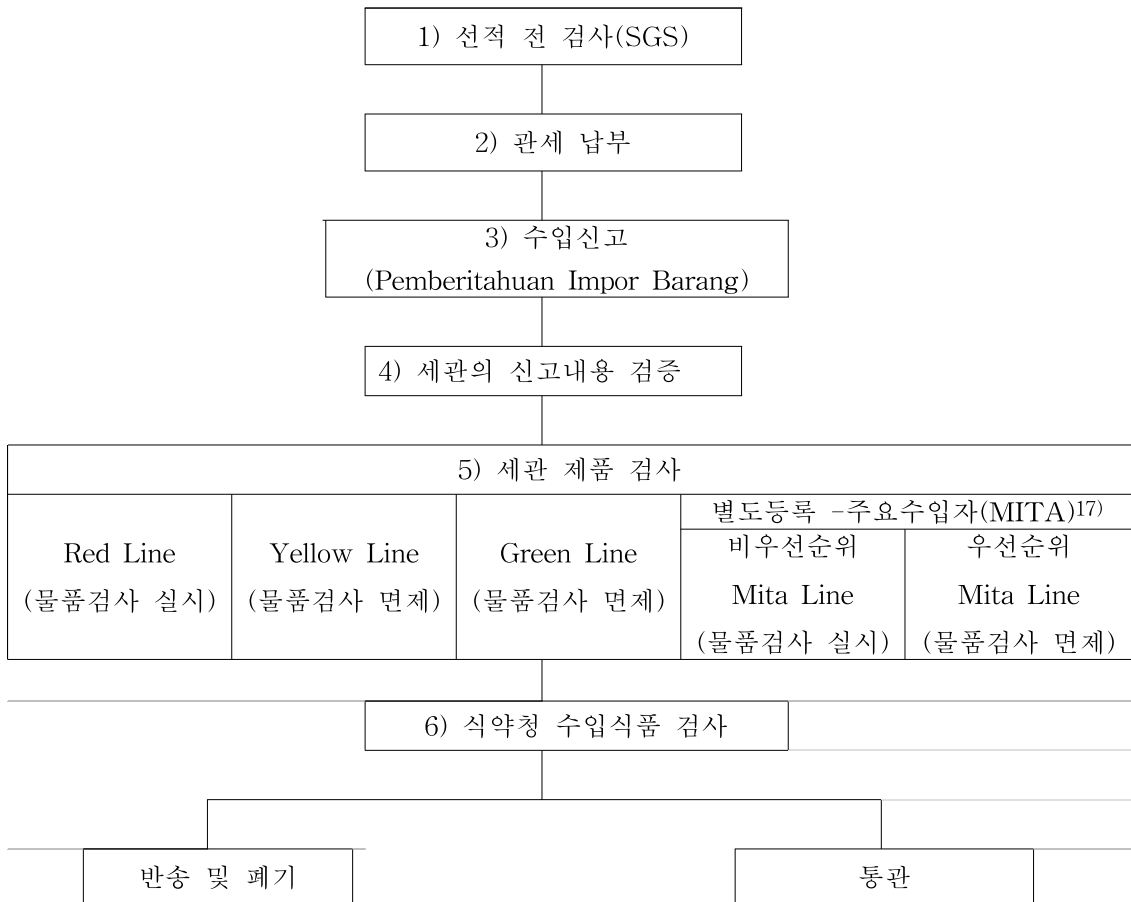
### 1.5.1. 수입통관 절차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라 함은 해외에서 육지, 바다, 대기를 통해 국내로 제품을 들여오는 활동을 말하며, 이 같은 수입제품은 수입관세의 대상이 된다. 수입식품 통관 및 검역 절차는 【그림 2-6】 과 같다.
- 1) **선적 전(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GS) 검사**: 무역부에서 지정한 특정물품에 해당하는 식품 수출입을 위해서는 지정된 회사를 통해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수출업체가 주문서(offer sheet)를 수입업체에 보내면 수입업체에서 SGS 인도네시아로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번호가 발급되면 한국의 업체는 이 검사번호를 받아 SGS 한국 측에 검사를 신청한다.
- 2) **관세 납부** : 관세 및 기타 관련세금을 관세청 서비스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과, 허가된 외환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 3) **수입 신고** :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항만이나 지역 또는 공항 세관에서 전자데이터교환(EDI)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 4) **세관의 신고내용 검증** :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관세 및 체세 납부 영수증, 검사보고서(Laporan Surveyor)이며 필요시 식약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증명서, 수출국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제품 관련 카탈로그와 같은 서류를 전자식(EDI)/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 5) **제품검사 및 반출<sup>16)</sup>** : 수입자가 해당 보세창고에 납세영수증과 확인받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검사직원은 당해 수입제품을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검사한다. 검사한 제품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할 경우,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수입자에게 제품반출을 허락한다.
  - 수입자의 과거 수입기록, 수입제품의 위험정도, 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품목은 화물 선별시스템에 의해 물품검사 면제대상(Green Line), 물품검사 면제대상(Yellow Line), 물품검사 실시대상(Red Line)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실시한다.

16) 각주: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업체 무궁화 유통그룹의 자문을 받았으며 2013년 6월 20일 통관절차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 물품검사 면제대상(Green Line)인 경우에는 화물출고동의서(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SPPB)가 발급되고 서류 조사 실시 후 즉시 통관이 완료된다.
  - 물품검사 실시대상(Red Line)인 경우에는 세관의 실제 화물 검사를 위하여 화물 컨테이너를 이동시킨다.
- 6) 식약청(BPOM)의 재검사 : 2013년에 ML(식약청 수입가공식품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제품의 경우, 관세청의 제품반출 허락 이후에도 식약청의 추가 검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그림 2-6】 수입식품 통관 절차



17) 주요수입자: MITA, 인도네시아어로 '주요수입자'를 뜻하는 말인 'MITRA UTAMA'의 약자이며, 전자 서비스(EDI, 전자 데이터교환 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는 수입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서류와 지불금을 준비해 신청을 하고 주요수입자로 승인을 받을 경우 통관 시 시간이 절약되는 등 혜택이 있다.



### 1.5.1.1 관세 납부

- 수입자는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 제세 및 부가세 등을 계산한 수입신고서 (PIB)를 준비한다. 수입신고서 제출 시 관세청 이용자 요금(Penerimaan Negara Bukan Pajak)을 내는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EDI)의 접속이용료로, 수출입 활동 자동화를 위한 IT 업무의 전송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수입관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수입 관세 및 제세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된 외환은행을 통해서 혹은 관세청 서비스사무소를 통해서 납부한다. 다음은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제세이다.
  - 수입관세: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0% - 170%의 요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VAT): 요율은 0% - 10%이다.
  - 사치품 판매세 (STLG): 제품의 유형에 따라 10%, 20%, 35%, 40% 혹은 50% 등이 적용된다.
  - 소득세 (PPH): 무역부에 등록된 수입자는 2.5%, 미등록된 수입자는 7.5%
- INSW를 통해 HS 코드 별로 제품의 관세율 및 기타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
  - HS 코드 별 관세 및 제세금 조회 웹사이트:  
<http://eservice.insw.go.id/index.cgi?page=hs-code-information.html>
- 전자데이터교환(EDI)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항구 및 수카르노하타(Soekarno Hatta) 공항에서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는 전자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 1.5.1.2 수입 신고

- 수입 신고는 수입신고서(Pemberitahuan Impor Barang)를 관세청(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수입신고서를 전자(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 서류의 정정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2일 전에 모든 수입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 직접 제출
  - 수입신고서(Pemberitahuan Impor Barang, PIB)
  - 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irway Bill)
  - 보험증권
  - 관세 및 제세 납부 증명(영수증)
  - 수입자 부가가치세 양식 사본
  - 검사 보고서(Laporan Surveyor)
  - 식품수입 증명서(Surat Keterangan)
  - 원산지 증명서(Form AK)
  
- 전자 제출(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beacukai.go.id>

#### 1.5.1.3 세관의 신고내용 검증

- 수입자가 수입신고서(PIB)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 보고서, 수입 관세 및 제세 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 문서들을 검토한다.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제품의 실물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 1.5.1.4 반입제품의 검사 분류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자와 수입제품에 기초하여 제품 “검사 면제” 또는 “검사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신규수입자, 고위험 분류에 포함된 수입자, 한시적 수입 제품, 재수입 제품, 무작위 검사 대상, 정부지정 특정수입제품, 식품, 고위험 상품에 포함된 수입제품, 또는 고위험국에서 온 제품 등은 검사 대상(Red Line)으로 분류되어 레드라인 통지서(Surat Pemberitahuan Jalur Merah, SPJM)가 발급되고 해당 수입자는 제품검사를 받게 된다.
  
- 수입신고서가 “검사면제”로 분류된 경우 제품반출승인서(Surat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SPPB)가 발급된다.

### 1.5.1.5 제품검사 및 반출

- 제품 검사대상(Red Line)의 경우
  - 포장명세서와 실물 비교를 통해 제품검사의 등급을 결정한다.  
10%, 30%, 100% 제품검사 등급으로 나뉘며, 포장명세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물의 번호가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100%의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며 처음에 10% 혹은 30%의 제품검사 등급을 받았더라도 추후에 포장명세서와 제품과의 불일치 등이 발견되면 100% 제품검사로 강등되므로 포장명세서의 모든 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제품 검사가 끝나면 제품을 검사한 세관 공무원은 검사 결과 보고서(Laporan Hasil Pemeriksaan, LHP)를 작성하여 수입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 세관이 전자(EDI)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제품검사 공무원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다.

### 1.5.1.6 식약청의 추가 검사<sup>18)</sup>

- 2013년 3월 이후 신규로 받은 ML번호 해당 식품에 대해서, 관세청의 제품 검사 이후 식약청(BPOM)의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에서 제품 검사를 마친 뒤 출고해도 좋다는 제품반출동의서(SPPB)를 발행한 뒤에 식약청의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2013년 3월 이후 ML을 받은 포장식품, 통조림 식품, 수산물 및 수산물 제품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 2 수입규제제도

### 2.1. 식품표시제도

#### 2.1.1. 라벨링

##### 2.1.1.1. 라벨에 관한 법규

- 인도네시아 식품법 제 97조에 의거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에는 최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8)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업체와의 회의(2013년 6월 20일 통관절차 관련 회의)를 통하여 자문을 받았다.

- 제품명
  - 구성성분(사용된 재료 목록)
  - 순중량 또는 순함량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정보(상호 및 주소)
  - 할랄(Halal) 인증(필요한 경우)
  - 제조날짜 및 제조코드
  - 유통기한(년/월/일)
  - 가공식품의 유통 허가 번호(ML등록번호)
  - 특정식품의 원산지
- 식품 라벨과 광고 규정<sup>19)</sup>
- 헌법, 보건법, 식품법에 근거하여 1999년 제정된 정부 규정으로 가공식품의 라벨과 광고 조건, 할랄 라벨 등 라벨 및 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벨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며 아라비아 숫자, 라틴문자를 사용한다.
- 식품첨가물 규정 중 라벨 관련 조항
- 보건부 규정<sup>20)</sup>에서는 식품첨가물을 함유한 식품의 라벨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이 밖에도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폴리올, 설탕, 향료등의 첨가물을 첨가한 식품에 경고문구와 해당 정보, 권장사항 등을 표기할 것을 규정한다. 식품첨가물 규정의 라벨 관련 조항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식품 라벨과 광고 규정: Gov. Regulation No.69/1999

원문출처: [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PEMERINTAH/PP\\_No\\_69\\_th\\_1999.pd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PEMERINTAH/PP_No_69_th_1999.pdf)

20) 식품첨가물 규정: Regulation No.033/MENKES/2012

원문출처:

[http://jdih.pom.go.id/produk/KEPUTUSAN%20KEPALA%20BPOM/35\\_2006%20NO.HK.00.05.52.4040-2006\\_sudah\\_ok\\_pangan.PDF](http://jdih.pom.go.id/produk/KEPUTUSAN%20KEPALA%20BPOM/35_2006%20NO.HK.00.05.52.4040-2006_sudah_ok_pangan.PDF)

【그림 2-7】 과자류-과자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순중량

ML등록번호

수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구성 성분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8】 과자류-캔디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구성 성분

수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순중량

ML등록번호

제조코드

유통기한

보관방법

【그림 2-9】 과자류-초콜릿가공품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구성 성분

수입업체 정보

순중량  
ML 등록번호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10】 과자류-껌 표시사항 예시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한  
자일리톨 껌의 라벨 표시



제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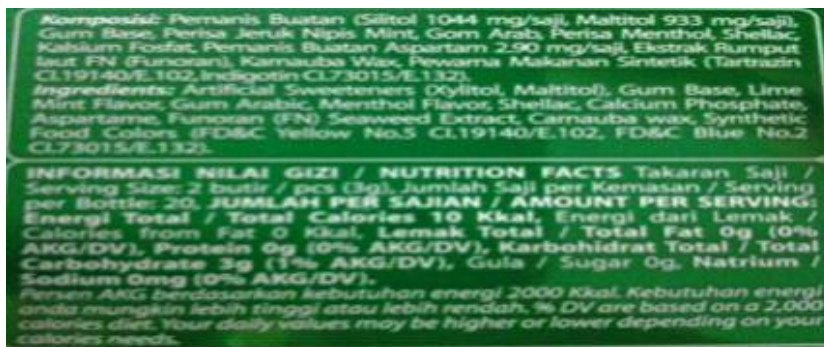
MD(국내가공식품) 등록번호  
제조업체 정보



지나친 섭취는 설사유발 가능성이  
있음.

인공감미료를 첨가했으므로 5세  
이하 아동의 섭취는 적합하지 않음.

우측 하단의 표기는 MUI로 부터의  
할랄 인증 마크와 고유번호



구성 성분

영양 성분

【그림 2-11】 식용유지류-콩기름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순종량  
ML등록번호  
수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구성 성분

보관방법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12】 식용유지류-참기름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구성 성분  
 수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순중량  
 ML등록번호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13】 면류-국수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순중량  
 ML등록번호  
 제조업체 정보  
 수입업체 정보  
 구성 성분  
 사용방법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14】 면류-당면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순중량**  
**ML등록번호**  
**수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구성 성분**  
**사용방법**  
**제조코드**  
**유통기한**

OTTOGI  
 SOHUN (KOREAN VERMICELLI)  
 Berat bersih : 500g  
 BPOM RI ML 229018001336  
 Di impor oleh : PT. TIRTA BUANA INDORAYA  
 Jakarta 12190 Indonesia  
 Telepon : 021-29451054/55  
 Diproduksi oleh: OTTOGI CORPORATION Korea  
 Komposisi:  
 Pati ubi, Pati  
 Petunjuk penggunaan: masukkan otogi vermicelli korea pada air mendidih diamkan selama 6 menit. Tiriskan selama 2-3 menit dim air dingin hingga halus. Vermicelli dapat digunakan utk berbagai makanan.  
 Kode Produksi: Lihat pada kemasan  
 Baik digunakan sebelum: Lihat pada kemasan

【그림 2-15】 면류-인스턴트면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순중량**  
**제조코드**  
**유통기한**  
**구성 성분**  
**ML등록번호**  
**제조업체 정보**  
**수입업체 정보**

비빔면 CV-N00-05  
 PALDO MI INSTAN RASA APEL (BIBIMENI)  
 Berat Bersih: 130 Gram  
 Kode Produksi: Lihat Kemasan  
 Baik Digunakan Sebelum: Lihat Kemasan  
 Komposisi: Mi (Tepung Terigu, Minyak Ketapa Sawit, PatiKentang Termodifikasi, Garam, Pengemulsi nabati, Bumbu [ Gula, Air, Cabai Pasta, Sari apel, Kecap Kedelai, Bubuk Cabai Merah, garam, cuka, pasta bawang, minyak kedelai]  
 BPOM RI ML 227218006314  
 Diproduksi oleh: KOREA YAKULT CO LTD  
 258 Moonchonri Bubalop, Icheon, Gyeonggido, Korea  
 Diimpor Oleh: CV. Aneka Semesta Nutrisindo  
 Jl Rawasari Selatan No. 8 Jakarta 10570  
 Indonesia

【그림 2-16】 다류-침출차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구성 성분

순함량

수입업체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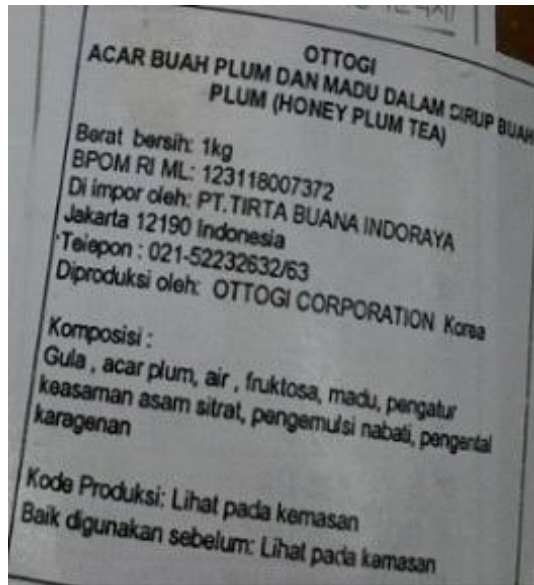
제조업체 정보

ML등록번호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17】 다류-액상차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순중량  
ML등록번호  
수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구성 성분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18】 커피-조제커피 표시사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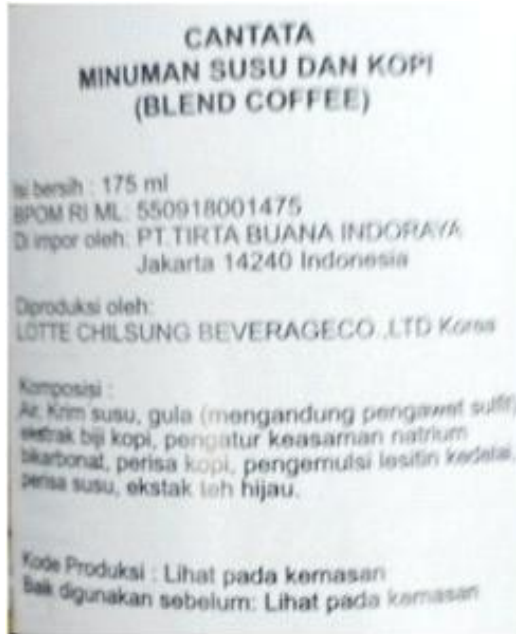
제품명

수입 및  
유통업체 정보

ML등록번호  
순중량  
구성 성분

유통기한,  
제조코드

【그림 2-19】 커피-엑상커피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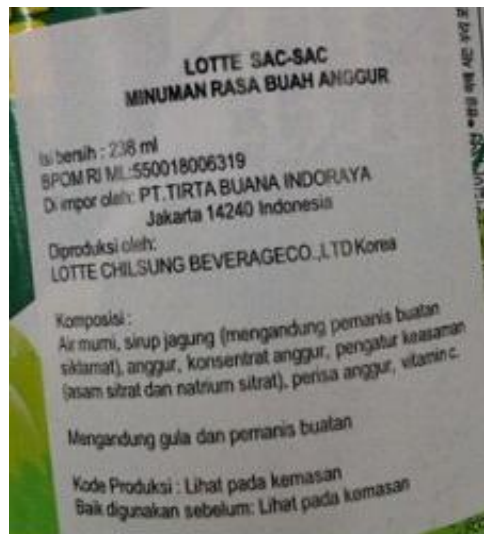
순중량  
ML등록번호  
수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구성 성분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20】 음료류-과일주스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순중량  
ML등록번호  
수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구성성분

특정성분 표기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21】 음료류-과채주스 표시사항 예시



**Komposisi :**  
 Puree brokoli, air, pasta tomat, puree buah kwi, sari buah nanas, konsentrat sari buah anggur, konsentrat sari buah apel, konsentrat sari buah jeruk, teh hijau

---

**INFORMASI NILAI GIZI**  
 Takaran saji 1 gelas (200 ml)  
 Jumlah sajian per kemasan : 5

---

**JUMLAH PER SAJIAN**  
 Energi total 80 kkal  
 Energi dari lemak 0 kkal

		% AKG*
Lemak total	0 g	0 %
Lemak jenuh	0 g	
Kolesterol	0 mg	0 %
Protein	1 g	1 %
Karbohidrat total	20 g	7 %
Serat pangan	7 g	28 %
Gula	12 g	
Natrium	55 mg	2 %
Vitamin A		110 %
Vitamin C		80 %
Vitamin B1		50 %
Vitamin B2		50 %
Vitamin E		100 %
Kalsium		15 %
Zat besi		8 %

\*Persen AKG berdasarkan kebutuhan energi 2000 kkal  
 Kebutuhan energi Anda mungkin lebih tinggi atau lebih rendah.  
 \*Persen AKG untuk vitamin dan mineral didasarkan pada kebutuhan rata-rata orang dewasa.  
 For better taste, chill and shake well before serving.  
 Keep refrigerated after opening and consume within 3 days.  
 Don't try if you're allergic to brocoli and/or apple juice.

구성 성분

영양 성분

【그림 2-22】 음료류-녹두음료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제조업체 정보  
순종량  
MD(국내가공식품)등록 번호



제품명

구성 성분

포장정보

사용방법

INFORMASI NILAI GIZI (NUTRITION FACTS)		
Takaran Saji 1 Kotak (250 ml)		
Serving Size 1 Pack (250 ml) / 8.45 fl.oz.		
Jumlah Sajian per Kemasan : 1		
Serving per Container : 1		
JUMLAH PER SAJIAN (AMOUNT PER SERVING)		
Energi Total 90 kkal	Energi dari Lemak 0 kkal	
Total Energy 90 kkal	Energy from Fat 0 kkal	
%RANGG, %DIA*		
Lemak Total (Total Fat)	0 g	0 %
Protein	2 g	3 %
Karbohidrat Total (Total Carbohydrate)	22 g	7 %
Gula (Sugar)	21 g	
Natrium (Sodium)	80 mg	3 %
Kalsium (Calcium)	50 mg	1 %
Vitamin C		8 %
Vitamin B1		60 %
Vitamin B2		25 %
Vitamin B3		30 %
Vitamin B6		50 %
Vitamin B12		50 %
Asam Fatat (Paku Asid)	120 mg	
Kalsium (Calcium)	30 mg	
Zat Besi (Iron)	5 mg	
Natrium (Sodium)	25 mg	
Zink (Zinc)	50 mg	
Selenium	20 mg	
*Persen RAG menunjukkan kebutuhan energi 2000 kkal. Kebutuhan energi anda mungkin lebih tinggi atau lebih rendah.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s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		

영양 성분

【그림 2-23】 음료류-인삼음료 표시사항 예시



**구성 성분**

Komposisi:  
Ac. Asam, Asam Garam,  
Pengatur Keasaman (asam Sitrat,  
Natrium Sitrat),  
Pengawet Natrium Benzoat,  
Toksisida Vitamin C,  
Nestlémande, Vitamin B<sub>1</sub>.

**라이선스 번호**

Licence No. 63  
KOREAN GINSENG DRINK

**제품명**

WON KI SAM

**제조코드**

KODE PRODUKSI:  
WK108-011068

**제조날짜**

TANGGAL PRODUKSI:  
08.03.2013

**유통기한**

SUKU DIGUNAKAN SEBELUM:  
07.03.2015

MADE IN KOREA



【그림 2-24】 장류-된장 표시사항 예시



**TAUCO**  
(Soy Bean Paste Doenjang)

**Nama Dagang:** Chung Jung Won  
**Berat bersih:** Lihat kemasan.  
**Komposisi:**  
Air, Kedelai, Terigu, Garam, Kedelai terfermentasi, Tepung kedelai, Spirit, Biji malt.  
**Mengandung Alkohol:** 0,6%  
**Diproduksi oleh:**  
Daesang Corporation Sunchang Plant, 203-7 Ganam-Ri, Sunchang-Eup, Sunchang-Gun, Jeonrabook-Do, Korea.  
**Diimpor dan didistribusikan oleh:**  
PT Jico Agung, Jakarta 13260 – Indonesia  
**BPOM RI ML 245618005297**  
**Kode Produksi:** Lihat kemasan.  
**Baik digunakan sebelum:** Lihat kemasan.

제품명

업체명

순종량

구성 성분

알코올 함유

제조업체 정보

수입 및 유통업체 정보

ML등록번호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25】 장류-고추장 표시사항 예시



**CHUNG JUNG WON SAUS CABE**  
(Hot Pepper Paste Gochujang)  
Mengandung Alkohol ± 0,72%

**Nama Dagang:** Chung Jung Won  
**Berat bersih:** Lihat kemasan.  
**Komposisi:** Sirup jagung, Beras, Air, Bumbu dasar Cabe (Cabe merah bubuk, Garam, Bawang putih, Bawang merah), Cabe merah bubuk, Kedelai terfermentasi, Garam, Spirit, Ekstrak ragi, Beras ketan, Biji gandum.  
**Diproduksi oleh:** Daesang Corporation Sunchang Plant, 203-7 Ganam-Ri, Suncang-Eup, Suncang-Gun, Jeollabuk-Do, Korea.  
**Diimpor dan didistribusikan oleh:**  
PT Jico Agung, Jakarta 13260 – Indonesia  
**BPOM RI ML 245318008297**  
**Kode produksi:** Lihat kemasan.  
**Baik digunakan sebelum:** Lihat kemasan.

제품명

업체명

순종량

구성 성분

제조업체 정보

수입 및 유통업체 정보

ML등록번호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26】 조미식품-소스류 표시사항 예시



**STEAK SAUCE**  
(Saus Steak)

Nama Dagang: Cheong Jeong Won  
Berat bersih: Lihat kemasan.  
Komposisi:  
Pasta Tomat, Fruktosa, Cuka masak, Sirup Gandum, Gula, Glukosa, Garam, Merica hitam bubuk, Bumbu kari, Ekstrak bawang, Penguat rasa monosodium L-glutamat, Minyak kedelai, Kayu manis bubuk, Jahe bubuk, Pengatur keasaman asam sitrat, Bawang bubuk, Bawang putih bubuk, Air.

Diproduksi oleh:  
Daesang Corporation, Seoul - Korea  
Diimport dan didistribusikan oleh:  
PT Jici Agung, Jakarta 13260 - Indonesia  
**B POM RI ML 248118045108**  
Kode produksi: Lihat kemasan.  
Baik digunakan sebelum: Lihat kemasan.

제품명

업체명

순중량

구성 성분

제조업체 정보

수입 및 유통업체 정보

ML등록번호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27】 주류-탁주 표시사항 예시



**B POM RI ML 200618001511**  
"Minuman Beralkohol Gol. A (4,5%)"  
Komposisi : Hasil fermentasi Beras, CO2  
Diimport oleh  
PT. Sarinah ( Persero ), Jakarta 10350 Indonesia  
Didistribusikan oleh :  
PT. Nano Logistic, Jakarta 11510 Indonesia  
Baik digunakan sebelum : lihat kode produksi  
Di bawah umur 21 tahun atau wanita hamil dilarang minum

ML등록번호

특별표기사항: 알코올음료 그룹명, 알코올 도수

구성 성분

수입업체 정보

유통업체 정보

유통기한

경고문구 21세 이하 또는 임신한 여성은 섭취를 금지한다

【그림 2-28】 주류-맥주 표시사항 예시



ML등록번호

특별표기사항: 알코올음료 그룹명

구성 성분

수입업체 정보

유통업체 정보

유통기한

경고문구

【그림 2-29】 기타식품류-조미김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순중량

ML등록번호

수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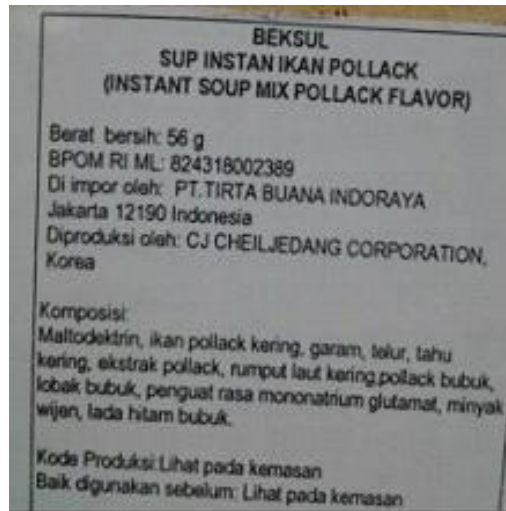
구성 성분

사용 방법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30】 기타식품류-즉석섭취식품 표시사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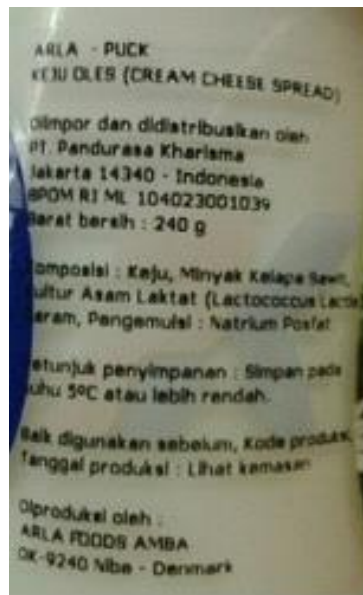
제품명

순중량  
ML등록번호  
수입업체 정보  
제조업체 정보

구성 성분

제조코드  
유통기한

【그림 2-31】 유가공품-크림치즈 표시사항 예시



제품명

수입 및 유통업체 정보

ML등록번호  
순중량

구성 성분

보관 방법

유통기한, 제조코드,  
제조날짜

제조업체 정보

2.1.1.2. 영양정보 표시

- 모든 식품 라벨은 특정 정보를 포함해 식품 라벨에 필요한 영양 정보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식품이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를 말하며, 시행 중인 법률 조항에 따라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기타 영양소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비롯한 열량을 말한다.
- 영양소 정보는 명확하고 읽기 쉽게 써야 한다. 글자 크기는 1mm 미만이어야 하며 라벨 표면적에 비례해야 한다.
- 관련 규정으로 가공식품 라벨과 광고 속 클레임/주장 감독 규정 <Regulation No.HK.03.1.23.11.11.09909/2011>, 식품 영양 라벨 참조 <Regulation No.HK.00.05.52.6291/2007> 규정 등이 있다.
- 다음 【표 2-21】은 <Regulation No.HK.00.05.52.6291/2007> 식약청장 규정의 부록에 명시하고 있는 식품 영양 라벨 시의 참조사항이다.

【표 2-21】 식품 영양 라벨

No	영양소	단위	소비자 영양 라벨 기준					
			일반	0-6개월 영아	7-23개월 유아	2-5세 아동	임신부	수유부
1	열량	Kal	2000	550	800	1300	2160	2425
2	총 지방	G	62	35	27	40	60	67
3	포화지방	G	18	-	-	-	19	22
4	콜레스테롤	Mg	<300	-	-	-	<300	<300
5	리놀레산	G	-	2,0	3,0	4,0	6	7
6	단백질	G	60	10	20	35	81	91
7	총 탄수화물	G	300	50	120	200	324	364
8	식이섬유	G	25	-	-	-	25	25
9	비타민A *)	RE	600	375	400	440	800	850
	총 카로틴	meg	7200	4500	4800	5280	9600	10200
	베타카로틴	meg	3600	2250	2400	2640	4800	5100
10	비타민D	meg	10	5	5	5	5	5
11	비타민E	mg	15	4	6	7	15	19
12	비타민K	meg	60	5	12	18	55	55
13	티아민	mg	1.0	0,3	0,5	0,7	1.3	1,3
14	이보플라빈	mg	1,2	0,3	0,5	0,6	1,4	1,5

【표 2-21】 식품 영양 라벨

No	영양소	단위	소비자 영양 라벨 기준					
			일반	0-6개월 영아	7-23개월 유아	2-5세 아동	임신부	수유부
15	나이신	mg	15	2	5	7	18	17
16	엽산	meg	400	65	90	185	600	500
17	판토텐산	mg	7	1,4	2,0	3,0	7	7
18	피리독신	mg	1,3	0,1	0,4	0,6	1,7	1,8
19	비타민 B12	meg	2,4	0,4	0,6	1,0	2,6	2,8
20	비타민 C	mg	90	40	40	- 45	90	100
21	칼륨	mg	4700	400	700	3400	4700	5100
22	나트륨	mg	<2300	120	370	1100	1500	<2300
23	칼슘	mg	800	200	480	500	950	950
24	인	mg	600	100	320	400	600	600
25	마그네슘	mg	270	25	60	80	270	270
26	철	mg	26	0,3	8	8	33	32
27	요오드	meg	150	90	90	110	200	200
28	아연	mg	12	5,5	8	9,4	14,7	13,9
29	셀레늄	meg	30	5	13	19	35	40
30	망간	mg	2	0,003	0,8	1,4	2	2,6
31	불화물	mg	2,5	0,01	0,6	0,8	2,7	2,7

2.1.1.2.1. 기타 조항

○ 일일 섭취 권장량(Angka Kecukupan Gizi:AKG,)

- 일일 권장 허용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1) 식약청 법령에 명시된 연령별 그룹에 따라 계산된 AKG 비율(%)을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 2) 영양 정보는 포함된 영양소, g/mg/mcg, AKG(%) 순서로 작성한다.
- 3) 어린이를 위한 식품 권장량 : 6~24개월, 2~5세를 각각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경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에서 지정된 AKG 비율을 지켜야 한다.

【표 2-22】 라벨링 영양정보 표기 (세로)

INFORMASI NILAI GIZI	영양 정보
Takaran saji ...(URT)... (g/ml)	용량 : (g)
Jumlah Sajian per Kemasan .....	포장 당 인분(人分) :

JUMLAH PER SAJIAN			1인분 당 함량		
Energi Total .....kcal			총 열량 .....kcal		
Energi dari Lemal .....kcal			지방 열량 .....kcal		
% AKG *			% RDA *		
Lemak Total	...g	.....%	총 지방	.... g	.....%
Protein	...g	.....%	단백질	.....g	.....%
Karbohidrat Total	...g	.....%	총 탄수화물	.....g	....%
Natrium	....mg	.....%	나트륨	.....mg	.....%
Vitamin A		..... %	비타민 A		..... %
Zat Besi		..... %	철분		..... %
<p><i>* Persen AKG berdasarkan kebutuhan energi 2000kcal. Kebutuhan energi anda mungkin lebih tinggi atau lebih rendah.</i></p>			<p><i>* RDA(일일 권장 허용량) 퍼센트는 2,000kcal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당신의 열량 소모량은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i></p>		

○ 식품 건조 및 복원

- 건조 및 농축된 식품의 영양소 정보는 물을 부어 원상태로 복원 후 영양소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 라벨에 제품의 조리법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수분이 제외된 식품에 포함된 영양소 정보는 수분 제외 후의 영양소를 표기해야 하며, 식품 라벨에 제품의 준비 절차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1.1.2.2. 표기 세부사항

○ 식품 제공량

- 식품 제공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품 의약품 감독기관인 식약청(BPO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등록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용 티스푼, 일반 스푼, (유리)잔, 병, 캔, 그릇/컵, 통, 봉지, 조각, (얇게 썬)조각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인분(人分)

- 포장 당 제공량(Jumlah sajian per kemasan)/제공량 당 함량(Jumlah per sajian)에서 제공량(Jumlah)은 ‘인분(人分)’으로 표기한다.
- 식품 라벨에는 식품 포장 당 포함된 인분의 수를 표기해야 하는데, 날개 포장에는 표기하지 않으며, 겉포장에 인분 정보를 표기한다.
- 인분 숫자를 반올림했을 경우, “sekitar(약)” / “kurang lebih(대략)” / “±” 같은 표기를 넣어야 한다.
- 인분 표기 시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 【표 2-23】 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표 2-23】 라벨링 영양정보 중 인분(人分) 표시 규정

2인분 미만으로 포장된 식품의 경우 1인분으로 간주함
2~5인분의 경우, 0.5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3.33인분일 경우 sekitar 3.5 또는 kurang-lebih 3.5 또는 ± 3.5
5인분 이상의 경우, 1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5.14인분일 경우, sekitar 5 또는 kurang-lebih 5 또는 ± 5

○ 각주

- 각주는 음식의 AKG가(일일 섭취 권장량) 2,000 kcal의 에너지 요구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통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

: “Persen AKG berdasarkan kebutuhan ebergi 2000 kkal. Kebutuhan ebergi anda mungkin lebih tinggi atau lebih rendah”

**한국어**

: “AKG(일일 섭취 권장량) 비율은 2,000 kcal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개인의 열량 소모량은 이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 각주는 기울임체(italic)로 작성되어야 하며, 라벨 하단, 즉 영양정보 박스 마지막에 위치해야 한다. 각주는 또한 6~24개월, 2~5세 어린이를 위한 음식에는 삼입할 수 없다.



2.1.1.2.3. 영양소 표기

- 영양소 표기 전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굵은체(bold)로 작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어> : “JUMLAH PER SAJIAN”

<한국어> : “1인분 당 함량”

- 총 열량

- 총 열량은 굵은체(bold)로 작성해야 하며, 표기 시 반올림의 필요가 있을 경우 【표 2-24】와 같은 규정에 따른다.

【표 2-24】 열량 표시 규정

5 kcal 미만은 0 kcal로 표기함 (예) 4 kcal의 경우, “Energi total 0 kkal”
5~50 kcal 사이의 경우, 5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22 kcal일 경우, “Energi total 20 kkal”
50 kcal 이상의 경우, 10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266 kcal일 경우, “Energi total 270 kkal”

- 총 지방함량

- 총 지방함량은 굵은체(bold)로 작성해야 하며, 표기 시 반올림의 필요가 있을 경우 【표 2-25】와 같은 규정을 따른다.

【표 2-25】 지방 표시 규정

0.5g 미만은 0g으로 표기함 (예) 0.4g의 경우, “Lemak total 0 g”
0.5~5g 사이의 경우, 0.5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4.2g일 경우, “Lemak total 4.0 g”
5g 이상일 경우, 1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11.7g일 경우, “Lemak total 12 g”

- 총 지방함량의 AKG(일일 섭취 권장량)를 표기할 경우, 0% 이상의 경우 모두 반올림을 적용하여 표기한다.

- 단백질
  - 단백질 함량은 굵게 표기하며, 0.5g 미만의 경우 0으로, 0.5g 이상의 경우 반올림을 적용하여 표기한다.
  - 단백질의 AKG 표기의 경우, ‘총 지방함량’의 AKG 표기법과 같다.
- 총 탄수화물
  - 총 탄수화물의 표기법은 모두 ‘단백질’ 표기법과 같다.
- 나트륨
  - 나트륨 함량은 굵게 표시하며, 표기 시 반올림의 필요가 있을 경우 **【표 2-26】** 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표 2-26】 나트륨 표시 규정**

5 mg 미만은 0 mg으로 표기함 (예) 4 mg의 경우, “Natrium 0 mg”
5~140 mg 사이의 경우, 5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28 mg일 경우, “Natrium 30 mg”
140 mg 이상일 경우, 10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255 mg일 경우, “Natrium 260 mg”

- 나트륨의 AKG 표기의 경우, ‘총 지방함량’의 AKG 표기법과 같다.

2.1.1.2.4. 특정 요구사항

- 지방 열량
  - 지방이 0.5g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지방 열량을 표기해야 한다. 지방 열량은 6~24개월의 유아용 음식에는 첨가하지 않는다.
  - 지방 열량 표기법은 ‘총 열량’ 표기법과 같다.
- 포화 지방
  - 식품의 포화지방 함유량이 0.5g 이상이고 포화지방으로부터 에너지가 발생한다면 라벨에 표기를 해야 한다. 포화지방은 6~24개월의 유아용 음식에는 첨가하지 않는다.

- 포화지방의 g 표기 시 반올림 표기법은 ‘총 지방함량’의 표기법과 같으며, AKG 표기법 또한 ‘총 지방함량’의 표기법과 같다.
- 트랜스 지방
  - 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0.5g 이상이면 라벨에 표기를 해야 하며, g으로만 표기한다. 트랜스 지방의 ‘trans’는 기울임체로 작성해야 한다.
  - 트랜스 지방의 g 표기 시 반올림 표기법은 ‘총 지방함량’의 함량 표기법과 같다.
- 콜레스테롤
  - 식품의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2mg 이상이면 라벨에 표기를 해야 하며, 6~24개월의 유아용 음식에는 첨가하지 않는다.
  - 콜레스테롤은 mg과 AKG로 표기되며 굵게 표시한다. AKG 반올림 표기법은 ‘총 지방함량’의 AKG 표기법과 같으며, mg의 반올림 표기법은 【표 2-27】 과 같다.

【표 2-27】 콜레스테롤 표시 규정

5 mg 미만은 0 mg으로 표기함 (예) 4 mg의 경우, “Natrium 0 mg”
5~140 mg 사이의 경우, 5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28 mg일 경우, “Natrium 30 mg”
140 mg 이상일 경우, 10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255 mg일 경우, “Natrium 260 mg”

- 식이섬유
  - 식품의 식이섬유 함유량이 0.5g 이상이면 라벨에 표기를 해야 한다.
  - 식이섬유는 g과 AKG로 표기한다. AKG 반올림 표기법은 ‘총 지방함량’의 AKG 표기법과 같으며, g의 반올림 표기법은 【표 2-28】 과 같다.

【표 2-28】 식이섬유 표시 규정

0.5g 미만은 0g으로 표기함 (예) 0.4g의 경우, “Serat pangan 0 g”
0.5g 이상일 경우, 1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예) 4.7g일 경우, “Serat pangan 5 g”

- 설탕
  - 식품의 설탕 함유량이 1g 이상이면 라벨에 표기를 해야 하며, g으로만 표기한다. 반올림 표기법은 ‘식이섬유’ 표기법과 같다.
- 비타민 A
  - 식품이 비타민 A를 AKG 2% 이상 함유하고 있을 경우 라벨에 표기를 해야 하며, AKG로만 표기한다. 반올림 표기법은 【표 2-29】와 같다.

【표 2-29】 비타민 A 일일 섭취 권장량 표시 규정

2% AKG 미만은 0%로 표기함
2~10% 사이의 경우, 2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10% 이상일 경우, 5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함

- 비타민 C
  - 식품이 비타민 C를 AKG 2% 이상 함유하고 있을 경우 라벨에 표기를 해야 하며, AKG로만 표기한다. 반올림 표기법은 ‘비타민 A’ 표기법과 같다.
- 칼슘
  - 식품에 AKG 2%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AKG로만 표기한다. 반올림 표기법은 ‘비타민 A’ 표기법과 같다.
- 철분
  - 식품에 AKG 2%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AKG로만 표기한다. 반올림 표기법은 ‘비타민 A’ 표기법과 같다.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면 라벨에 삽입할 수 있다. 공공 보건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영양소에 관한 규정을 강화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1.1.2.5. 서식: 라벨 형식의 기본 규정은 아래와 같다,

- 100 cm<sup>2</sup> 초과하면 세로 서식을 사용
- 100 cm<sup>2</sup> 이하이면 가로 서식을 사용
- 포장 표면 서식의 경우, 30 cm<sup>2</sup> 이하
- 세로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표 2-30】 과 같다.

【표 2-30】 라벨 작성 시 특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6~24개월 유아용 식품	2~5세 어린이용 식품
2개 이상의 음식을 포함한 포장 식품	맛, 향, 색상이 다른 식품
판매 전 다른 음식과 결합되는 식품	소비 전 첫 가공되는 식품

- 일반 서식(세로 서식)
  - 일반 라벨 서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영양 정보’라는 문구를 포함한 인분 등의 정보를, 두 번째 부분은 영양분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세 번째 부분은 각주를 각각 담고 있다.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라벨 서식은 세로 형식이며 【표 2-31】 과 같다.

【표 2-31】 라벨링 영양정보 표기

INFORMASI NILAI GIZI	영양 정보
Takaran saji ....(URT).... (g/ml) Jumlah Sajian per Kemasan .....	용량 : (g) 포장 당 인분(人分) :
<b>JUMLAH PER SAJIAN</b>	<b>1인분 당 함량</b>
<b>Energi Total</b> .....kcal Energi dari Lemal .....kcal Energi dari Lemak jenuh .....kcal	<b>총 열량</b> .....kcal 지방 열량 .....kcal 포화지방 열량 .....kcal
% AKG *	% RDA *
<b>Lemak Total</b> .....g .....% Lemak Jenuh .....g .....% Lemak tidak jenuh tunggal .....g Lemak tidak jenuh ganda .....g Lemak trans .....g Kolesterol .....mg .....% <b>Protein</b> .....g .....% <b>Karbohidrat Total</b> .....g .....% Serat pangan .....g .....% Serat pangan larut .....g Serat pangan tidak larut .....g <b>Gula</b> Gula alkohol .....g Karbohidrat lain .....g <b>Natrium</b> .....mg .....% Kalium .....mg .....%	<b>총 지방</b> .....g .....% 포화지방 .....g .....% 불포화지방 .....g 고도불포화지방 .....g 트랜스지방 .....g 콜레스테롤 .....mg .....% <b>단백질</b> .....g .....% <b>총 탄수화물</b> .....g .....% 식이 섬유 .....g .....% 수용성식이섬유 .....g 불용성식이섬유 .....g <b>설탕</b> 당 알코올 .....g 기타 탄수화물 .....g <b>나트륨</b> .....mg .....% 칼륨 .....mg .....%
Vitamin A .....% Vitamin C .....% Vitamin lain .....% Kalsium .....% Zat Besi .....% Mineral lain .....%	비타민 A .....% 비타민 C .....% 기타 비타민 .....% 칼슘 .....% 철분 .....% 기타 미네랄 .....%
* Persen AKG berdasarkan kebutuhan energi 2000kcal. Kebutuhan energi anda mungkin lebih tinggi atau lebih rendah.	* RDA(일일 권장 허용량) 퍼센트는 000kcal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개인의 열량 소모량은 이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 과량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mandatory)

\* 빨강 : 특정 조건에서 의무 기재(특정 요구사항에 규정된 항목)

\* 초록 : 자율적으로 포함하는 항목(voluntary)

- 영양소 정보 표시 라벨 읽는 방법<sup>21)</sup>
  - 용량은 기준 분량 규격을 알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분량이다. 한편, 포장 당 인분(人分)은 권장하는 총 인분(제공량)이다.
  - 일반적으로, 인분 당 함량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즉, 총 열량과 지방 열량이다.
  - 일일 섭취 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 비율은, 2,000 칼로리 식사에 기준으로 식품으로부터 1인당의 하루 영양 충족 비율이다.
  - 포장 당 총 지방은 식품에서 고밀도 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HDL)과 저밀도 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LDL) 비율의 총계를 보여준다.
  - 포화 지방의 일일 섭취는 한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트랜스 지방은 분자가 탄소 원자(C)의 결합으로 구성된 나쁜 지방 가운데 하나이다.
  - 콜레스테롤 총량은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며, 매 제공량 당 HDL과 LDL로 이루어진다.
  - 총 탄수화물은 식품의 탄수화물 총량으로 설탕, 전분, 식이섬유 및 기타 탄수화물 성분에 걸친 탄수화물을 포함한다.
  - 자당(설탕)은 식품에서 발견되는 단당류와 이당류(포도당, 과당, 자당, 유당) 등 총 당류를 포함한다.
  - 나트륨은 소금이 주요 요소로 식재료와 추가적인 재료에서 온 나트륨과 염화물의 미네랄 화합물이다.
  - 비타민이란 몸의 신진대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작은 분자량의 아민(amine) 유기화합물 그룹이다.
  - 현재, 일일 권장량은 2,000칼로리의 에너지 필요에 기초한다.

21) 출처: <http://www.moberita.com/sehat/2013/06/20/informasi-label-gizi-dalam-kemasan-makanan-2792>

- 가로 서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표 2-32, 2-33】 과 같다.

【표 2-32】 라벨링 영양정보 표기 (가로)

INFORMASI	Jumlah per sajian %AKG *	Jumlah per sajian %AKG *
<b>NILAI GIZI</b>	<b>Lemak Total ....g ...%</b>	<b>Karbohidrat Total ..g ...%</b>
	Lemak jenuh .....g ....%	Serat .....g .....%
Takaran saji ..... (g )	Kolesterol .....mg ....%	Gula .....g
Jumlah saji per Kemasan:...	<b>Protein .....g .....%</b>	<b>Natrium .....mg ....%</b>
<b>Energi Total ....kkal</b>	Vitamin A .....%	Vitamin C .....%
Energi dari lemak	Vitamin B6 .....%	Vitamin D .....%
.....kkal	Kalsium .....%	Besi .....%
	Magnesium ....%	Iodium .....%

\* Persen AKG berdasarkan kebutuhan energi 2000kkal. Kebutuhan energi anda mungkin lebih tinggi atau lebih rendah.

【표 2-33】 라벨링 영양정보 표기 (나열식)

<p><b>INFORMASI NILAI GIZI</b> Takaran saji : ... sachet, Jumlah saji per kemasan :.. :</p> <p><b>JUMLAH PER SAJIAN : Energi total ...kkal,</b></p> <p>Energi dari lemak ....kkal, <b>Lemak Total ...g (.....% AKG),</b> Lemak Jenuh .....g ( .....% AKG), <b>Kolesterol .....g ( .....% AKG),</b> <b>Protein .....g (....% AKG),</b> <b>Karbohidrat total .....g (.....% AKG),</b> Serat ...g (....% AKG), Gula .....g, <b>Natrium .....g (.....% AKG),</b> Kalium ....g (....% AKG), Vitamin A (.....% AKG), Vitamin C (.....% AKG), Vitamin D (.....%AKG), Kalsium (.....% AKG), Besi (....% AKG). <i>Persen AKG berdasarkan kebutuhan energi 2000kkal. Kebutuhan energi anda mungkin lebih tinggi atau lebih rendah.</i></p>
--

- 영양정보 미표시 라벨

특수한 경우,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게재함으로써 라벨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서식은 【표 2-34】 와 같다.

【표 2-34】 영양정보 미표시 라벨

<p>Untuk Informasi Nilai Gizi, silahkan hubungi : Telp. (021) 1234567</p>	<p>영양정보에 대하여, 아래로 연락하세요: 전화: (021) 1234567</p>
---	--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분유용 라벨

분유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 기존 영양 라벨과는 다른 서식이 적용되며 그 서식은 【표 2-35】와 같다.

【표 2-35】 분유용 라벨 서식

영양 성분	단위	총계		
		100g 당	100kcal 당	제공량 당
Protein	g			
Lemak	g			
Karbohidrat	g			
Air	g			
Asam Linoleat	mg			
Vitamin :				
Vitamin A	IU/RE			
Vitamin D	IU/ $\mu$ g			
Vitamin E	IU/mg			
Vitamin K	$\mu$ g			
Vitamin B1 (Tiamin)	$\mu$ g			
Vitamin B2 (Riboflavin)	$\mu$ g			
Vitamin B3 (Niasin)	$\mu$ g			
Vitamin B5 (Asam Pantotenat)	$\mu$ g			
Vitamin B6 (Piridoksin)	$\mu$ g			
Vitamin B9 (Asam Folat)	$\mu$ g			
Vitamin B12 (Kobalamin)	$\mu$ g			
Vitamin C	$\mu$ g			
Biotin	mg			
Kolin	mg			
Inositol	mg			
Mineral :				
Kalsium	mg			
Fosfor	mg			
Magnesium	mg			
Besi	mg			

【표 2-35】 분유용 라벨 서식

영양 성분	단위	총계		
		100g 당	100kcal 당	제공량 당
Seng	mg			
Mangan	µg			
Tembaga	µg			
Iodium	µg			
Natrium	mg			
Kalium	mg			
Klorida	mg			

2.1.1.3. 식품 라벨과 광고에 식품첨가물 자유 정보 게재 금지 규정<sup>22)</sup>

- 2007년 제정된 식약청 규정으로 식품의 광고와 라벨에 식품첨가물 자유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식품첨가물은 다음과 같다.
  - 산화방지제 (Antioxidant)
  - 고결방지제 (Anticaking agent)
  - 산도조절제 (Acidity regulator)
  - 인공감미료 (Artificial sweetener)
  - 표백제 (Whitener)
  - 유화제 (Emulsifier)
  - 안정제와 증점제 (Stabilizer and Thickener)
  - 보존료 (Preservative)
  - 고결제 (Firming agent)
  - 착색제 (Colour)
  - 향료 (Flavour)
  - 향미증진제 (Flavour enhancer)
  - 강화제 (Sequestrant)

22) 식품 라벨과 광고에 식품첨가물 자유 정보 게재 금지 규정:

<Regulation KBPOM No.HK.00.06.1.52.6635> 출처:

<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 POM/HK.00.06.1.52.6635%20larangan%20pencantuman%20informasi%20bebas%20btp.pdf>

2.1.1.4. 설탕과 소금 및 지방 성분 함유량 정보와 건강 경고문 기재

- 보건부 규정<sup>23)</sup>에 의거하여, 가공식품과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는 해당 식품의 라벨과 홍보 브로슈어 등에 설탕과 소금 및 지방 함유량 표시와 1인당 1일 섭취량이 설탕 50그램 이상, 나트륨 2000밀리그램 이상, 총 지방 67그램 이상일 경우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및 심장 발작 위험이 있음을 표기해야 한다.

2.1.1.5. 유전자 조작식품 라벨 감독

- 안전과 품질 및 영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유전자 조작식품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전자 조작식품 라벨 감독 규정<sup>24)</sup>을 2012년 식약청장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유전자조작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라벨에 유전자조작식품임을 나타내는 ‘PANGAN PRODUK REKAYASA GENETIKA(유전자 조작식품)’을 기재해야 한다.

2.1.1.6. 유기농 가공식품의 라벨

- 식약청 규정<sup>25)</sup>에 따라 유기농 가공식품의 조건을 충족한 식품은 라벨에 인도네시아의 유기농 가공식품임을 뜻하는 로고를 첨부할 수 있으며 그 양식은 【그림 2-30】 과 같다.

【그림 2-32】 유기농 식품 로고



23) 가공식품과 즉석섭취 식품에 설탕과 소금 및 지방 함유 정보와 건강 경고문 기재 규정:  
<Regulation MENKES No.30/2013> 출처:

<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MENTERI/permenkes%20No.%2030%20Th%202013%20Gula%20Garam%20Lemak.pdf>

24) 유전자 조작식품 라벨 감독 규정: <Regulation KBPOM No.HK.03.1.23.03.12.1563>

출처: [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 POM/per\\_pelabelan2012.pd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 POM/per_pelabelan2012.pdf)

25) 유기농 가공식품 감독 규정: <Regulation KBPOM No.HK.00.06.52.0100>

## 2.2 원산지 규정

- ASEAN-한국 FTA 체결 이후 상품무역협정 적용대상 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 ASEAN-한국 상품협정
  - 발효일 : 2011년 11월 17일
  - 적용대상 국가 : 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류
  - 원산지 신고서
  - C/O 양식 작성(Certificate of Origin)
  - 세관서류 신고서
  - 상품송장
  - 선하증권(B/L)

## 2.3 주요 식품유형별 수입 관세율

- 식품유형별 분류 및 수입관세율은 현지 유통업체의 도움을 받아 확인을 거쳐 작성하였다.

### 2.3.1 관세율

- 2012년에 시행된 관세율은 【표 2-36】 과 같다.
-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수입관세(Bea Masuk, BM)와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PPN) 이외에 소득세(Pajak Penghasilan, PPH)를 부과하는데, 이 소득세는 API(수입자식별번호\_수입자등록증)를 보유한 업체에는 2.5%, API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는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 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01-001	과자	<u>1905 3110</u> 빵, 페스트리, 케이크/쿠키, 비스킷과 기타 빵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달콤한 비스킷	10	10
		<u>1905 3120</u> --코코아를 함유한 달콤한 비스킷		
01-001	빵류	<u>1905 3200</u> -와플과 웨이퍼	5	10
		<u>1905 9010</u> -달지 않은 베어 먹는 비스킷		
		<u>1905 9020</u> -기타 달지 않은 비스킷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01-002	캔디	1704 9010 캔디(화이트초콜릿 포함),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는 제품 의료용 드롭 등 제품	10	10
		1704 9091 -부드러운, 젤라틴을 함유한 제품		
		1704 9099 -기타		
001-003	추잉껌	1704 1000 추잉껌, 설탕으로 코팅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	10	10
001-004	빙과류	2105 0000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얼음, 코코아를 함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	5	10
002-001	빵류	1905 1000 빵, 페스트리, 케이크/쿠키, 비스킷과 기타 빵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 크리스피브레드(Crispbread)	5	10
		1905 2000 생강빵 및 유사품		
		1905 4010 10 --빵가루(Bread crumb)	10	10
		1905 4010 90 --기타		
		1905 4090 -기타	5	10
		1905 9030 케이크/쿠키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02-001	빵류	1905 9040 페스트리	5	10
		1906 9050 가루없는 베이커리 제품		
002-002	떡류	1905 9090 빵, 페스트리, 케이크/쿠키, 비스킷과 기타 빵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 웨이퍼, 의료용으로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 라이스페이퍼와 그 유사제품 기타 -기타	10	10
002-003	만두류	1902 2010 속을 채운 파스타, 기타 조리 또는 가공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 -고기 또는 고기 부산물로 속을 채운 제품	5	10
		1902 2030 -생선, 달팽이 또는 연체동물로 속을 채운 제품		
		1902 2090 -기타		
003-001	코코아 가공품 류	1804 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0	10
		1805 0000 코코아가루,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		
		1806 1000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포함한 것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03-002	초콜릿 류	<u>1806 2010</u> 판, 막대, 바 형태의 기타 가공품. 중량이 2kg 이상 또는 액체, 페이스트, 분말, 알갱이 또는 기타 벌크 형태의 포장 제품, 중량 2kg 초과 제품 -판, 막대, 바 형태의 초콜릿 캔디	10	10
		<u>1806 2090</u> -기타		
		<u>1806 3110</u> -속을 채운 제품 --초콜릿 캔디		
		<u>1806 3190</u> -속을 채운 제품 --기타		
		<u>1806 3210</u> -속을 채우지 않은 제품 --초콜릿 캔디		
		<u>1806 3290</u> -속을 채우지 않은 제품 --기타		
		<u>1806 9010</u> 기타 -타블렛 형태 등의 초콜릿 캔디		
		<u>1806 9030</u> 기타 -분말, 거친분말, 전분 또는 몰트 농축물 가공식품, 중량 대비 코코아를 40% 또는 이상 함유하나 50% 미만으로 함유한 제품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03-002	초콜릿 류	<u>1806 9040</u> 기타 -관세번호 0401에서 0404까지의 가공식품, 중량 대비 코코아를 5% 또는 이상 함유하나 10% 미만으로 함유한 제품, 유아용으로 특수 가공한 제품, 소매용이 아닌 제품	5	10
		<u>1806 9090</u> 기타 -기타		
014-001	콩기름 (대두유)	<u>1704 9020</u> 화이트초콜릿	10	10
		<u>1507 9090</u> 콩기름과 그 분획물, 정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단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제품 -기타	5	10
014-004	미강유 (현미유)	<u>1515 9099</u> -기타(식물성 지방과 기름) --정제하지 않은 기름의 분획물 --기타	5	10
014-005 014-006	참기름 들기름	<u>1515 5090</u> 참기름과 그 분획물 -기타	5	10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 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15-001	국수	<u>1902 1940</u> 생 파스타, 속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제품 -기타 <u>--면(Noodles)</u>	5	10
015-001	국수	<u>1902 1990</u> --기타	5	10
015-003	당면	<u>1902 1930</u> 생 파스타, 속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제품 -투명 버미첼리(Soun)	5	10
		<u>1902 3030</u> 기타 파스타 -투명 버미첼리(Soun)	10	10
015-004	유탕 면류	<u>1902 3040</u> 기타 인스턴트 면	10	10
016-001	침출차	<u>0902 1090</u> (발효되지 않은) 녹차, 포장 단위 3kg 미만 -기타	5	10
		<u>0902 3090</u> (발효된) 홍차와 일부 발효된 차, 포장 단위 3kg 미만 -기타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16-002 016-003	액상차 고형차	<u>2101 2010</u> 차 또는 마테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혹은 이를 기본으로 하는 가공제품 -차, 유분과 설탕으로 구성된 차 가공품	5	10
016-002 016-003	액상차 고형차	<u>2101 2090</u> 차 또는 마테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혹은 이를 기본으로 하는 가공제품 -기타	5	10
017-003 017-004	조제 커피 액상 커피	<u>2101 1210</u> 커피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혹은 이를 기본으로 하는 가공제품 -파스타 형태와 볶은 커피의 혼합물, 식물성 지방을 함유한 제품 <u>2101 1290</u> 커피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 혹은 이를 기본으로 하는 가공제품 -기타	5	10
018-001	과일 · 채소 음료	<u>2009 1100</u> 오렌지주스 -냉동 제품	5	10
		<u>2009 1200</u> 오렌지주스 -냉동되지 않은, Brix 20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10	10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 가치 세
018-001	과일 · 채소 음료	2009 1900 오렌지주스 -기타	5	10
		2009 2100 (포멜로 포함) 자몽주스 -Brix 20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10	10
		2009 2900 (포멜로 포함) 자몽주스 -기타	5	10
		2009 3100 기타 감귤류주스 -Brix 20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10	10
		2009 3900 기타 감귤류주스 -기타	5	10
		2009 4100 파인애플주스 -Brix 20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10	10
		2009 4900 파인애플주스 -기타	5	10
		2009 5000 토마토주스	10	10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 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18-001	과일 · 채소 음료	2009 6100 (Grape must 포함) 포도주스 -Brix 30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10	10
		2009 6900 (Grape must 포함) 포도주스 -기타	5	10
		2009 7100 사과주스 -Brix 20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10	10
		2009 7900 사과주스 -기타	5	10
		2009 8190 -크렌베리주스( <i>Vaccinium macrocarpon</i> , <i>Vaccinium oxycoccos</i> , <i>Vaccinium vitis-idaea</i> ) --기타	10	10
		2009 8910 -기타 --블랙커런트주스		
		2009 8999 ---기타		
		2009 9090 -기타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18-003	두유류	<u>2202 9020</u> 물, 미네랄워터와 소다수 포함,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풍미제(pemberi rasa)를 첨가한 제품 기타 -두유 음료	5	10
018-005	인삼 · 홍삼 음료	<u>2106 9092</u> 인삼 함유 가공품	5	10
020-003	양조 간장	<u>2103 1000</u> 간장	5	10
020-008 020-010	된장 고추장	2103 9090 기타 (간장, 토마토케찹과 기타 토마토소스, 겨자가루와 가공겨자 이외 제품) -기타	5	10
021-002	소스류	<u>2103 2000</u> 토마토케찹과 기타 토마토 소스	5	10
		<u>2103 3000</u> 겨자가루와 가공겨자		
		<u>2103 9010</u> 칠리 소스		
		<u>2103 9030</u> 생선 소스		
		<u>2103 9040</u> 기타 혼합 향신료와 혼합 양념, 어묵(terasi) 포함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23-002	배추 김치	<u>2005 9910</u> 기타 가공 또는 저장 야채 제품 -기타 --진공 포장 제품	5	10
		<u>2005 9990</u> 기타 야채 가공 또는 저장 제품 -기타 --기타	5	10
027-001	탁주	<u>2206 0091</u> 기타 쌀 발효 음료	55.000 루피아/ L	10
027-004	맥주	<u>2203 0010</u> 흑맥주 또는 포터	14.000 루피아/ L	10
		<u>2203 0090</u> 기타, 에일 포함		
027-006	소주	<u>2208 7000</u> 리큐어와 코디얼	125.000 루피아/ L	10
		<u>2208 9090</u> 기타		
029-005	조미김	<u>1212 2190</u> 해초와 기타 조류(algae) -사람의 섭취용으로 적합한 것 --기타	5	-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 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29-012	식염	2501 0010 식염(Table salt)	5	-
		2501 0020 암염(Rock salt)	10	-
		2501 0050 해수(Sea water)	10	10
		2501 0090 10 기타 -건조제품을 기준으로 염화나트륨 최소 94,7% 함유한 제품	0	10
		2501 0090 90 기타 -기타	10	10
029-018	즉석섭취·편의식품류	2104 1019 수프와 국물 및 그 가공품 --기타	5	10
030-002	가공유류	0401 1010 중량 대비 지방 함량이 1%를 초과하지 않는 것 -액상 형태의 제품	5	-
		0401 1090 중량 대비 지방 함량이 1%를 초과하지 않는 것 -기타		
		0401 2010 지방 함량이 1% 이상 6% 미만인 것 -액상 형태의 제품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 가치 세
030-002	가공 유류	<u>0401 2090</u> 지방 함량이 1% 이상 6% 미만인 것 -기타	5	-
		<u>0401 4010</u> 지방 함량이 6% 이상 10% 미만인 것 -액상 형태의 우유		
		<u>0401 4020</u> 지방 함량이 6% 이상 10% 미만인 것 -냉동 형태의 우유		
		<u>0401 4090</u> 지방 함량이 6% 이상 10% 미만인 것 -기타	5	-
		<u>0401 5010</u> 지방 함량이 10% 이상인 것 -액상 형태의 우유		
		<u>0401 5090</u> 지방 함량이 10% 이상인 것 -기타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 가치 세
030-002	가공 유류	<u>0402 1041</u> 분말, 알갱이 또는 기타 고체 형태의 것, 중량 대비 지방 함량이 1,5%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 --포장의 총중량이 20kg 또는 이상인 제품	5	10
		<u>0402 1049</u>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 --기타		
		<u>0402 1091</u> -기타 --포장의 총중량이 20kg 또는 이상인 제품		
		<u>0402 1099</u> -기타 --기타 분말, 알갱이 또는 기타 고체 형태의, 지방 함량이 1,5% 초과하는 제품		
		<u>0402 2120</u>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 --포장의 총중량이 20kg 또는 이상인 제품		
		<u>0402 2190</u>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 --기타		

【표 2-36】 식품유형별 인도네시아의 관세율 (2012년 기준)

품목 코드	식품 유형	관세코드	관세율(%)	
			기본 관세	부가가치세
030-002	가공 유류	<u>0402 2920</u> -기타 --포장의 총중량이 20kg 또는 이상인 제품	5	10
		<u>0402 2990</u> -기타 --기타		
		<u>0402 9100</u> 기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u>0402 9900</u> 기타 -기타	10	10
		<u>2202 9010</u> 가미한 초고온살균 우유	5	10
030-008	아이스 크림	<u>2105 0000</u>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얼음, 코코아를 함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	5	10

## 제4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 1 식품분류와 기준 및 규격

#### 1.1. 식품분류 기준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 인도네시아의 식품분류는 식품분류 법령<sup>26)</sup>에 따라 16개로 분류하며, 각 분류에 따른 세부 규정은 책자로 나와 있으며 해당 내용에 따라 식품유형을 분류한다.

【표 2-37】 식품분류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No.	식품분류에 따른 식품유형
1	Dairy products and analogues, excluding products of food category 02.0
2	Fats and oils, and fat emulsions
3	Edible ices, including sherbet and sorbet
4	Fruits and vegetables(including mushrooms and fungi, roots and tubers, pulses and legumes, and aloe vera), seaweeds, and nuts and seeds
5	Confectionery
6	Cereals and cereal products derives from cereal grains, roots and tubers, pulses and legumes, excluding bakery wares of food category 07.0
7	Bakery wares
8	Meat and meat products, including poultry and game
9	Fish and fish products, including mollusc, crustaceans, and echinoderms
10	Fresh eggs
11	Sweeteners, including honey
12	Salts, spices, soups, sauces, salads, protein products
13	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14	Beverages, excluding dairy products
15	Ready-to-eat-savouries
16	Composite foods-fods that could not be placed in categories

26) 식품분류 법령: Decree KBPOM RI 9/OCT/2006 No.HK.00.05.52.4040 출처:  
[http://dih.pom.go.id/produk/KEPUTUSAN%20KEPALA%20BPO/35\\_2006%20NO.HK.00.05.52.4040-2006\\_sudah\\_ok\\_pangan.PDF](http://dih.pom.go.id/produk/KEPUTUSAN%20KEPALA%20BPO/35_2006%20NO.HK.00.05.52.4040-2006_sudah_ok_pangan.PDF)

1.2 식품분류별 비교표

- 인도네시아의 식품분류에 따라 조사대상 14개 가공식품 및 37개 식품유형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나, 최대한 유사한 식품유형을 임의로 비교한 결과는 【표 2-38】 과 같다.
-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유형에 인도네시아의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의 현행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표 2-38】 에서 ‘-’로 표기된 부분은 한국의 식품유형에 따른 해당 식품분류가 없는 경우이다.

【표 2-38】 한국의 식품유형에 따른 인도네시아 식품분류표

No	한국		인도네시아	
			식품분류 (Food Category)	관세 분류
1	과자류	과자	07.1.2. 크레커, 달콤한 크레커는 포함하지 않음 07.2.1. 케익,쿠키와 파이	1905.
2		캔디	05.2. 하드캔디, 소프트캔디, 누가, 젤리 등등	1704.
3		추잉껌	05.3. 제과 껌/추잉껌	1704.
4		빙과류	03.0. 식용얼음, 셔벗과 소르베 포함	2105.
5	빵 또는 떡류	빵류	07.0. 베이커리 제품	1905.
6		떡류	06.7. 떡	1905.
7		만두류	-	1902.
8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버터·분말)	05.1. 유사 초콜릿과 대체식품 포함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	1804.
9		초콜릿류		1805. 1806. 1806. 1704.

【표 2-38】 한국의 식품유형에 따른 인도네시아 식품분류표

No	한국		인도네시아	
			식품분류 (Food Category)	관세 분류
10	식용유지류	콩기름(대두유)	02.1.2. 지방과 식물성 기름	1507.
11		미강유(현미유)	02.1.2. 지방과 식물성 기름	1515.
12		참기름	02.1.2. 지방과 식물성 기름	1515.
13		들기름	-	1515.
14	면류	국수	06.4. 파스타와 국수 및 유사 제품	1902.
15		당면	06.4.2. 파스타와 국수 및 파스타 유사제품	1902.
16		유탕면류	06.4.3. 미리 조리된 파스타와 국수 및 유사제품	1902.
17	다류	침출차	14.1.5. 커피, 커피 대체품, 차	0902.
18		액상차		2101.
19		고형차		2101.
20	커피	조제커피	14.1.5. 커피, 커피 대체품, 차 인스턴트커피. 포장음용커피 등	2101.
21		액상커피		2101.
22	음료류	과일·채소음료 (농축과·채즙·과채주스·과채음료)	14.1.2. 과일주스와 야채주스 과·채주스, 농축 과·채주스, 농축 과·채즙	2009.
23		두유류(두유액·두유·분말두유·기타두유)	06.8.1. 두유 14.1.5. 콩음료 분말	2202.
24		인삼·홍삼음료	13.6. 식품 보조제	2106.

【표 2-38】 한국의 식품유형에 따른 인도네시아 식품분류표

No	한국		인도네시아	
			식품분류 (Food Category)	관세 분류
25	장류	양조간장	12.9.2.1. 발효간장	2103.
26		된장	12.9.1. 된장	2103.
27		고추장	12.6.2. 비유화소스	2103.
28	조미식품	소스류	12.6. 소스 및 유사제품	2103.
29	김치류	배추김치	04.2.2.7. 발효 야채 제품	2005.
30	주류	탁주	14.2.4. 과실주	2206.
31		맥주	14.2.1. 맥주와 맥아 음료	2203.
32		소주	14.2.6. 에탄올을 15% 이상 함유한 알코올 음료	2208.
33	기타식품류	조미김	04.2.2.8. 조리된 야채와 해초	1212.
34		식염(천일염·재제소금·태움응용소금·정제소금·가공소금)	12.1. 소금과 소금 대체품	2501.
35		즉석섭취·편의식품류	12.5. 수프와 국물	2104.
36	유가공품	가공유류	01.0. 유제품과 유사제품	0401. 0402. 2202.
37		아이스크림	01.7. 우유로 만든 디저트	2105.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p><b>빵류</b></p>	<p>베이커리 제품                      카테고리 07.1의 식빵 및 베이커리 제품과 카테고리 07.2의 달콤하고 짭짤한 특별 베이커리 제품을 포함한다.</p> <p>식빵과 베이커리 제품 및 프리믹스                      모든 종류의 담백한(Tawar) 베이커리 제품과 빵 파생제품을 포함한다.</p> <p>빵과 롤(Roll)                      빵과 팽창제 효모발효한 특수한 빵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흰빵, 호밀빵, 펴퍼니클, 건포도빵, 맥아빵, 햄버거 롤(roll burger), 통밀 롤(roll gandum utuh), 우유 롤, 소다빵을 포함한다.</p> <p>효모로 발효한 빵과 특별한 빵                      모든 종류의 달지 않은 베이커리 제품과 빵 함유제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흰빵, 호밀빵, 펴퍼니클, 건포도빵, 통밀빵, pain courant francais, 맥아빵, 햄버거 롤, 통밀 롤, 우유 롤을 포함한다.</p> <p><u>소다빵</u>                      정의:                      효모(Ragi/Kamir) 이외의 베이킹파우더나 베이킹소다 같은 화학 팽창제로 만드는 빵제품이며, Quickbread로 부르기도 한다.</p> <p>기타 담백한 베이커리 제품(예를 들면 베이글, 피타, 잉글리시 머핀)                      옥수수가루빵, 칩(Garut)가루빵 또는 기타 가루빵과 비스킷(여기서 말하는 비스킷은 베이킹파우더나 베이킹소다로 만드는 쇼트닝빵과 같은 제품, 카테고리 07.2.1의 쿠키 또는 달콤한 크래커 같은 비스킷이 아닌 카테고리 07.1.3의 쇼트닝빵 또는 퀵브레드 등의 비스킷 제품)과 같은 기타 담백한 모든 베이커리 제품을 포함한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의
<b>빵류</b>	<p>속을 채우기 위한 빵(<i>Stuffing</i>)과 빵가루를 포함한 유사 빵제품 크루통(<i>Crouton</i>)과 같은 빵 기반 제품, <i>Stuffing</i> 위한 빵, <i>Stuffing</i> 프리믹스 및 비스킷 반죽을 포함한다. 제빵용 프리믹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p> <p>빵과 찐빵(<i>Bun Kukus</i>)                      동양의/아시아 스타일의 빵 제품으로 부푼 쌀이나 밀가루 반죽을 찌는 방법으로 얻는다. 예를 들면 <i>Mantao</i>(속을 넣지 않은 찐빵 제품), <i>Bakpao/Pao</i>(고기나 으갠 콩으로 속을 채운 찐빵 제품), <i>Apem</i>(효모로 발효해 쌀가루와 갈색설탕/야자설탕으로 만드는 둥근 모양의 찐빵), <i>Bolu Kukus</i>(밀가루를 효모 또는 팡창제를 넣어 발효해서 만들며 사발 모양의 찐 베이커리 제품), <i>Bun Kukus</i>(찐빵이란 동양의 빵으로 가공한 밀가루 또는 쌀가루를 찌서 얻는다. (고기, 잼의)속을 넣거나 넣지 않을 수 있다.), <i>Baozi</i> 또는 <i>Bao</i>, <i>Huajuan</i>, <i>Manjyu</i> 등이 있다.</p> <p>식빵용 프리믹스와 담백한 베이커리 제품                      액상 재료(물, 우유, 기름, 버터, 계란 등)에 추가하여 카테고리 07.1.1(빵과 롤), 07.1.2(달콤한 크래커를 포함하지 않는 크래커), 07.1.3(기타 담백한 베이커리 제품(예를 들어 베이글, 피타, 잉글리시 머핀)), 07.1.4(속을 채우기 위한 빵(<i>Stuffing</i>)과 빵가루 등 유사 빵제품)와 07.1.5(빵과 찐빵)의 베이커리 제품 반죽을 만들기 위한 모든 건조한 재료 혼합물을 포함한다.</p> <p>특별한 베이커리 제품(달콤한, 짭짤한)                      케익, 쿠키와 파이(과일 또는 Custard, Vla 함유)                      케익, 쿠키와 파이(과일 또는 Custard, Vla 속)이란 디저트로 사용할 수 있는 쿠키와 비슷한 제품이다. 예를 들면 버터케이크, 치즈케이크, 과일 함유 곡물 바, 파운드케이크, 촉촉한케이크(<i>namagashi</i>), <i>Western cake</i>, <i>Keik bulan</i>, 스폰지케이크, 과일 함유 케이크(예를 들면 애플 파이), 오트밀쿠키, 설탕쿠키, 브리티시비스킷 등이 있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p><b>빵류</b></p>	<p>기타 특별 베이커리 제품(예를 들면 도넛, 스위트 롤, 스콘, 머핀)                      독특한 맛과 모양을 가진 빵 제품을 포함하며 디저트 또는 아침식사로 섭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패스트리, 달콤한 빵, 속을 채운 빵, 스콘, 도넛, 아메리칸 머핀, 악어빵(Betawi 지역 고유 빵 제품), Kue Tambang 등이 있다.</p> <p>특별 베이커리 제품용 프리믹스(예를 들면 케이크, 팬케익)                      특별 베이커리 제품용 프리믹스는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반죽을 만들 수 있도록 액상 재료(물, 우유, 기름 버터, 계란 등)에 추가할 수 있는 건조한 재료 혼합물이다.</p>
<p><b>떡</b></p>	<p>쌀케익(Kue Beras)                      쌀케익은 온전한 쌀을 담궜다 물을 빼서 찌고 으개서 케익/과자의 형태로 만든다.</p> <p><u>떡(Kue Teuck)</u>                      떡은 한국 고유 제품이다.</p>
<p><b>코코아 &amp; 초콜릿</b></p>	<p>코코아빈, 코코아매스, 코코아케이크, 분말 또는 점성 액체 (<i>liquor</i>)에서 나온 코코아 및 초콜릿 제품으로 설탕, 코코아버터(<i>cocoa butter</i>), 풍미 또는 향미 화합물, 기타 재료 (예를 들어 땅콩)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는다. 견과류와 과일 코팅 초콜릿을 포함하지만(예를 들어 건포도), 카테고리 15.2의 요구르트, 시리얼, 그리고 꿀 코팅 견과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봉봉, 제과용 코코아버터, 화이트초콜릿, 초콜릿 칩(베이커리제품 용), 밀크초콜릿, 크림 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비트초콜릿, 속을 채운 초콜릿(<i>filled chocolate</i>) (카테고리 07.2.1 및 07.2.2의 제과용(confectionery) 밀가루와 과자제품(케익, 쿠키와 파이/도넛, 스위트 롤, 스콘과 머핀 등)을 포함하지 않는, 가운데부분과 외부 코팅의 조직이 서로 다른 초콜릿) 및 복합초콜릿(전분과 지방 외에 다른 식재료를 첨가한 초콜릿)을 포함한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p>코코아 &amp; 초콜릿</p>	<p>예를 들면 초콜릿, 코코아버터, 초콜릿봉봉/초콜릿을 채운 캔디, 트뤼플, 제과용 코코아버터, 화이트초콜릿, 초콜릿 드롭 또는 초콜릿칩, 밀크초콜릿, 크림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달콤한 코코아 및 식물성 유지의 코팅제, 세미 스위트 초콜릿 또는 달콤 씹쓸한 초콜릿 또는 다크 초콜릿, 속을 채운 초콜릿(<i>Filled Chocolate</i>), 일반초콜릿(가미하지 않은 초콜릿 <i>Unsweetened Chocolate</i>), 코팅 초콜릿(커버처 초콜릿 <i>Couverture chocolate</i>), 가루/알갱이 초콜릿/가닥(<i>Vermicelli</i>) 초콜릿/고명(<i>Streusel</i>), 조각 초콜릿, 조각 밀크초콜릿, 가미 초콜릿, 공기 주입 초콜릿(<i>aerated chocolate</i>), 박판 초콜릿(<i>laminated chocolate</i>), 복합 초콜릿(<i>composite chocolate</i>) 등이 있다.</p>
<p>식물성 기름&amp;지방</p>	<p>식물성 기름과 지방</p> <p><u>식물성 기름과 지방</u></p> <p>정의: 식물성 기름과 지방은 작물에서 얻는 기름과 지방이다. 이 기름과 지방 제품은 단일 또는 혼합 요소에서 유래하며, 식용유, 조리유, 또는 식물성 기름, 테이블오일 또는 샐러드유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p> <p>기본 특성:          식용유지는 다음의 일반 기준 조건을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정제된 기름</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분함량은 0.15% 미만</li> <li>· 유리지방산함량은 0.3% 미만</li> </ul> </li> <li>· <u>원유</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분함량은 0.5% 미만</li> <li>· 유리지방산함량은 5% 미만</li> </ul> </li> </ul> <p>예를 들면 버진 오일, 냉압착오일, 튀김유(<i>Frying Oil</i>), 쇼트닝, 버터기름 대용물, 커널 팜 원유(CPKO), 팜유, 팜유 분말, 버진 코코넛오일 분말,</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p>식물성 기름&amp;지방</p>	<p>코코넛오일, 코코넛오일 분말, 땅콩유, 옥수수유, 헤이즐넛오일, 대두유 (<i>Refined Bleached Deodorized Soyabean Oil</i>), 참기름(<i>Sesame Oil</i>), 올리브유, 잇꽃유, 해바라기씨유, 쌀겨오일, 면실유, 카놀라유, 겨자씨유 등이 있다.</p>
<p>파스타 &amp; 국수 및 유사품</p>	<p>파스타와 국수 및 유사제품(예를 들어 라이스페이퍼, 쌀 버미첼리/Bihun 콩파스타 및 콩국수)</p> <p><u>파스타</u> 정의: 파스타는 주재료로써 양질의 거친 밀가루(Semolina)와 같은 곡물가루로 만든 제품으로 탄수화물을 주원료로 한 식품. (밀)가루, 계란, 소금, 기타 식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며, 반죽의 압출 또는 성형을 통해 얻는다.</p> <p><u>파스타 유사제품</u> 정의: 파스타 유사제품은 쌀가루 또는 쌀가루 혼합물과 타피오카 같은 기타 분말과의 혼합으로 얻는다. 당면(Bihun), 쌀당면(Sohun), 버미첼리(Vermiseli)를 포함한다.</p> <p>익지 않은 파스타와 국수 및 유사제품 정의: 건조 또는 가열처리(예를 들어 가열, 삶기, 찜, 조리, 사전 호화 (Pre-Gelatinized), 또는 냉동)하지 않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조리과정 이후에 즉시 섭취하도록 된 제품이다. 예를 들면 생면과 만두피(Kulit Pangsit)가 있다.</p> <p>파스타와 국수 및 파스타 유사제품 가열처리(예를 들어 가열, 삶기, 찜, 조리, 사전 호화, 또는 냉동)하지 않고 건조한 제품이다. 예를 들어 건조 스파게티, 당면(<i>Transparent Vermicelli</i>), 쌀 당면(<i>Rice Vermicelli/Bee hoon</i>), 마카로니, 쌀국수 등이 있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p><b>파스타 &amp; 국수 및 유사품</b></p>	<p>예를 들어 건조 Kuetiaw(굵은 쌀당면), 마카로니, 강화 마카로니제품, 단백질 강화 및 강화 마카로니제품, 통밀 마카로니제품, 밀과 콩 마카로니제품, 우유 마카로니제품, 채소 마카로니제품, 채소 및 강화 마카로니제품, 무지방 우유 마카로니제품, 강화 무지방우유 마카로니제품, 강화 국수제품(비타민과 미네랄을 강화한 국수 제품), 밀과 콩 국수제품, 야채국수제품, 강화 야채 국수제품, 당면(Sohun) 등이 있다.</p> <p>반가공한 파스타와 국수 및 유사제품 가열처리(예를 들어 가열, 삶기, 찜, 조리, 사전 호화, 또는 냉동 처리)를 거친 제품이다. 당뇨식이용 국수를 포함하지 않는다.</p> <p>예를 들면 쌀당면(Bihun), 마카로니, 건조 밀국수, 기타 건조국수, 인스턴트 쌀당면, 인스턴트 Kuetiaw(굵은 쌀당면), 인스턴트 마카로니, 숙성면, 인스턴트 국수, 기타 인스턴트국수, 즉석밥, 즉석 국물죽 등이 있다.</p>
<p><b>커피 &amp; 차</b></p>	<p>커피, 커피 대용품, 차, Seduhan Herbal 및 곡물 음료와 핫 시리얼, 초콜릿 제외 즉석음용제품(예를 들면 캔에 들은 제품), 프리믹스와 농축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치커리를 함유한 핫음료, 쌀 함유 음료, 뜨거운 커피와 차 음료용(예를 들면 인스턴트 커피, 핫 카푸치노 음료용 분말) 프리믹스이다. 가공 커피콩도 이 분류에 포함한다. 즉석 초콜릿음료는 카테고리 01.1.2(우유를 함유한 가미 또는 발효 음료)에 포함되고 초콜릿프리믹스는 카테고리 05.1.1(코코아가루와 코코아매스, 코코아케익)에 포함된다.</p> <p>예를 들면 홍차, 녹차, 백차, 허브차(Teh Wangi), 전통차, 우롱차 또는 반발효차, 분말 녹차, 포장 건조차, 티백 홍차, 티백 허브차, 티백 녹차, 포장 차음료, 인스턴트 차, 농축 액상차, 커피콩, 분말커피, 인스턴트 커피, 혼합 커피, 포장 커피음료, 농축 액상커피, 프리믹스 차, 프리믹스 커피 등이 있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p><b>과일 주스</b> <b>채소 주스</b></p>	<p>과일 주스 및 야채 주스</p> <p>이 카테고리는 과일 주스 및 야채 주스 만을 포함한다. 과일 주스, 야채 주스, 또는 그 농축액으로 만들어진 과일 주스, 야채 주스를 포함한 음료이며, 감미료 첨가/미첨가, 물에 희석한 것, 또는 소다수는 포함하지 않는다.</p> <p>과일 주스</p> <p>단일 과일 또는 혼합과일에서 얻는 제품이다. 단일 과일 주스는 한 종류의 과일로 만든 주스이다. 혼합과일 주스는 단일 또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 주스 또는 과일 주스와 퓨레의 혼합물에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블랙커런트 주스, 레몬 주스, 오렌지 망고 주스가 있다.</p> <p>야채 주스</p> <p>제품은 단일 채소(예를 들어 당근, 토마토), 또는 혼합 채소(예를 들어, 당근, 토마토와 셀러리)로 구성될 수 있다.</p>
<p><b>두유</b></p>	<p>콩 음료</p> <p>마른 콩을 물에 담구었다 물을 부어 삶아 걸러서 만든다. 콩 음료는 즉석 섭취하거나 카테고리 06.8.3(신선 두부)의 두부처럼 기타 콩 단백질의 재료로서 사용하거나 카테고리 06.8.2(Lapisan Tipis Cairan Kedelai/Thin layer of liquid soybean)의 콩 액체의 얇은 층의 재료로서 소비할 수 있다.</p> <p><u>두유(Sari Kedelai)</u></p>
<p><b>인삼 · 홍삼</b> <b>음료</b></p>	<p>식품보충제</p> <p>타블렛, 캡슐, 분말 또는 액체 형태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포함하며, 법적으로 해당 제품은 식품으로 분류한다.</p> <p><u>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 Dietary Supplement)</u></p> <p>정의:</p> <p>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 Dietary Supplement)란 단위 용량의 제품으로 (타블렛, 캡슐, 분말 또는 액체 등) 영양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 또는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재료를 함유한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간장	<p>간장(Saus Kedelai)콩을 발효/비발효하여 또는 야채 단백질 가수분해의 과정으로 얻는 액체 형태의 양념이다.</p> <p>발효간장 순수한 콩을 기본 원료로 하여 유화하지 않고, 밀, 가루, 소금과 물의 혼합물을 발효과정을 통해 만든다.</p> <p>비발효간장 비발효간장은 흔히 비양조소스라고도 하며, 산(예를 들면 염산)으로 가수분해하여 (예를 들면 탄산나트륨을 이용해서)중화하고, 거른 비발효 콩과 같이 채소 단백질로부터 얻는다.</p> <p>소금을 함유한 비발효/가수분해 간장</p> <p>기타 간장 비유화 소스는, 발효간장에, 설탕, 갈색설탕, 또는 카라멜화 과정을 사용/미사용하여 만든다.</p> <p>예를 들면 달콤한 간장(Sweet Soy Sauce), 짭짤한 간장(Salty Soy Sauce), 발효 간장분말(Fermented Soy Sauce Powder) 등이 있다.</p>
된장	<p>발효 콩 페이스트</p> <p>이 카테고리는 콩, 소금, 물과 기타 성분을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드는 제품을 포함한다. 해당 제품은 수프, 드레싱 또는 양념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p> <p>예를 들면 두장(Doujiang), 된장(Doenjang), 미소(Miso) 등이 있다.</p>
고추장	<p>비 유화 소스(예를 들면 토마토소스, 치즈소스, 크림소스, Chocolate Gravy 등) 우유와 물, Gravy 및 Dressing에 기초한 소스를 포함한다.</p> <p>예를 들면 고추소스(Saus Cabe), 삼발(Sambal), 고추냉이소스(Saus Lobak) 등이 있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p>소스류</p>	<p>소스와 유사제품 즉석소스, Gravies와 Dressing 및 섭취 전 혼합 해야 하는 분말 등</p> <p>예를 들면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타르타르 소스, 프렌치 드레싱, 달콤한 마요네즈, 치즈소스, 피자소스, 스파게티소스, 굴소스, 토마토소스, 생선소스 등이 있다.</p>
<p>배추김치</p>	<p>야채와 해초 발효제품(버섯, 뿌리 및 괴경, 콩과 알로에베라 포함), 식품 카테고리 12.10(소금,향신료,수프,소스,샐러드,단백질제품) 미포함</p> <p>정의: 야채 발효제품은 일반적으로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데, 유산균으로 채소를 발효하여 얻는 피클 종류의 제품이다.</p> <p><u>김치(Kimchi)</u> 정의: 김치는 발효한 배추를 채소 또는 다른 재료와 혼합해서 얻는 채소제품이다.</p>
<p>탁주</p>	<p>과실주 포도, 사과, 또는 배 이외의 다른 과일과 곡물(예를 들면 쌀) 등 다른 농산물로 만든 와인을 포함한다. 이 와인은 <i>still</i> 또는 <i>sparkling</i> 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주 (<i>sake</i>)와 스파클링 및 <i>still</i> 과실주를 포함한다.</p> <p>예를 들면 과실주, 청주, 찹쌀주, 발리 브럼주, 야채주(<i>Vegetable Wine</i>), Palm Wine, 퀴닌(Kinina) 토닉주 등이 있다.</p>
<p>맥주</p>	<p>알코올음료, 무알콜 또는 저알콜의 유사한 음료 포함 알코올음료는 술로 분류되어 A, B 와 C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달라진다. (A그룹:5% 미만/ B그룹:5% 이상 20% 미만/ C그룹: 20% 이상) 무알콜 또는 저알콜의 유사음료도 알코올음료와 같은 식품 분류이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의
맥주	<p>맥주와 맥아음료</p> <p>정의:</p> <p>맥주와 맥아음료는 발아한 보리(맥아), 홉, 호모와 물을 발효한 알코올음료이다.</p> <p>예를 들면 맥주, 흑맥주(<i>Stout</i>), 에일, 몰트 리큐르(<i>Malt Liqueur</i>) 등이 있다.</p>
소주	<p>에탄올을 15% 이상 함유한 스피릿 음료</p> <p>15% 이상의 에탄올을 함유한 곡물, 과일이나 사탕수수에서 얻는 모든 소주(Distilled spirit) 음료를 포함한다. 다음의 브랜디, 꼬냑, 럼, 진, 보드카, 데킬라가 해당된다.</p> <p>예를 들면 스피릿 음료, 브랜디, 과일 브랜디, 꼬냑, 럼, 위스키, 진, 보드카, 데킬라, 아락(<i>Arak</i>)주, 쥬네(<i>Genever</i>), 리큐르(<i>Liqueur</i>) 등이 있다.</p>
조미김	<p>조리한 채소와 해초</p> <p>정의:</p> <p>조리한 채소와 해초는 코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채로 찌고, 굽고, 삶거나 볶은 채소 또는 해초이다.</p> <p>예를 들면 시금치 칩, 버섯 칩, 카사바 과자, 조림 콩(<i>Simmered Beans</i>), 튀김 처리한 감자(<i>Pre-Fried Potatoes</i>), 구운 오크라, 야채 조림(<i>Vegetable Tsukudani</i>), 쟁꿀(<i>Jengkol</i>) 크래커 등이 있다.</p>
식염	<p>소금과 소금 대용물</p> <p>식품에서 양념으로 사용하는 카테고리 12.1.1의 소금과 카테고리 12.1.2의 소금 대용물을 포함한다.</p> <p>소금</p> <p>특히 염화나트륨이 식품용이다. 테이블소금, 요오드소금, 불소 요오드소금과 Garam Dendritik(돌기소금 Dendritic Salt)을 포함한다.</p> <p>예를 들면 소금, 테이블소금, 요오드소금 저나트륨소금, 다이어트소금 등이 있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p><b>즉석섭취 · 편의식품류</b></p>	<p>수프와 국물 즉석 수프와 혼합물. 최종 제품이 물(예를 들면 Comsomme) 또는 우유(예를 들면 Chowder)를 함유할 수 있다.</p> <p>즉석 수프와 육수, 통조림, 병 및 냉동제품 포함 물 또는 우유를 함유한 제품들로 야채, 고기 또는 생선 육수를 포함하며 기타 성분을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이다.</p> <p>예를 들면 닭 육수(Chicken's Quintessence), 국물과 콘소메, 수산물 수프와 국물(새우 육수, 생선 육수 등) 등이 있다.</p> <p>수프와 국물용 분말 또는 혼합물 물 또는 우유를 이용해 기타 성분을 첨가/미첨가하여 혼합하기 위한 수프 농축물.</p> <p>예를 들면 즉석수프, 즉석 파스타 수프(예를 들면 즉석 마카로니 수프), 즉석 크림수프, 즉석 크림파스타 수프(예를 들면 즉석 마카로니 크림수프), 쇠고기 추출양념, 쇠고기맛 양념, 닭고기 추출양념, 닭고기맛 양념, 고기추출물 파스타양념(예를 들면 쇠고기와 닭고기 추출물 파스타양념) 등이다.</p>
<p><b>가공유류</b></p>	<p>유제품과 유사제품. 카테고리 02.0(지방, 기름과 오일 에멀전)에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p> <p>낙농유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제품을 포함한다(예를 들면 소, 물소, 말, 염소, 양, 등). 카테고리 13.1(유아식과 아기의 특별 의학 필요용 이유식)과 13.3(건강필요용 특별 식품)의 유동식 유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p> <p>우유와 우유 기초의 음료 탈지우유, 부분 탈지우유, 저지방우유와 전지우유를 함유하는 모든 액체 유유제품을 포함한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b>가공유류</b>	<p>우유와 버터밀크(<i>Plain</i>)                      담백한(<i>Plain</i>) 액상 유제품으로만 구성된다. 우유 성분만을 함유한 재구성 플레인(<i>Plain</i>)우유를 포함한다.</p>
	<p>우유(<i>Plain</i>)                      탈지우유, 부분 탈지우유, 저지방우유와 전지우유를 포함한다.</p>
	<p>예를 들면 우유, 신선우유, 저온살균우유, 초고온(<i>Ultra High Temperature</i>) 살균우유, 멸균우유, 무지방우유 또는 탈지우유, 저지방우유, 재구성우유(<i>Susu Rekonstitusi</i>), 재결합우유, 식물성우유/유지방대체유(<i>Filled Milk</i>), 저지방유 대체유, 무지방유 대체유, 버터밀크(<i>Plain</i>), 버터밀크(<i>Plain</i>), 응유(<i>Curds</i>) 등이 있다.</p>
	<p>가미하거나 발효한 우유 함유 음료                      (예를 들면 초콜릿우유, 에그노그(<i>Eggnog</i>), 요구르트음료, 유청 함유 음료) 향료와 혼합물을 첨가하고 우유를 함유한 모든 음료를 포함하며, 코코아용 혼합물은 제외한다(코코아-설탕 혼합물). 우유맛 음료는 포함하지 않는다.</p>
	<p>예를 들면 가미 유음료, 우유 함유 음료, 가미 발효 유음료, 가미 요구르트 음료, 라씨(<i>Lassi</i>) 등이 있다.</p>
	<p>발효유와 레닌 효소 가수분해 유제품(<i>Plain</i>)                       발효유(<i>Plain</i>)                       발효유에는 예를 들면 산성 우유, 저지방 산성 우유, 무지방 산성 우유, 발효유(또는 <i>Cultured Milk</i>), 저지방 발효유(또는 저지방 <i>Cultured Milk</i>), 요구르트 등이 있다.</p>

【표 2-39】 식품유형별 정의

식품유형	정 의
가공유류	<p>크림과 유사제품 액체, 반액체, 또는 반고체의 모든 크림 또는 크림 유사제품을 포함한다.</p> <p>예를 들면 크림, 휘핑크림, 분말우유와 분말크림 및 분말 유사제품(<i>Plain</i>), Full Cream, 분말크림 등이 있다.</p> <p>치즈와 치즈 유사제품 치즈와 치즈 유사제품에는 치즈, 크림치즈, 숙성치즈 등이 있다.</p>
아이스크림	<p>우유를 함유한 디저트(예를 들면 푸딩, 가미 요구르트 또는 과일 요구르트) 우유 함유 디저트 제품, 인스턴트 디저트 분말, 냉동 제과 유제품, 우유 함유의 속재료, 가미 요구르트를 포함한다. 이 제품은 식품 카테고리 03.0 (식용얼음, 셔벗과 소르베 포함)과 다르다. 카테고리 01.7의 제품은 우유를 함유하고 있는 반면 카테고리 03.0은 물을 기초로 하고 있고 우유를 함유하지 않는다.</p> <p>우유를 함유한 디저트의 종류로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가미 요구르트, 얼음우유, <i>Junket</i>, 둘째 데 레체(<i>Dulce de leche</i>), 버터스카치(<i>Butterscotch</i>) 푸딩, 초콜렛무스, 우유캔디, 비 유제품 푸딩(<i>Non Dairy Pudding</i>) 등이다.</p>

## 2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정의

### 2.1. 식품첨가물의 정의

- 한국의 식품첨가물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 2조를 따른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 인도네시아 식품첨가물규정에 따른 식품첨가물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식품첨가물(Bahan Tambahan Pangan, BTP)이란 식품의 성질이나 형태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성분이다.
-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식품첨가물은 직접 섭취를 의미하지 않으며 또는 식품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품첨가물에는 영양가가 있거나 없을 수 있으며,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또는 운송에서 기술적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한다. 식품첨가물은 영양가를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성분이나 오염물질은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식품첨가물에 대한 보건부 규정은 식품첨가물의 정의 및 27개 첨가물 분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6개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대한 각 식약청 규정에서는 개별 식품첨가물의 사용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식품첨가물 규정 <Regulation MENKES No.033/2012>
  - 상기 규정은 식약청 법률문서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sup>27)</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첨가물 27개 분류 및 사용 규정
  - 소포제 (Antifoaming agent)
    - 소포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13/2013>

27) <http://jdih.pom.go.id/>

확인방법: 왼쪽 배너의 Produk Hukum > Produk > Pangan(식품) 순으로 클릭

- 고결(케이킹)방지제 (Anticaking agent)
  - 고결방지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10/2013>
- 산화방지제 (Antioxidant)
  - 산화방지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38/2013>
- 탄화제 (Carbonating agent)
  - 탄화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4/2013>
- 유화제 염류 (Emulsifying salt)
  - 유화제 염류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16/2013>
- 포장가스 (Packaging gas)
  - 포장가스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17/2013>
- 습윤제 (Humectant)
  - 습윤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5/2013>
- 광택제 (Glazing Agent)
  - 광택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12/2013>
- 감미료 (Sweetener)
  - 인공감미료(Artificial Sweetener)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HK.00.05.5.1.4547/2004>
- 제조용제 (Carrier)
  - 제조용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6/2013>
- 겔화제 (Gelling agent)
  - 겔화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19/2013>
- 기포제 (Foaming agent)
  - 기포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22/2013>
- 산도조절제 (Acidity regulator)
  - 산도조절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8/2013>
- 보존료 (Preservative)
  - 보존료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36/2013>
- 팽창제 (Raising agent)
  - 팽창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11/2013>
- 유화제 (Emulsifier)
  - 유화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20/2013>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증점제 (Thickener)
    - 증점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15/2013>
  - 고결제 (Firming agent)
    - 고결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9/2013>
  - 향미증진제 (Flavouring enhancer)
    - 향미증진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23/2013>
  - 증량제 (Bulking agent)
    - 증량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25/2013>
  - 안정제 (Stabilizer)
    - 안정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24/2013>
  - 발색제 (Colour retention agent)
    - 발색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21/2013>
  - 향료 (Flavouring)
    -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식품첨가물 규정에서는 향료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 1) *Natural aromatic raw material*
      - 2) *Flavouring preparation*
      - 3) *Smoke flavouring*
      - 4) *Process flavouring*
  - 밀가루 개량제 (Flour treatment agent)
    - 밀가루 개량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7/2013>
  - 착색제 (Colour)
    - 착색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37/2013>
  - 충전제 (Propellant)
    - 충전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14/2013>
  - 강화제 (Sequestrant)
    - 강화제 사용기준 규정 <Regulation No.18/2013>
- 식품첨가물 규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19개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Boric acid
  - Salicylic acid and its salt

- Diethylpyrocarbonate (DEPC)
- Dulcin
- Formaldehyde
- Potassium bromate
- Potassium chlorate
- Chloramphenicol
- Brominated vegetable oils
- Nitrofurazone
- Dulcamara
- Cocaine
- Nitrobenzene
- Cinnamyl anthranilate
- Dihydrosafrole
- Tonka bean
- Calamus oil
- Tansy oil
- Sasafras oil

## 2.2. 유해물질의 정의

- 유해물질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및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
- 인도네시아의 유해물질 관련 규정은 오염물질을 ‘환경에서 유래했거나 식품 제조과정의 결과로서 의도하지 않게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손해를 입히며, 위협할 수 있는 생물학 및 화학적 오염물, 이물질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정의한다. 3가지의 오염을 규정하며, 미생물 오염과 중금속 오염, 곰팡이 독소 및 화학적 오염에 대하여 종류와 식품에 사용 최대한도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생물학적 오염(Biological Contamination): 생물자원에서 유래한 식품의 오염으로 미생물 오염 또는 Protozoa와 Nematoda와 같은 다른 오염이 있다.
- 미생물 오염(Microbial Contamination): 사람의 건강에 손실을 끼치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미생물로부터 유래한 식품 오염이다.
- 화학적 오염(Chemical Contamination): 사람의 건강에 손실을 끼치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화학성분이나 화합물로부터 유래한 식품 오염물이며, 중금속 오염(비소, 카드뮴, 수은, 주석 납 등), 곰팡이 독소 오염(아플라톡신, 테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파툴린 등), 항생제 오염, 술폰아미드 오염 또는 다른 화학 오염(벤조피렌, 다이옥신(2,3,7,8-TCDD), 1,3-디클로로프로판-2-올(1,3-DCP), 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3-MCPD) 등)의 오염이다.
- 유해물질 기준 관련 규정에서는 미생물과 화학물질을 비롯한 각각의 물질의 식품의 허용량을 명시하고 있다.
  - 식품의 아플라톡신 최대한도 지정  
<Decision No.HK.00.05.1.4057/2004> 2004년 9월 9일 제정
  - 식품의 미생물과 화학 오염 최대한도 규정  
<Regulation No.HK.00.06.1.52.4011/2009> 2009년 10월 28일 제정
  - 식품의 방사성 오염 최대한도 규정  
<Regulation No.1031/MENKES//V/2011> 2011년 5월 27일 제정
  - 식품의 멜라민 최대한도 규정  
<Regulation No.034/MENKES/2012> 2012년 7월 16일 제정
- 유해물질 기준 관련규정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
  - 식약청 법률문서정보네트워크: <http://jdih.pom.go.id/>
- 미생물과 화학적 오염 최대한도
  - 식품의 미생물 오염물 종류와 최대한도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유제품과 유사제품			
1	저온살균우유 (플레인 또는 가미한 제품)	Total Plate Count(TPC) (30℃, 72hour)	5×10 <sup>4</sup> / ml
		<i>Coliform Most Probable Number(MPN)</i>	10/ml <sup>28)</sup> *
		<i>Escherichia Coli(E.Coli) MPN</i>	<3/ml
		<i>Salmonella sp.</i>	negative/25ml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ml
		<i>Listeria monocytogenes</i>	negative/25ml
2	멸균우유 또는 초고온살균우유 (플레인 또는 가미한 제품)	15시간 배양 후 TPC (30℃, 72hour)	< 10 / 0.1ml
3	발효유(요구르트) (플레인 또는 가미한 제품)	<i>Coliform MPN</i>	10/ml *
		<i>Salmonella sp.</i>	negative/25ml
		<i>Listeria monocytogenes</i>	negative/25ml
4	무가당연유와 무가당 탈지연유	TPC (30℃, 72hour)	1×10 <sup>2</sup> / ml
		<i>Coliform MPN</i>	10/ml *
		<i>Salmonella sp.</i>	negative/25ml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ml
5	가당연유와 가당 탈지연유 (플레인 또는 가미한 제품)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10/g *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Mold and Yeast	2×10 <sup>2</sup> / g
6	식물성 크리머 분말	TPC (30℃, 72hour)	5×10 <sup>4</sup> / g
		<i>Coliform MPN</i>	10/g *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7	저온살균 크림	TPC (30℃, 72hour)	5×10 <sup>4</sup> / g
		<i>Coliform MPN</i>	10/g *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i>Listeria monocytogenes</i>	negative/25g

28) 만약 장내세균(Enterobacteriaceae) 평가에서 2×1 그램당 부정적인(negatif) 결과를 보인다면 대장균군(coliform)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8	유분과 유크림분	TPC (30℃, 72hour)	5×10 <sup>4</sup> / g
		<i>Coliform MPN</i>	10/g *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9	버터밀크 분말	TPC (30℃, 72hour)	2×10 <sup>n</sup> / g (n=5)
		<i>Coliform MPN</i>	10/g *
		<i>Salmonella sp.</i>	negative/25g
10	치즈 (모든 종류)	<i>E.Coli MPN</i>	10/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i>Listeria monocytogenes</i>	negative/25g
11	아이스크림	TPC (30℃, 72hour)	5×10 <sup>4</sup> / g
		<i>Coliform MPN</i>	<3/g *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i>Listeria monocytogenes</i>	negative/25g
12	아이스크림 분말	TPC (30℃, 72hour)	5×10 <sup>4</sup> / g
		<i>Coliform MPN</i>	<3/g *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1</sup> / g
13	조리 및 냉동한 푸딩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3/g *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14	유청분말	<i>Coliform MPN</i>	<3/g *
		<i>Salmonella sp.</i>	negative/25g
<b>지방, 기름 및 오일 에멀전</b>			
15	쇼트닝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5)
		<i>Coliform MPN</i>	10/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16	버터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5)
		<i>Coliform</i>	1×10 <sup>1</sup> / 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i>Listeria monocytogenes</i>	negative/25g
17	마가린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5)
		<i>Coliform MPN</i>	10/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b>식용얼음 (edible ice)</b>			
18	아이스큐브, 아이스캔디, 가미 얼음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b>과일과 채소</b>			
19	건조 과일(건포도, 바나나, 망고 등)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5)
		<i>Coliform MPN</i>	<3/g
		Mold/Yeast	5×10 <sup>1</sup> / g
20	설탕에 절인 젖은(wet) 과일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5)
		<i>Coliform MPN</i>	10/g
		<i>E.Coli MPN</i>	<3/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21	설탕에 절인 말린(dried) 과일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5)
		<i>Coliform MPN</i>	10/g
		<i>E.Coli MPN</i>	<3/g
		Mold	5×10 <sup>1</sup> / g
22	통조림(Kaleng 캔) 과일	TPC (30℃, 72hour)	1×10 <sup>2</sup> / g
		<i>Coliform</i>	<3 MPN/g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g
		<i>Clostridium perfringens</i>	negative/g
23	과일잼, 젤리와 마말레이드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3/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i>Clostridium sp</i>	<1×10 <sup>1</sup> / 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24	젤리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3/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25	액상 코코넛 밀크, 코코넛 페이스트, 코코넛 크림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6)
		<i>Coliform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26	강판에 갈아 건조한 코코넛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6)
		<i>Coliform MPN</i>	100/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27	포장 발효 코코넛즙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3/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28	과일을 함유한 Lempok(바나나, 두리안 등의 과일 과자)와 유사제품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20/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1</sup> / 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29	과일을 함유한 칩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E.Coli MPN</i>	<3/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Mold	5×10 <sup>1</sup> / g
30	냉동 채소	TPC (30℃, 72hour)	5×10 <sup>n</sup> / g (n=5)
		<i>Coliform</i>	5×10 <sup>2</sup> / 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Mold	1×10 <sup>2</sup> / g
31	건조 채소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5)
		<i>Coliform</i>	5×10 <sup>2</sup> / 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Mold	1×10 <sup>2</sup> / g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32	피클과 소금에 절인 채소	<i>Coliform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33	통조림(Kaleng) 채소	TPC (30℃, 72hour)	1×10 <sup>2</sup> / g
		<i>Coliform MPN</i>	<3/g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g
		<i>Clostridium perfringens</i>	negative/g
34	채소, 괴경과 견과류(Gadung-마의 일종, 카사바, 토란, 감자, 고구마, 버섯)를 함유한 칩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E.Coli MPN</i>	<3/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Mold	5×10 <sup>1</sup> / g
35	채소, 괴경과 견과류(Gadung-마의 일종, 카사바, 토란, 감자, 고구마, 버섯)를 함유한 케익/과자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3/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b>사탕/캔디 및 초콜릿</b>			
36	코코아분말, 코코아매스	TPC (30℃, 72hour)	3×10 <sup>4</sup> / 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37	코코아와 초콜릿 제품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38	하드 캔디	TPC (30℃, 72hour)	5×10 <sup>2</sup> / g
		<i>Coliform MPN</i>	20/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Mold and Yeast	2×10 <sup>2</sup> / g
39	젤리가 아닌 소프트 캔디	TPC (30℃, 72hour)	5×10 <sup>2</sup> / g
		<i>Coliform MPN</i>	20/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Mold and Yeast	2×10 <sup>2</sup> / g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40	젤리 소프트 캔디	TPC (30℃, 72hour)	5×10 <sup>4</sup> / g
		<i>Coliform MPN</i>	20/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Mold and Yeast	2×10 <sup>2</sup> / g
41	제과 껌	TPC (30℃, 72hour)	5×10 <sup>3</sup> / g
		<i>Coliform MPN</i>	20/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Mold and Yeast	2×10 <sup>2</sup> / g
<b>곡물과 곡물제품</b>			
42	타피오카 가루, Hunkwee 가루, 강낭콩 가루, 카사바 가루, 사고 가루, Garut(Arrowroot) 가루, 옥수수 가루, 밀가루, 쌀가루, 케익용가루, 슈가팜 가루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6)
		<i>E.Coli MPN</i>	10/g
		<i>Bacillus cereus</i>	<1×10 <sup>4</sup> / g
		Mold	1×10 <sup>4</sup> / g
43	바나나 가루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E.Coli MPN</i>	10/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g
		<i>Bacillus cereus</i>	1×10 <sup>4</sup> / g
		Mold and Yeast	2×10 <sup>2</sup> / g
44	우유 없는 아침 식사 시리얼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E.Coli MPN</i>	<3/g
		Mold	5×10 <sup>1</sup> / g
45	곡물 우유 분말	TPC (30℃, 72hour)	5×10 <sup>4</sup> / g
		<i>Coliform MPN</i>	100/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g
		<i>Bacillus cereus</i>	1×10 <sup>2</sup> / g
		Mold	5×10 <sup>1</sup> / g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46	당면, 스파게티, 건조 국수, 쌀당면, 즉석 면, 마카로니, 추가 가공이 필요한 곡물의 최종 제품, 건조 파스타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6)
		<i>E.Coli</i> MPN	10/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3</sup> / g
		<i>Bacillus cereus</i>	1×10 <sup>3</sup> / g
		Mold	1×10 <sup>4</sup> / g
47	Wet Noodles, 생 파스타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6)
		<i>E.Coli</i> MPN	10/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3</sup> / g
		<i>Bacillus cereus</i>	1×10 <sup>3</sup> / g
48	양념 분말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6)
		<i>E.Coli</i> MPN	<3/g
		<i>Bacillus cereus</i>	1×10 <sup>4</sup> / g
		Mold and Yeast	2×10 <sup>4</sup> / g
49	찹쌀가루를 함유한 과자, 와직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i> MPN	20/g
		<i>E.Coli</i> MPN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0/ g
		<i>Bacillus cereus</i>	1×10 <sup>2</sup> / g
50	Tauco(Glycine max 콩으로 만든 음식조미료)	<i>Coliform</i> MPN	10/g
		<i>E.Coli</i> MPN	negative/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Bacillus cereus</i>	1×10 <sup>3</sup> / g
		Mold	< 10/ g
51	멤빠(Tempe; 인도네시아 전통 콩발효 식품) 가공품	<i>Coliform</i> MPN	10/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52	두유(Sari kedelai)	TPC (30℃, 72hour)	5×10 <sup>4</sup> / ml
		<i>Coliform</i> MPN	20/ml
		<i>E.Coli</i> MPN	<3/ml
		<i>Salmonella sp.</i>	negative/25ml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ml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52	두유(Sari kedelai)	<i>Bacillus cereus</i>	1×10 <sup>3</sup> / ml
		Mold	5×10 <sup>1</sup> / ml
53	강낭콩 Bakpia(강낭콩과 설탕을 주재료로 만드는 경주빵 같은 과자)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E.Coli MPN</i>	<3/g
		<i>Bacillus cereus</i>	1×10 <sup>2</sup> / g
		Mold	1×10 <sup>2</sup> / g
<b>베이커리 제품</b>			
54	빵과 담백한 베이커리 제품 및 프리믹스(빵가루 포함)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E.Coli MPN</i>	10/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Bacillus cereus</i>	1×10 <sup>2</sup> / g
		Mold and Yeast	1×10 <sup>4</sup> / g
55	특별 베이커리 제품(달콤한, 짭짤한)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20/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i>Bacillus cereus</i>	1×10 <sup>2</sup> / g
		Mold and Yeast	2×10 <sup>2</sup> / g
<b>계란과 계란제품</b>			
69	액상 계란, 액상 계란 흰자와 액상 계란 노른자(살균처리한 제품), 냉동 계란, 건조/분말 계란	TPC (30℃, 72hour)	5×10 <sup>4</sup> / g
		<i>Coliform MPN</i>	50/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g
70	소금에 절인 계란(Telur asin)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1</sup> / g
71	계란을 함유한 디저트 식품(예를 들어 CUSTARD)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g
<b>꿀을 포함한 감미료</b>			
72	꿀 이외의 감미료	TPC (30℃, 72hour)	3×10 <sup>3</sup> / g
		<i>Coliform MPN</i>	<3/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73	꿀	TPC	$<5 \times 10^3$ / g
		Coliform MPN	$<3$ /g
		Mold and Yeast	$<1 \times 10^1$ / g
<b>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 단백질제품</b>			
74	허브와 향신료	TPC (30℃, 72hour)	$1 \times 10^n$ / g (n=6)
		Coliform	$1 \times 10^2$ / g
		E.Coli MPN	$<3$ /g
		Salmonella sp.	negative/25g
		Bacillus cereus	$1 \times 10^4$ / g
		Clostridium perfringens	$1 \times 10^3$ / g
		Mold and Yeast	$2 \times 10^4$ / g
75	즉석면 양념	TPC (30℃, 72hour)	$1 \times 10^n$ / g (n=6)
		Coliform	$1 \times 10^2$ / g
		E.Coli MPN	$<3$ /g
		Mold/Yeast	$1 \times 10^4$ / g
76	기타 조미료 및 양념	TPC (30℃, 72hour)	$1 \times 10^4$ / g
		Coliform	$1 \times 10^2$ / g
		E.Coli MPN	$<3$ /g
		Salmonella sp.	negative/25g
		Bacillus cereus	$1 \times 10^2$ / g
		Clostridium perfringens	$1 \times 10^2$ / g
77	겨자(머스터드)	TPC (30℃, 72hour)	$1 \times 10^4$ / g
		Mold	$1 \times 10^2$ / g
78	통조림 수프와 국물	TPC aerobic (30℃, 72hour)	$<1 \times 10^1$ / g
		TPC anaerobic (30℃, 72hour)	$<1 \times 10^1$ / g
		Clostridium sp	negative/g
79	즉석 분말수프(즉석 크림수프 분말 포함)	TPC (30℃, 72hour)	$1 \times 10^n$ / g (n=5)
		Coliform MPN	20/g
		E.Coli MPN	$<3$ /g
		Salmonella sp.	negative/25g
		Staphylococcus aureus	$1 \times 10^3$ / g
		Clostridium perfringens	$1 \times 10^2$ / g
		Mold and Yeast	$1 \times 10^2$ / g
80	쇠고기맛 양념, 닭고기맛 양념	TPC (30℃, 72hour)	$1 \times 10^4$ / g
		Coliform MPN	$<3$ /g
		Mold and Yeast	$2 \times 10^2$ / g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81	유화소스(예: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10/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82	칠리 페이스트(Sambal Terasi 어묵이 들어간 제품)	<i>Coliform MPN</i>	<3/g
		Mold	5×10 <sup>1</sup> / g
83	간장, 생선소스, 코코넛즙소스, 굴소스	<i>Coliform MPN</i>	<3/g
		Mold	5×10 <sup>1</sup> / g
84	토마토소스, 고추소스 및 기타 비유화소스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Coliform MPN</i>	100/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Mold	5×10 <sup>1</sup> / g
85	샐러드(예를 들면 마카로니 샐러드, 감자 샐러드)와 샌드위치용 스프레드(Oles) 제품, 초콜릿과 땅콩 함유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i>Coliform MPN</i>	<3/g
		<i>Staphylococcus aureus</i>	5×10 <sup>2</sup> / g
86	효모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유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음료			
102	포장생수	TPC start (30℃, 72hour)	1×10 <sup>2</sup> / ml
		TPC end (30℃, 72hour)	1×10 <sup>n</sup> / ml (n=5)
		<i>Coliform MPN</i>	<2/100ml
		<i>Salmonella sp.</i>	negative/100ml
		<i>Pseudomonas aeruginosa</i>	negative/ml
103	과일주스와 야채주스	TPC (30℃, 72hour)	1×10 <sup>4</sup> / ml
		<i>Coliform</i>	2×10 <sup>1</sup> / ml
		<i>E.Coli MPN</i>	<3/ml
		<i>Salmonella sp.</i>	negative/25ml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ml
		Mold and Yeast	1×10 <sup>2</sup> / ml
104	탄산음료(소다수, 레몬 등)	TPC (30℃, 72hour)	1×10 <sup>2</sup> / ml
		<i>Coliform</i>	1colony/100ml
		<i>Salmonella sp.</i>	negative/100ml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ml
		Mold and Yeast	1×10 <sup>2</sup> / ml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105	아이소토닉 음료(미네랄 함유 스포츠 드링크)	TPC (30℃, 72hour)	1×10 <sup>2</sup> / ml
		<i>Coliform</i>	1colony/100ml
		<i>Salmonella sp.</i>	negative/100ml
		Mold and Yeast	1×10 <sup>2</sup> / ml
106	시럽	TPC (30℃, 72hour)	5×10 <sup>2</sup> / ml
		<i>Coliform MPN</i>	20/ml
		<i>E.Coli MPN</i>	<3/ml
		<i>Salmonella sp.</i>	negative/25ml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ml
		Mold and Yeast	1×10 <sup>2</sup> / ml
107	음료 분말 (가미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 전통 제품 등)	TPC (30℃, 72hour)	3×10 <sup>3</sup> / g
		<i>Coliform MPN</i>	<3/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108	스쿼시 음료	TPC (30℃, 72hour)	4×10 <sup>2</sup> / ml
		<i>Coliform MPN</i>	20/ml
		<i>Salmonella sp.</i>	negative/25ml
		Mold and Yeast	1×10 <sup>2</sup> / ml
109	가미한 비탄산 음료	TPC (30℃, 72hour)	2×10 <sup>2</sup> / ml
		<i>Coliform MPN</i>	20/ml
		<i>Salmonella sp.</i>	negative/25ml
		<i>Staphylococcus aureus</i>	0/ ml
		<i>Vibrio sp</i>	negative/ml
110	포장 건조차	TPC (30℃, 72hour)	3×10 <sup>3</sup> / g
		<i>Coliform MPN</i>	<3/g
		Mold	5×10 <sup>2</sup> / g
111	티백 차	TPC (30℃, 72hour)	3×10 <sup>3</sup> / g
		Mold	5×10 <sup>2</sup> / g
112	포장 차음료	TPC (30℃, 72hour)	1×10 <sup>2</sup> / ml
		<i>Coliform MPN</i>	<2/100ml
		<i>E.Coli MPN</i>	negative/100ml
		<i>Salmonella sp.</i>	negative/100ml
113	포장 커피분말	TPC (30℃, 72hour)	1×10 <sup>n</sup> / g (n=6)
		Mold	1×10 <sup>4</sup> / g
114	티백 커피, 인스턴트 커피	TPC (30℃, 72hour)	<3×10 <sup>2</sup> / g
		Mold	5×10 <sup>1</sup> / g

【표 2-40】 식품의 미생물 기준

No.	식품 분류	미생물	최대 한도
115	혼합 커피	TPC (30℃, 72hour)	5×10 <sup>n</sup> / g (n=5)
		<i>Coliform MPN</i>	20/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colony/25g
		Mold and Yeast	1×10 <sup>2</sup> / g
116	포장 커피음료	TPC (30℃, 72hour)	1×10 <sup>2</sup> / ml
		<i>Coliform MPN</i>	<2/100ml
		<i>Clostridium perfringens</i>	negative/100ml
		<i>Salmonella sp.</i>	negative/100ml
117	포도주, 과일주	TPC (30℃, 72hour)	2×10 <sup>2</sup> / ml
		<i>Coliform MPN</i>	20/ml
		<i>E.Coli MPN</i>	<3/ml
		<i>Salmonella sp.</i>	negative/25ml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ml
		Mold and Yeast	1×10 <sup>2</sup> / ml
<b>즉석섭취 스낵 식품</b>			
118	압출 스낵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E.Coli MPN</i>	<3/g
		<i>Salmonella sp.</i>	negative/25g
		<i>Staphylococcus aureus</i>	1×10 <sup>2</sup> / g
119	바삭한 땅콩, 수크로(Sukro) 콩, 양파콩, 계란콩, 발리콩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i>E.Coli MPN</i>	<3/g
		Mold	5×10 <sup>2</sup> / g
<b>무균 포장 살균 식품 및 음료</b>			
120	무균 포장 살균 식품 및 음료	TPC (30℃, 72hour)	<10 / 0.1ml or <10 / 0.1g
121	기타 가공식품	TPC (30℃, 72hour)	1×10 <sup>4</sup> / g or ml
		<i>Coliform MPN</i>	<3/g or /ml
		<i>Salmonella sp.</i>	negative/25g or negative/25ml
		<i>Staphylococcus aureus</i>	negative/g or negative/ml

- 식품의 중금속 오염물 종류와 최대한도

① Arsenic 비소

【표 2-41】 식품의 비소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 (ppm or mg/kg)
1	유가공품	0.1 (즉석섭취제품에 한함) (dihitung terhadap produk siap konsumsi)
2	아이스크림	0.5
3	식물성 기름과 지방	0.1
4	동물성 기름과 지방	0.1
5	버터	0.1
6	마가린	0.1
7	Minarin	0.1
8	아이스캔디	0.5
9	절인 과일(Acar buah 과일 피클)	1.0
10	절인 채소(Acar sayuran 채소 피클)	1.0
11	잼과 유사제품	1.0
12	토마토 가공품	1.0
13	초콜릿분말	1.0
14	(밀)가루와 그 가공품	0.5
15	베이커리 제품	0.5
16	육가공품	0.5
17	생선 가공품	1.0
18	굴( <i>bivalve</i> 쌍각조개) 연체동물 가공품과 해삼 가공품	1.0
19	새우 가공품과 기타 갑각류 가공품	1.0
20	계란 가공품	0.5
21	설탕, 포도당	1.0
22	과당	1.0
23	꿀	1.0
24	소금	0.1
25	향신료/양념 · 조미료	0.1
26	수프와 국물	0.5
27	간장(Kecap)	0.5
28	소스(Saus)	1.0

【표 2-41】 식품의 비소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 (ppm or mg/kg)
29	효모(Ragi)	2.0
36	천연 미네랄 워터	0.05 mg/l
37	포장 생수	0.01 mg/l
38	과일 과즙(Fruit Nectar)	0.1
39	과일주스	0.1
40	농축 과일주스	0.5
41	청량 음료(Minuman ringan siap minum)	0.1
42	시럽	0.5
43	분말 음료	0.5
44	분말커피	1.0
45	차	1.0
46	알코올음료	0.2
47	기타 가공식품	0.25

② Cadmium(Cd) 카드뮴

【표 2-42】 식품의 카드뮴(Cd)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 (ppm or mg/kg)
1	과일 가공품과 채소 가공품	0.2
2	초콜릿과 코코아제품	0.5
3	곡물/곡물 가공 식품 (Cereal)	0.1
4	쌀가루	0.4
5	육가공품	0.3
6	겨(Offal)가공품	0.5
7	생선 가공품	0.1
8	육식 물고기 가공품. 예를 들면 상어, 참치, Marlin(돛새치과의 큰 물고기) 등	0.5
9	굴( <i>bivalve</i> 쌍각조개) 연체동물 가공품과 해삼 가공품	1.0
10	새우 가공품과 기타 갑각류 가공품	1.0
11	소금	0.5
18	천연 미네랄 워터	0.003 mg/l

【표 2-42】 식품의 카드뮴(Cd)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 (ppm or mg/kg)
19	포장 생수	0.003 mg/l
20	기타 가공식품	0.2

③ Mercury(Hg) 수은

【표 2-43】 식품의 수은(Hg)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 (ppm or mg/kg)
1	유가공품	0.03 (즉석섭취제품에 한함)
2	마가린	0.03
3	버터	0.03
4	정제한 식물성 기름	0.05
5	토마토 가공품	0.03
6	초콜릿 분말	0.03
7	(밀)가루와 그 가공품	0.05
8	베이커리 제품	0.05
9	육가공품	0.03
10	생선 가공품	0.5
11	육식 물고기 가공품. 예를 들면 상어, 참치, Marlin(돛새치과의 큰 물고기) 등	1.0
12	굴( <i>bivalve</i> 쌍각조개) 연체동물 가공품과 해삼 가공품	1.0
13	새우 가공품과 기타 갑각류 가공품	1.0
14	소금	0.1
15	간장(Kecap)	0.05
22	천연 미네랄 워터	0.001 mg/l
23	포장 생수	0.001 mg/l
24	과일주스	0.03
25	농축 과일주스	0.03 (즉석섭취제품에 한함)
26	분말커피	0.03
27	차	0.03



【표 2-43】 식품의 수은(Hg)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 (ppm or mg/kg)
28	술	0.03
29	기타 가공식품	0.03

④ Tin(Sn) 주석

【표 2-44】 식품의 주석(Sn)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 (ppm or mg/kg)
1	통조림(Kaleng 캔) 포장 육가공품	200.0
6	캔 포장 음료	150.0
7	열가공과 캔포장한 가공식품	250.0
8	캔 포장하지 않은 가공식품	40.0

⑤ Plumbum(Pb) 납

【표 2-45】 식품의 납(Pb)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 (ppm or mg/kg)
1	유가공품	0.02 (즉석섭취제품에 한함)
2	식물성 기름과 지방	0.1
3	동물성 기름과 지방	0.1
4	버터	0.1
5	마가린	0.1
6	Minarin	0.1
7	과일 가공품과 채소 가공품	0.5
8	토마토 페이스트	1.0
9	사탕/캔디 및 초콜릿	1.0
10	곡물과 곡물 가공 제품	0.3
11	밀가루	1.0
12	베이커리 제품	0.5

【표 2-45】 식품의 납(Pb)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 (ppm or mg/kg)
13	육가공품	1.0
14	생선 가공품	0.3
15	육식 물고기 가공품. 예를 들면 상어, 참치, Marlin(돛새치과의 큰 물고기) 등	0.4
16	굴( <i>bivalve</i> 쌍각조개) 연체동물 가공품과 해삼 가공품	1.5
17	새우 가공품과 기타 갑각류 가공품	0.5
18	Terasi (새우 따위를 갈아만든 어묵. 생선묵)	1.0
19	꿀	2.0
20	소금	10.0
21	향신료/양념	7.0
22	간장(Kecap)	1.0
23	효모	5.0
24	소스	1.0
31	천연 미네랄 워터	0.01 mg/l
32	포장 생수	0.005 mg/l
33	과일주스와 과일과즙(Fruit nectar)	0.2
34	과일주스 농축액	1.0
35	시럽	1.0
36	청량음료	0.2
37	분말음료	1.0
38	알코올음료	0.2
39	분말커피	2.0
40	차	2.0
41	기타 가공식품	0.25

- 식품의 곰팡이 기준

① Aflatoxin

【표 2-46】 식품의 Aflatoxin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ppb or mcg/kg)	
1	우유와 우유를 함유한 음료	M <sub>1</sub>	0.5
2	발효유와 레닌 효소 가수분해 유제품 ( <i>plain</i> )	M <sub>1</sub>	0.5
3	연유와 유사제품	M <sub>1</sub>	0.5
4	크림( <i>plain</i> )과 유사제품	M <sub>1</sub>	0.5
5	분말우유와 분말크림 및 분말 유사제품 ( <i>plain</i> )	M <sub>1</sub>	5
6	치즈와 치즈 유사제품	M <sub>1</sub>	0.5
7	우유를 함유한 디저트 (예를 들면 푸딩, 가미한 요구르트 또는 과일 요구르트)	M <sub>1</sub>	0.5
8	유청과 유청제품, 유청 치즈는 제외	M <sub>1</sub>	0.5
9	견과류 가공제품	B <sub>1</sub>	15
		Total	20
10	옥수수 가공제품	B <sub>1</sub>	15
		Total	20
11	향신료가루	B <sub>1</sub>	15
		Total	20

② Deoxinivalenol

【표 2-47】 식품의 Deoxinivalenol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ppb or mcg/kg)
1	옥수수를 원료로 가공한 제품	1000
2	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1000
3	즉석섭취 (밀)가루 가공제품 (패스트리, 빵, 비스킷, 스낵)	500
4	파스타와 국수 및 유사제품	750
5	가루를 포함한 모유대체제품	200

③ Fumonisin 기준

【표 2-48】 식품의 Fumonisin B<sub>1</sub> + B<sub>2</sub>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ppb or mcg/kg)
1	옥수수를 원료로 가공한 제품	2000
2	즉석섭취 옥수수 가공제품	1000

④ Ochratoxin A

【표 2-49】 식품의 Ochratoxin A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ppb or mcg/kg)
1	곡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5
2	즉석섭취 곡물 가공 제품	3
3	곡물을 함유한 모유대체제품	0.5
4	건포도를 포함한 포도 건조 제품	10
5	포도주스	2
6	분말커피를 포함한 볶은 커피	5
7	인스턴트커피	10
8	맥주	0.2

⑤ Patulin

【표 2-50】 식품의 Patulin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ppb or mcg/kg)
1	통조림(캔) 사과	50
2	사과퓨레	25
3	사과주스	50
4	사과과즙(사과 넥타)	50
5	유아용 사과퓨레	10
6	사과 함유 알코올음료	50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식품의 화학적 오염물(Benzopiren, Dioxin (2,3,7,8-TCDD), 1,3-Dichloropropan-2-ol (1,3-DCP), and 3-Monochloropropan-1,2-diol (3-MCPD)) 종류와 기준

① Benzopiren

【표 2-51】 식품의 Benzopiren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ppb or mcg/kg)
1	지방과 기름	2
2	유아용 식품	1
	a. 곡물 기반의 유아용 식품	1
	b. 분유와 성장식품	1
	c. 유아용을 포함한 건강필요용 특수 식이 식품	1
3	베이컨 가공품(Daging asap olahan)	5
4	생선 가공품, 훈제 생선 이외의 제품	2
5	훈제 생선, 굴 제외	5
6	굴 가공품	10
7	훈제한 것 이외의 갑각류 가공품과 두족류(오징어 · 문어 따위) 가공품	5
8	식수	0.2 mcg/l

② Dioxin (2,3,7,8-TCDD)

【표 2-52】 식품의 Dioxin (2,3,7,8-TCDD)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 (pg WHO-PCDD/F-TEQ/g 지방)
1	육가공품	3
2	간 가공품	6.1
3	생선 가공품	3 (pg/g wet weight)
4	유가공품, 버터지방 포함	3
5	계란 가공품	0.91
6	지방과 기름	1.82
7	곡물 가공제품	0.46

③ 1,3-Dichloropropan-2-ol (1,3-DCP)

【표 2-53】 식품의 1,3-Dichloropropan-2-ol (1,3-DCP)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ppb or mcg/kg)
1	Kecap, 간장(Saus kedelai)과 굴소스	5 총 고형물의 40%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3-Monochloropropan-1,2-diol (3-MCPD)

【표 2-54】 식품의 3-Monochloropropan-1,2-diol (3-MCPD) 기준

No.	식품 분류	최대 한도(ppb or mcg/kg)
1	산으로 가수분해한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모든 식품 (액체 식품)	20
2	산으로 가수분해한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모든 식품 (고체 식품)	50
3	산 가수분해된 식물성 단백질 ( <i>Acid-HVP</i> )	1000

### 3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및 금지첨가물 Data Base 구축

- 한국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식품공전(한국식품산업협회, 2013년)」, 「식품첨가물공전(한국식품산업협회, 2013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3-137호, 2013.4.5)」 및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의 적용범위(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 Data Base의 식품첨가물 허용량 비교표는 국가별 유사 기준을 적용하여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료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수출에 활용 시 해당국가의 현행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국가별 식품첨가물 허용량 비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한국

- ① 기준없음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로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한없음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는 경우로 식품첨가물 일반사용 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금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다.
  - \* 기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을 원할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 ① 기준없음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 ② GMP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해당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에 따라 식품 분류에 따른 최소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금지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 \* 기타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식약청(FDA)의 지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제5절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조사

### 1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한국 제품 중 라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적합 사례가 있었다. 식품 등록 시 검사 과정 중에 라벨(스티커) 표시사항도 사전 검사를 받게 되어있다. 부적합 사례의 경우는, 등록 시에는 라벨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 허가를 해주었는데 정작 들어온 제품은 식약청에서 허가한 것과 다른 제품이 들어온 경우이다. 이는 기업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며 라벨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서 수입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허가받은 라벨과 실제 수출하는 제품이 일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제6절 식품안전관련 사건·사고

### 1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건 발생 사례

#### 6.1.1. 인도네시아 국내 발생 사례

-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2011년 Central Jakarta 등에서 유통 중인 커피 제품 56종을 샘플로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22종에서 의약품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이들 제품을 소비자들이 해당 커피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sup>29)</sup>
- 22개의 해당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Sa Kao 3 in 1 Extra Ginger Coffee Mix

29) 출처: <http://www.beritajakarta.com/2008/en/newsview.aspx?idwil=0&id=21274>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39 Sa Kao Coffee Mix Ginseng Korea 3 in 1
  - Bel-bel Coffee Extra Milk
  - Black Borneo Platinum Coffee
  - Dream Coffee
  - Dynamic Coffee
  - Golden Life
  - Good Coffee Premium
  - Herba Max Coffee
  - Ginger Mix Barokah SP
  - Jomoon Instan Coffee
  - Joss-Fly Coffee plus Panax Ginseng
  - Cleng Coffee
  - KPH Coffee (strong coffee)
  - Mahabbah Coffee
  - Pasutri Coffee
  - Strong 234 Coffee
  - Maca-Tekh Coffee
  - Matador Coffee
  - Mawaddah Coffee
  - On Coffee
  - Premium Energy Coffee
- 식약청의 통계<sup>30)</sup>에 따르면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는 601건의 식품과, 565건의 음료의 식중독 사례(poisoning cases)가 있었고 58건의 식중독 사건(poisoning incidents)이 발생했다. 그 중에는 유통기한이 2011년 6월까지인 초콜릿을 기한이 5개월 지난 2011년 11월에 섭취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고온성 기후로 인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나서 식약청장령으로 식중독 관련 규정을 제정해 발표, 시행하고, 손 깨끗이 씻기, 물과 식재료 익혀먹기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식약청

---

30) 출처: <http://ik.pom.go.id/>

공무원이 지역의 학교에서 식품안전 관련 강연을 하는 등 식중독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55】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관련 사건·사고

일시	제목	지역	내용
2010-9	광견병	인도네시아 Jakarta, Jawa Tengah, Jawa Timur, NTB, Papua 지역	Rabies virus, genus Lyssavirus, family Rhabdoviridae가 원인이며 병원균 매개 동물로는 박쥐가 있다. 모든 포유 동물에 기생하며 잠복기는 개와 고양이의 경우 10일에서 8주이고, 소, 염소, 말과 돼지는 1-3개월이다. * 출처: 수라바야 농업검역 페이지 <sup>31)</sup>
2011	저병원성 조류독감	Maluku Utara 지역을 제한 인도네시아 전역	Orthomyxoviridae subtype H5N1가 원인으로 가금류, 돼지, 고양이에 나타나며 잠복기는 3-21일 이다. 동물 매개의 특성이 있어 병든 가축과의 접촉, 오염된 물과 사료, 비강 분비물과 배설물을 통해 전염된다. * 출처: 수라바야 농업검역 페이지
2011	탄저병/ 비장발열  탄저병/ 비장발열	인도네시아 Aceh, Sumatera Barat, Jambi, Bangka, Belitung, Jawa Barat, DIY, Jawa Timur, Bali, NTT, NTB,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gara, Sulawesi Tengah 지역	Bacillus anthracis, famili Bacillaceae가 원인으로 병원균 매개동물[곤충]으로는 절지동물, 파리와 모기 등이다. 반추동물, 타조에 기생한다. 포자 섭취, 피부 병변이 일어난 동물을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 * 출처: 수라바야 농업검역 페이지
2011	브루셀라증	Kalimantan, Riau, Jambi, Sumatera Barat, Bali, NTB 지역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전역	Brucella abortus, B. melitensis, B. ovis, B. suis B. canis가 그 원인으로 소, 물소, 양, 염소, 개에 나타나며 잠복기는 2-12개월이다. 결혼을 통한 직접 접촉, 오염된 IB 장비, 감염된 동물의 우유, 정액, 분비물에 의해 전염된다. * 출처: 수라바야 농업검역 페이지

31) 출처: <http://www.karantinapertaniansby.com/ebook/#/40>

【표 2-55】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관련 사건·사고

일시	제목	지역	내용
2011-7-18	저병원성 조류독감	Maluku Utara 지역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전역	Influenza virus type A, family Orthomyxoviridae가 원인으로 가금류, 돼지, 고양이에 나타나며 잠복기는 2일이다. 동물 매개의 특성이 있어 오염된 고기 섭취, 호흡, 병든 가축과의 직접 접촉, 사료와 식수 등을 통해 전염된다. * 출처: 수라바야 농업검역 페이지

6.1.2. 인도네시아 국외 발생 사례(인도네시아 제품)

- 일본과 미국에서의 인도네시아 제품 수입 중단<sup>32)</sup>
  - 일본과 미국에서는 재배 과정에서 적정 기준치의 100배 이상(1kg당 평균 0.1mg)의 살충제 카바릴(carbaryl)을 사용한 인도네시아 람뽕(Lampung)산 커피를 수입 거절하기로 결정해, 2013년 3월 수출량은 전월 대비 1만 톤 줄어들었고 수출액도 1,900만 달러 감소했다.

## 2 식품안전정보 조사

6.2.1.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

- 이돌 피트리(Idul Fitri) 연휴가 다가오면서, 식약청(BPOM)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불법식품을 발견했다. 식품안전 및 위험물질 관리국의 로이(Roy R. Sparringa) 국장에 따르면 2013년 7월 31일 가공식품 감독 강화 자료에서, 불법식품 중 말레이시아 산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국산이 22%를 차지했다. 뒤이어 싱가포르 산이 11퍼센트, 이탈리아가 9퍼센트, 독일이 8퍼센트, 한국, 중국, 기타 국가들이 1퍼센트 정도였다. 불법식품들은 초콜릿, 에너지음료, 캔음료, 캔디 순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마일로(Milo) 유제품과 캔디 등의 불법식품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것이 가장 많았고 레드불 캔음료 불법식품은 태국산이 있었다. 후속 조치로서, 식약청은 이러한 불법 식품 공급업체에 대해 법 집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2) 출처: Kati (<http://www.kati.net>) 해외 수출정보

## 제7절 가공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 및 첨가물 관련 Q&A

### 1 수출 시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할 때, 식약청(BPOM)이 검사 시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생물과 중금속 기준이다. 식품안전평가이사회에서 관리감독 하는 부분으로 법규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적정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 또는 중금속이 검출될 시 수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출을 위해 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등록하는 업체들은 관련 기준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 식약청은 2010년 2월 기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수입 유제품, 비스킷, 과자에 대해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sup>33)</sup>
- 2011년에 통조림 식품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등 자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특별히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sup>34)</sup>

Q: 수입식품 중에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는가?

A: 모든 수입제품들이 가장 많이 겪는 애로점이 라벨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 앞면과 뒷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 각각 다 정해져있다. 그 사항들이 미비할 경우, 보완할 자료가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반송하는 경우도 있고 재조치를 취해서 통관하는 경우도 있다.

33) 출처: 인도네시아 식품음료협회(Gabungan Pengusaha Makanan dan Minuman Indonesia, GAPMMI) 홈페이지의 수입식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식약청 보도자료. No.KH.00.01.1.0802  
<http://gapmmi.or.id/?pilih=lihat&id=4>

34) 출처: Detikfinance, 기사 제목: Barang Non SNI dan Tak Miliki Manual Bahasa Indonesia Diawasi Ketat, 2011년 7월 17일

## 2 첨가물 관련 Q&A

Q: 인도네시아에서는 생소한 식품이 수입될 경우 어떻게 하나?

A: 식약청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 해당 식품회사에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식약청 제3국인 식품안전 및 유해물질 관리국(Deputy of Food Safety and Hazardous Substance Control) 산하의 이사회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인데, 신선식품 또는 가공식품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가공식품은 식약청에서 관리하므로, 해당 가공식품이 미생물, 중금속 등의 기준에 맞으면 최초 수입 식품이라도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 부 록 1

조사대상 가공식품의 선정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태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사업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안)

©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 방법

1. 2012년 수출액 : 2012년 aT KATI
2. 수요조사 설문결과 : 식품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회의 결과(2013.1.24)
3. aT KATI 해외시장정보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중 수출 상위 품목
4. 선정결과 : 총 14개 가공식품, 37개 식품유형

번호	가공식품	품목코드	식품유형	수출액(\$) (2012년)	수요조사 설문결과 (건수)	인도네시아 수출상위 품목	태국 수출상위 품목	네덜란드 수출상위 품목	10년도 조사대상	11년도 조사대상	최종선정(안)
1	과자류	001-001	01) 과자	195,377,619	6	○		○	○	○	○
		001-002	02) 캔디	19,784,343	4				○		○
		001-003	03) 추잉껌	24,380,035	3				○		○
		001-004	04) 병과류	6,701,844	3					○	○
2	빵 또는 떡류	002-001	01) 빵류	36,319,086	2	○	○	○	○	○	○
		002-002	02) 떡류		2						○
		002-003	03) 만두류		3				○		○
3	코코아가공품 류 또는 초콜릿류	003-001	01)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버터·분말 등)	30,754,226	2	○	○				○
		003-002	02) 초콜릿류(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 밀크초콜릿 등)	23,394,484	2	○	○		○		○
4	잼류	004-001	01) 잼		3						
		004-002	02) 마멀레이드								
		004-003	03) 기타 잼류		2						
5	설탕	005-001	01) 백설탕	31,499							
		005-002	02) 갈색설탕								
		005-003	03) 기타설탕								
6	포도당	006-001	01) 액상포도당	4,304,472							
		006-002	02) 분말-결정포도당								
7	과당	007-001	01) 액상과당	22,870,867							
		007-002	02) 결정과당								
		007-003	03) 기타과당								
8	엿류	008-001	01) 물엿		4						
		008-002	02) 기타엿		1						
		008-003	03) 텍스트린								
9	당시럽류	009-001	01) 당시럽류	866,931							
10	올리고당류	010-001	01) 프락토올리고당								
		010-002	02) 이소말토올리고당								
		010-003	03) 갈락토올리고당								
		010-004	04) 말토올리고당								
		010-005	05) 자일로올리고당								
		010-006	06) 겐티오올리고당								
		010-007	07) 기타올리고당		1						
11	식육 또는 알 가공품	011-001	01) 식육 또는 알제품								
		011-002	02) 식육가공품(햄, 베이컨)								
		011-003	03) 알가공품(계란, 새알 가공품)								
12	어육가공품	012-001	01) 어육		1						
		012-002	02) 어육소시지								
		012-003	03) 어육반제품								
		012-004	04) 어육살								
		012-005	05) 연육								
		012-006	06) 기타 어육가공품								
13	두부류 또는 묵류	013-001	01) 두부								
		013-002	02) 전두부								
		013-003	03) 유바								
		013-004	04) 가공두부								
		013-005	05) 묵류								
		014-001	01) 콩기름(대두유)	44,310,473	4	○				○	○
		014-002	02) 옥수수기름(옥배유)	14,789,195	4						
		014-003	03)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014-004	04) 미강유(현미유)								○
		014-005	05) 참기름	881,348	2					○	○
		014-006	06) 들기름	161,718	2					○	○
		014-007	07) 홍화유(시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014-008	08) 해바라기유	175,254							○
		014-009	09) 목화씨기름(면실유)	248,869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번호	가공식품	품목코드	식품유형	수출액(\$) (2012년)	수요조사 설문결과 (건수)	인도네시아 수출상위 품목	태국 수출상위 품목	네덜란드 수출상위 품목	10년도 조사대상	11년도 조사대상	최종선정(안)		
14	식용유지류	014-010	10) 땅콩기름(박화생유)										
		014-011	11) 올리브유	863,130	1					○			
		014-012	12) 팜유류	464,164									
		014-013	13) 야자유										
		014-014	14) 혼합식용유										
		014-015	15) 가공유지		2								
		014-016	16) 쇼트닝	15,281,447	2								
		014-017	17) 마가린류	44,286	1								
		014-018	18) 고추씨기름		2								
		014-019	19) 향미유										
014-020	20) 기타 식용유지	6,192,081											
15	면류	015-001	01) 국수	25,872,185	3	○		○	○	○	○		
		015-002	02) 냉면	7,417,300	1					○			
		015-003	03) 당면	4,937,618	2					○	○		
		015-004	04) 유탕면류	206,228,752	1					○	○		
		015-005	05) 파스타류	35,445,271	1					○			
16	다류	016-001	01) 칩출차						○		○		
		016-002	02) 액상차								○		
		016-003	03) 고형차						○		○		
17	커피	017-001	01) 볶은커피	13,471,187							○		
		017-002	02) 인스턴트커피						○	○			
		017-003	03) 조제커피						○	○	○		
		017-004	04) 액상커피						○	○	○		
18	음료류	018-001	01) 과일 채소음료(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3,692,288	1	○	○	○	○	○	○		
		018-002	02) 탄산음료류(탄산음료, 탄산수)						○				
		018-003	03) 두유류(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유)		2						○	○	
		018-004	04)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018-005	05) 인삼·홍삼음료	14,636,224	1						○	○	○
		018-006	06)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151,613,680							○		
19	특수용도식품	019-001	01) 영양용 조제식	2,540,566	2				○				
		019-002	02) 성장기용 조제식		1				○				
		019-003	03) 영양아용 곡류조제식		1								
		019-004	04) 기타 영·유아식		2								
		019-005	05) 특수의료용도동식품(당뇨/신장질환환자용식품 등)		1								
		019-006	0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								
		019-007	07) 임신·수유부용 식품										
20	장류	020-001	01) 메주	29,148				○			○		
		020-002	02) 한식간장								○		
		020-003	03) 양조간장		1					○	○	○	
		020-004	04) 산분해간장										
		020-005	05) 효소분해간장										
		020-006	06) 혼합간장								○		
		020-007	07) 한식된장										
		020-008	08) 된장	6,230,836	1					○	○	○	
		020-009	09) 조미된장										
		020-010	10) 고추장		2					○	○	○	
		020-011	11) 조미고추장	23,706,997						○			
		020-012	12) 춘장	1,202,627									
		020-013	13) 청국장									○	
		020-014	14) 혼합장										
		020-015	15) 기타장류	5,526,631									
21	조미식품	021-001	01) 식초(발효식품, 합성식초, 기타식초)	8,867,200	2								
		021-002	02) 소스류		4	○	○			○	○		
		021-003	03) 토마토케첩		2								
		021-004	04) 카레(카레분, 카레)	4,916,979	2								
		021-005	05)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021-006	06) 향신료가공품(천연향신료)		1								
		021-007	07) 복합조미식품		2						○		
22	드레싱	022-001	01) 드레싱		1								
		022-002	02) 마요네즈	37,786,033	1								

번호	가공식품	품목코드	식품유형	수출액(\$) (2012년)	수요조사 설문결과 (건수)	인도네시아 수출상위 품목	태국 수출상위 품목	네덜란드 수출상위 품목	10년도 조사대상	11년도 조사대상	최종선정(안)	
23	김치류	023-001	01) 김치속									
		023-002	02) 배추김치		1				○	○	○	
		023-003	03) 기타김치							○		
24	젓갈류	024-001	01) 젓갈						○	○		
		024-002	02) 양념젓갈									
		024-003	03) 액젓		1				○	○		
		024-004	04) 조미액젓									
		024-005	05) 식혜류									
25	절임식품	025-001	01) 절임류(단무지 등)		2				○	○		
		025-002	02) 당절임		1							
26	조림식품	026-001	01) 농산물조림		1							
		026-002	02) 수산물조림		2							
		026-003	03) 축산물조림									
27	주류	027-001	01) 탁주	36,893,273						○	○	
		027-002	02) 약주	1,462,586								
		027-003	03) 청주	1,090,996								
		027-004	04) 맥주	67,813,719							○	
		027-005	05) 과실주	3,089,944					○			
		027-006	06) 소주	126,812,773			○		○	○	○	
		027-007	07) 위스키	9,397,965								
		027-008	08) 브랜디	1,784,638								
		027-009	09) 일반증류주									
		027-010	10) 리큐르	1,339,906								
		027-011	11) 기타주류									
28	건포류	028-001	01) 조미건어포류									
		028-002	02) 건어포류									
		028-003	03) 기타 건포류									
29	기타식품류	029-001	01)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땅콩버터, 견과류가공품)									
		029-002	02) 컵술류		1							
		029-003	03) 전분	26,893,555								
		029-004	04) 과채가공품류									
		029-005	05) 조미김	231,011,970	2		○	○	○	○	○	
		029-006	06) 튀김식품									
		029-007	07) 벌꿀	4,956,810	1	○						
		029-008	08) 모조치즈									
		029-009	09) 식물성크림				○				○	
		029-010	10) 추출가공식품(과채가공품, 과채-테이스트)									
		029-011	11) 팥콩용육수수가공품									
		029-012	12) 식염(천일염,채제소금,태운 용융소금,정제소금,가공소)	8,977,226						○	○	○
		029-013	13) 밀가루(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기타 밀가루)				○					
		029-014	14) 편쌀									
		029-015	15) 생식류									
		029-016	16) 시리얼류									
		029-017	17) 얼음류									
		029-018	18)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1						○
30	유가공품	030-001	1) 우유류	4,050,495	3				○			
		030-002	2) 가공우유	12,360,842	3				○	○	○	
		030-003	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030-004	4) 발효유						○			
		030-005	5) 버터						○			
		030-006	6) 치즈						○			
		030-007	7) 분유		2				○			
		030-008	8) 아이스크림	32,931,931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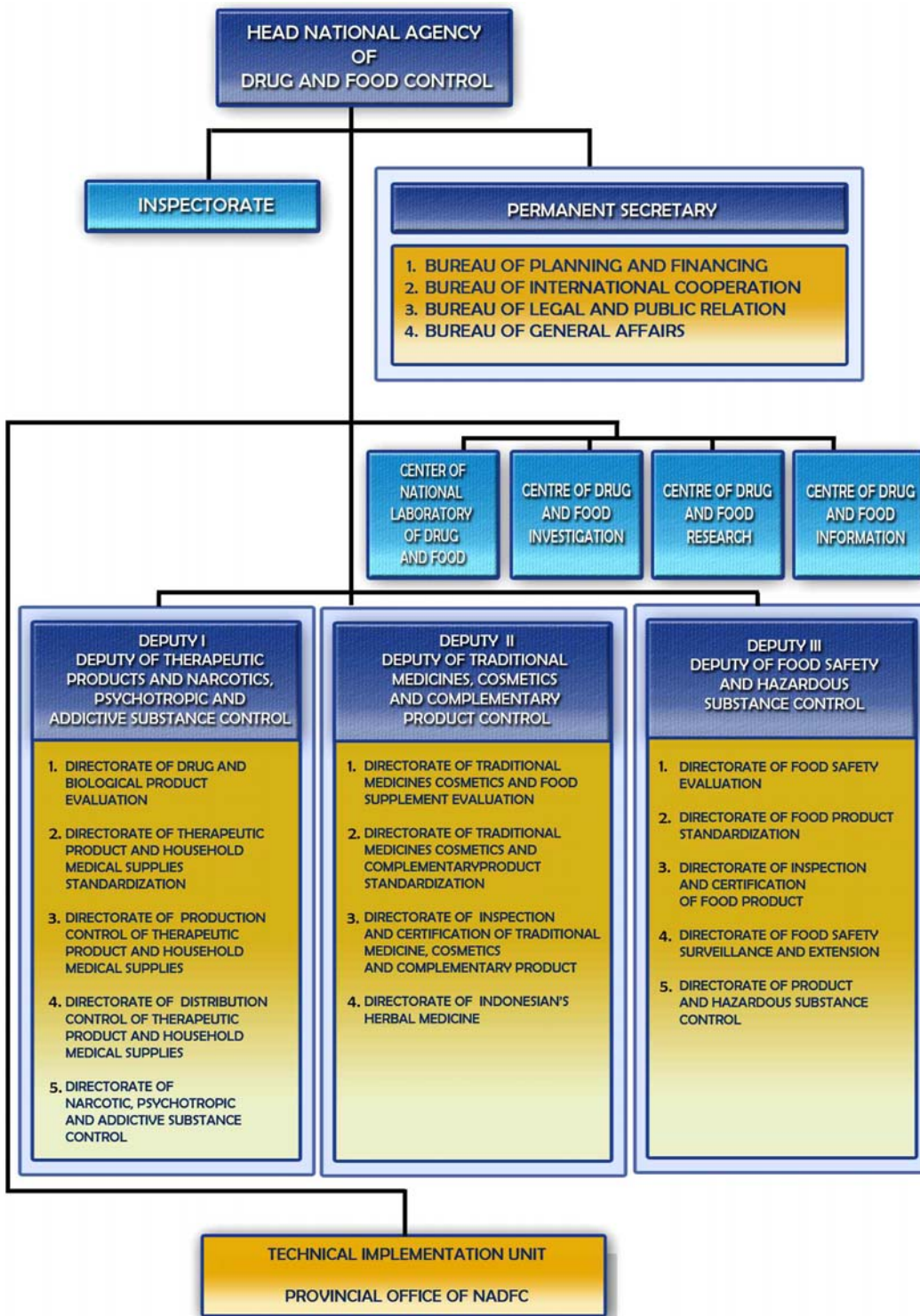


## 부 록 2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도









## 부 록 3

가공식품등록 규정







가공식품등록 규정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약청

**가공식품 등록**

No. HK.03.1.5.12.11.09955/2011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약청장

규정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 의약품 감독청장

식품 안전, 품질, 영양에 대한 No.28/2004 정부규정 제 42조의 문장 (5), (6)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등록에 대한 식약청장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1. No.7/1996 식품법 (No.99/1996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3656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2. No.8/1999 소비자보호법 (No.42/1999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3821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3. No.36/2009 보건법 (No.144/2009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5063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4. 식품 라벨과 광고에 대한 No.69/1999 정부규정 (No.131/1999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3867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5. 식품 안전, 품질, 영양에 대한 No.28/2004 정부규정 (No.107/2004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4424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6. 비부서 정부기관의 지위, 의무, 권한, 조직 구조에 대한 No.103/2001 대통령령은 이미 몇 차례 개정되어 최근에 No.64/2005 대통령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7. 비부서 정부기관의 조직 구성 단위와 업무 지위 I 에 대한 No.110/2001 대통령령은 이미 몇 차례 개정되어, 최근에 No.52/2005 대통령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8. 식약청 조직 및 관리에 대한 No.02001/SK/KBPOM/2001 식약청장령은 No. HK.00.05.21.4231/2004 식약청장령으로 이미 개정되었다;

가공식품 등록에 대한 식약청장 규정.

## 제 I 장 일반 규정

### 제 1조

이 규정에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식품이란 생물 및 수자원에서 파생된 모든 것으로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위한 식품과 음료로서, 식품첨가물, 식품 원재료, 식품 또는 음료의 전처리, 가공 그리고/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재료를 포함한다.
2. 가공식품이란 첨가물과 함께 또는 첨가물 없이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한 결과물인 식품과 음료이며, 특정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식품을 포함한다.
3. 식품첨가물은 이후부터는 BTP로 줄여서 부르며, 이는 식품의 특성이나 형태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이다.
4. 등록이란 등록승인서를 받기 위한 가공식품의 안전, 품질, 영양 평가/시험 절차이다.
5. 등록승인서란 가공식품의 유통에서 식약청장에 의해 발행되는 가공식품 평가 결과 승인이다.
6. 라벨이란 그림, 글씨, 그 둘의 결합, 또는 다른 형태로 된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식품 포장에 동봉하거나, 식품 포장 속에 넣거나, 식품 포장에 부착하거나, 또는 식품포장의 일부이다.
7. 회사란 유효한 법령규정의 결정에 알맞은 사업면허를 이미 획득한 가공식품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또는 유통업자이다.
8. 제조자란 유통을 위해 가공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형태를 바꾸고, 보존하고, 재포장하는 개인 그리고/또는 사업체이다.
9. 수입자란 가공식품을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여오는 개인 그리고/또는 사업체이다.
10. 유통업자(distributor)란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가공식품을 유통하는 개인 그리고/또는 사업체이다.
11. 등록자란 등록승인서를 받는 단계에서 가공식품 등록을 실시하는 회사 또는 회사에게 권한을 부여받아 등록을 실시하는 집단이다.

12. 라이선스 가공식품이란 라이선스를 근거로 생산하는 가공식품이다.
13. 재포장 가공식품이란 가공식품을 재포장을 해서 더 작거나 더 큰 포장으로 바꾼 가공식품이다.
14. 계약 생산 가공식품이란 계약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수령자가 생산하는 식품이다.
15. 라이선스 공급자란 국내외의 제작자 또는 제조법 및 기술 연구 기관으로 등록을 제출하는 회사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16. 계약 수신자란 계약에 기초해 가공식품 제조일을 (공급)받는 가공식품분야의 사업체로, 생산되는 가공식품 종류에 알맞은 산업허가를 소유한다.
17. 계약 공급자란 식품 제조분야의 사업면허를 보유한 개인 그리고/또는 사업체로, 계약에 의거해 다른 집단의 생산 시설을 사용한다.
18. 식품등록번호란 식품유통에서 가공식품에 주어지는 번호로 등록승인서에 포함된다.
19. 등록과 평가 비용이란 가공식품 평가/시험에서 법령규정 결정에 적절하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20. 사무소장이란 식약청에서 기술 감독 부서장과 같은(부서장을 대표하는) 식약청 사무소/식약청 대사무소장이다.
21. 이사란 식품 안전 평가 이사이다.
22. 청장이란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 의약품 감독청(식약청)장이다.

### 제 2조

- (1) 국내에 생산되거나 유통을 위해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각 소매포장 가공식품은 등록승인서를 보유할 의무를 가진다.
- (2) (1)에서 말하는 등록승인서는 식약청장에 의해 발행된다.
- (3) (1)에서 말하는 소매포장은 거래를 위해 더 작은 포장이 되도록 재포장을 위해 개봉할 수 없는 식품 최종포장이다.

### 제 3조

- (1) 제 2조의 (1)과 (2)에서 말하는 규정에서 예외인 가공식품은 다음과 같다:
  - a. 가정산업으로 생산되는 것;
  - b. 상온에서 7일 보다 적은 보존기간을 갖는 경우;
  - c. 필요에 따라 소량으로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경우:
    1. 등록요청 단계의 샘플;
    2. 연구;
    3. 개인 소비

- d. 원료로 추가 사용되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않는 경우.
- (2) (1)의 c에서 말하는 소량이란 수입추천서 제출 시에 수입자 필요 요청에 의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일치하여 관련된 목적에 필요한 양을 일컫는다.
- (3) (1)의 a에서 말하는 가정용산업이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식품 종류에 대한 추가 규정은 식약청장에 의해 결정된다.

#### 제 4조

제 3조 (1)의 a에서 말하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가정용 식품산업은 법령규정 결정에 적합하게 가정산업용 식품생산 인증서를 보유한다.

### 제 II장

#### 기준

##### 1부

#### 가공식품 기준

#### 제 5조

- (1) 다음 가공식품에 대하여 구별한다:
  - a. 자체생산 가공식품;
  - b. 라이선스 가공식품;
  - c. 재포장 가공식품;
  - d. 계약에 근거해 생산한 가공식품.
- (2) (1)의 b, c, d에서 말하는 가공식품 등록은 약정서 또는 동일서류 형태의 지원 데이터를 동반해야 한다.

#### 제 6조

- (1) 등록될 가공식품은 안전, 품질, 영양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 (1)에서 말하는 안전, 품질, 영양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안전 조건/매개 변수, 즉, 미생물오염, 물리적오염, 화학오염 최대한도;
  - b. 품질 조건, 즉, 유효한 조건과 기준에 적합한 품질 조건의 충족과 국내생산 가공식품으로서 우수식품 생산방법 조건의 충족, 또는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가공식품으로서 우수식품 유통방법 조건의 충족; 그리고
  - c. 영양 조건은 규정된 조건과 일치함.

(3) 이외에도 (1)과 (2)에서 말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라벨 조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 제 7조

- (1) 법령규정 결정에 규정/정리되지 않은 원료, 식품첨가물, 다른 재료를 포함하고 있고 또는 주장을 포함하는 가공식품에 있어서, 우선/처음부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2) (1)에서 말하는 조사는 법령규정 결정에 알맞게 실행된다.

## 2부

### 회사의 기준과 책임

### 제 8조

- (1) 제 5조 (1)의 a, b, c에서 말하는 국내생산 가공식품 등록은 제조자에 의해 제출된다.
- (2) 제 5조 (1)의 d에서 말하는 국내생산 가공식품 등록은 계약 공급자에 의해 제출된다.
- (3) (1)에서 말하는 제조자와 계약수령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법령규정에 알맞게 산업허가를 소유한다; 그리고
  - b. 등록하는 식품 종류를 위한 우수식품 생산방법 조건을 충족한다.

### 제 9조

- (1)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가공식품의 등록은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에 의해 제출된다.
- (2) (1)의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식품 수입 또는 유통 분야에서 허가를 소유한다;
  - b. 외국의 원회사로부터의 임명서를 소유한다; 그리고
  - c. 법령규정 결정에 적합하게 우수식품 유통방법 조건을 충족한다.
- (3)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라이선스 가공식품, 채포장 가공식품, 또는 외국에서 계약에 기초해 생산하는 식품의 가공식품 등록은 약정서 또는 동일서류 형태의 지원 데이터를 동반해야 한다.

### 제 10조

제 8조 (3)의 b에서 말하는 우수식품 생산방법 조건의 충족과 제 9조 (2)의 c에서 말하는 우수식품 유통방법 조건의 충족은, 지역 (식약청)사무소 임원의 감사/검사/심사 결과에 대한 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다.

제 11조

- (1) 가공식품 등록을 실시하기 전에, 등록자는 (식약청)지역사무소장에게 생산 설비와 유통 시설 검사 요청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 (2) (1)에서 말하는 생산설비 감사는 우수식품 생산방법 방침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 (3) (1)에서 말하는 유통시설 감사는 우수식품 유통방법 방침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 (4) (1)에서 말하는 생산설비 또는 유통시설 감사의 결과는 사무소장이, 이사와 식품 검사 인증 이사에게 보내는 사본과 함께, 등록자에게 제공한다.

제 12조

- (1) 제 10조의 등록 단계에서의 시설 감사는 매 등록 시에 그리고 같은 가공식품 종류에 대하여 1회만 실시한다.
- (2) 등록되는 가공식품의 종류가 (1)에서 말하는 가공식품의 종류와 다른 경우에, 시설 재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 3부

등록자의 기준과 책임

제 13조

- (1) 가공식품 등록실시는 등록자에 의해 실시된다.
- (2) (1)에서 말하는 등록자는 등록하는 가공식품의 기준과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제 14조

등록권한을 부여받은 측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엔:

- a. 회사는 식약청장에게 권한 수령자를 보고해야 한다.
- b. 가공식품 등록승인은 등록을 제출한 회사를 위해 발행된다.

제 15조

- (1) 등록자는 가공식품 등록 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정확성, 효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
- (2) (1)의 등록 시에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서류나 위조서류로 밝혀질 경우, 등록요청은 거절당하며 관련회사는 거절서류 날짜 이래 3년 동안 가공식품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 III장 가공식품 등록 조건

### 1부 일반 등록

#### 제 16조

- (1) 등록조건은 행정조건과 기술조건을 포함한다.
- (2) (1)에서 말하는 등록조건은 이 규정에서 분리되지 않은 부분인 첨부 1에 포함되어 있다.

### 2부 가공식품 데이터 변경

#### 제 17조

- (1) 회사는 이미 등록승인서를 보유한 가공식품에 대해 데이터 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 (2) (1)에서 말하는 데이터의 변경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1)에서 말하는 가공식품 데이터변경은 식품등록번호의 변경 그리고/또는 등록과 평가 비용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4) 가공식품 데이터변경이 식품등록번호의 변경 그리고/또는 평가비용 변경을 야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록자는 신규 등록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 제 18조

- (1) 제 17조의 (1)에서 말하는 변경은 다음과 같다.
  - a. 회사 이름의 변경;
  - b. 수입자명 그리고/또는 유통업자명의 변경;
  - c. 영양가 정보의 포함 그리고/또는 변경
  - d. 주장의 변경 그리고/또는 추가
  - e. 상품명 변경;
  - f. 포장 디자인의 변경;
  - g. 순중량/실함량의 변경 그리고/또는 추가
  - h. 구성의 변경; 그리고/또는
  - i. 특정 기간의 선전 필요성을 위한 변경.
- (2) (1)의 변경을 위한 서류 조건과 구비본은 이 규정의 첨부 2에 포함되어 있다.



### 3부

#### 가공식품 라벨 조건

##### 제 19조

제 6조의 (3)에서 말하는 라벨조건은 이 규정에서 분리되지 않은 첨부 3에 포함된 가공식품 라벨조건과 일치한다.

### 제 IV장

#### 가공식품 등록 절차

### 1부

#### 등록 제출

##### 제 20조

다음 사항에 따라 별도 가공식품등록을 제출 한다:

- a. 라벨 디자인;
- b. 포장의 종류;
- c. 구성; 그리고/또는
- d. 생산업체 명 그리고/또는 주소

##### 제 21조

등록요청은 등록양식을 작성하고 등록 구비서류를 완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한다.

##### 제 22조

등록서류는 권한자에 의해 평가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서류이다.

### 2부

#### 검사와 평가/시험

##### 제 23조

- (1) 제 21조에서 말하는 등록서류에 대해서, 제 6조에서 말하는 기준과 조건에 알맞게 검사와 시험을 실시한다.
- (2) 등록서류가 정확하지 않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문가 팀과 토론/조사를 실시한다.

3부  
결론 부여

제 24조

제 23조의 시험결과는 다음의 사항으로 나뉜다.

- a. 등록승인서; 또는
- b. 등록거절.

제 25조

- (1) 제 24조의 a에서 말하는 등록승인서 결정은 식약청장에 의해 결정된다.
- (2) 식약청장은 임명된 다른 공무원에게 등록승인서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6조

- (1) 제 25조의 (1)에서의 등록승인서는 이미 승인된 라벨 계획을 포함한다.
- (2) 가공식품을 위한 등록승인서는 식품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행된다.

제 27조

- (1) 제 26조의 (2)에서 말하는 국내생산 가공식품의 식품등록번호는 "BPOM RI MD" 글자와 뒤에 자리숫자가 따라붙는 형태이다.
- (2) 제 26조의 (2)에서 말하는 외국생산 가공식품의 식품등록번호는 "BPOM RI ML" 글자와 뒤에 자리숫자가 따라붙는 형태이다.
- (3) (1)과 (2)에서 말하는 자리숫자는 회사, 제작자 위치, 제품의 일련번호, 포장의 종류, 식품 종류를 포함하는 가공식품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다.
- (4) 식품등록번호는 소비자가 보고 읽기 쉬운 형태로 라벨에 포함할 의무가 있다.

제 28조

- (1) 제 24조 b에서 말하는 등록 거절 결정의 경우에 있어서, 거절 이유와 함께 거절서류가 발행될 것이다.
- (2) 안전, 품질, 영양의 이유 때문에 등록이 거절된 경우에 있어서, 재등록은 최근의 지원 데이터의 구비 후에만 제출할 수 있다.

제 29조

가공식품 등록절차는 추가로 개정될 것이다.

제 V장  
비용

제 30조

- (1) 가공식품 등록요청에 대하여, 등록승인서를 받거나 가공식품 데이터 변경을 하는 단계에서 법령규정 결정에 적합하게 비세금 국가수령액으로서의 비용이 부과된다.
- (2) (1)에서 말하는 요청이 거절된 경우, 이미 지불한 비용은 환불 할 수 없다.

제 VI장  
의견 경청

제 31조

- (1) 가공식품 안전 기준에 의한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식약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경청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 (2) (1)에서 말하는 의견경청 요청은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또는 갖추어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데이터와 정당화/변명을 함께 구비해야 한다.

제 VII장  
재고

제 32조

- (1) 등록 거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식약청장에게 서면으로 재고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 (2) 재고요청은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또는 갖추어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데이터와 정당화/변명을 함께 구비해야 한다.
- (3) 재고요청은 의견경청의 형태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 VIII장  
등록승인서 유효 기간

제 33조

- (1) 등록승인서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재등록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 (2)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등록증인서는 효력이 없다.
- (3) 등록증인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종료된 가공식품은 유통을 금지한다.
- (4) (1)에서 말하는 규정의 예외로, 제 5조 (1) 내 문자 b, c, d에서 말하는 가공식품의 등록증인서는 그 유효기간을 약정서 또는 동일서류의 유효기간에 적합하게 (시행)한다.

## 제 IX장

### 재등록

#### 제 34조

가공식품 재등록은 효력 있는 등록증인서의 유효기간 만기에서 최장 6개월 이전부터 할 수 있다.

## 제 X장

### 등록증인의 이행

#### 제 35조

- (1) 유통되는 가공식품은 등록 시에 승인된 안전, 품질, 영양 기준과 라벨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 (2)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라벨은 등록 시에 승인된 라벨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 제 36조

- (1) 등록증인서를 이미 보유한 가공식품의 인도네시아 영토로의 수입은 다음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 a. 등록증인서를 보유한 회사; 또는
  - b. 법령규정의 결정에 적합하며 a에서 말하는 회사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수입자로서 허가를 보유한 다른 측,
- (2) (1)에서 말하는 가공식품이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올 때, 라벨은 반드시 제 35조의 (2)에서 말하는 규정을 이미 충족해야 한다,

#### 제 37조

- (1) 회사는, 등록 시 승인된 정보에 적합하게, 안전, 품질, 영양과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라벨에 대한 책임이 있다.
- (2) (1)에서 말하는 자체 생산 가공식품, 라이선스 가공식품, 제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 측에게 있다.

- (3) (1)에서 말하는 계약에 기초해 국내 생산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책임은 계약 공급자 측에게 있다
- (4) (1)에서 말하는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가공식품에 대한 책임은 등록을 하는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 측에게 있다.

## 제 XI장

### 재시험

#### 제 38조

- (1) 이미 등록승인서를 받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청장의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 (2) (1)에서 말하는 재시험은 가공식품 안전, 품질, 영양, 그리고 라벨과 관련된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 (3) 재시험 결과는 서면으로 등록승인서 보유 회사에게 송부한다.
- (4) 등록승인서 보유 회사는 (3)에서 말하는 재시험 결과에 적합한 행동/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제 XII장

### 행정 제재

#### 제 39조

- (1) 이 규정의 결정에 대한 위반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행정 제재를 당할 수 있다:
  - a. 서면 경고;
  - b. 일시 유통 제한;
  - c. 임시 활동 정지; 또는
  - d. 등록승인서의 폐지.
- (2) (1)의 d에서 말하는 행정 제재는 다음의 경우에 근거 할 수 있다:
  - a. 재시험 결과 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 b. 유통 중인 가공식품이 등록승인서 또는 데이터 변경 승인을 받을 때 승인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 c. 유통 중인 가공식품의 검사 그리고/또는 시험 결과가 제 7조에서 말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d. 가공식품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법령규정 결정을 위반한 경우;
  - e. 법원의 결정이 가공식품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효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 f. 회사가 식품 생산 그리고/또는 유통 분야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
  - g. 등록승인서 보유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외국의 원공장으로부터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 h. 생산, 수입자 허가, 그리고/또한 유통업자 허가를 위한 식품 산업 허가가 폐지된 경우;
  - i. 수입자 위치가 등록동의서 또는 데이터 변경 승인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j. 생산 시설의 위치가 등록동의서 또는 데이터 변경 승인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또는
  - k. 등록승인서 보유자의 요청에 대하여.
- (3) 회사는 등록승인서가 이미 폐지 당했더라도 아직 유통 중인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 제 XIII장

#### 경과 규정

#### 제 40조

- (1) 식품등록에 대한 No.382/Menkes/Per/VI/1989 보건장관 규정에 기초해 이미 발급된 식품등록승인서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시행된 날짜 이후 최대 1년 이내에 이 규정과 일치시킬 의무가 있다.
-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제출한 가공식품 등록 신청에 있어서는, 명확히, 식품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No. HK.00.05.1.2569/2004 식약청장령에 기초해 처리한다.

### 제 XIV장

#### 맺음 규정

#### 제 41조

이 규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할 때:

- 1. 식품 라벨링 일반 지침에 대한 No. HK.00.05.52.4321/2003 식약청장령; 그리고
- 2. 식품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No. HK.00.05.1.2569/2004 식약청장령은;  
폐지하여 시행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제 42조

이 규정은 시행된 날짜 이후 효력을 갖는다.

이 규정법령이 지시하는 것을 공지 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행물에 게재함.

다음 장소에서 결정 되었다 : 자카르타

다음 날짜에 : 2011년 12월 5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약청장,

ttd.

KUSTANTINAH

2011년 12월 5일에  
자카르타에서 법제화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인권부 장관

ttd.

AMIR SYAMSUDDIN

No.810/2011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행물

## 부 록 4

가공식품등록절차 규정







## 가공식품등록절차 규정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약청

### 가공식품 등록 절차에 대한

No. HK.03.1.5.12.11.09956/2011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약청장

규정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 의약품 감독청장

식품 안전, 품질, 영양에 대한 No.28/2004 정부규정 제 42조의 문장 (5), (6)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등록 절차에 대한 식약청장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1. No.7/1996 식품법 (No.99/1996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3656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2. No.8/1999 소비자보호법 (No.42/1999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3821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3. No.36/2009 보건법 (No.144/2009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5063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4. 식품 라벨과 광고에 대한 No.69/1999 정부규정 (No.131/1999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3867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5. 식품 안전, 품질, 영양에 대한 No.28/2004 정부규정 (No.107/2004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4424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6. 비부서 정부기관의 지위, 의무, 권한, 조직 구조에 대한 No.103/2001 대통령령은 이미 몇 차례 개정되어 최근에 No.64/2005 대통령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7. 비부서 정부기관의 조직 구성 단위와 업무 지위 I 에 대한 No.110/2001 대통령령은 이미 몇 차례 개정되어, 최근에 No.52/2005 대통령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8. 식약청 조직 및 관리에 대한 No.02001/SK/KBPOM/2001 식약청장령은 No. HK.00.05.21.4231/2004 식약청장령으로 이미 개정되었다;
9. 가공식품등록에 대한 No. HK.03.1.5.12.11.09955/2011 식약청장규정.

결정한다:

확정한다 : 가공식품 등록 절차에 대한 식약청장 규정.

## 제 I 장 일반 규정

### 제 1 조

이 규정에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식품이란 생물 및 수자원에서 파생된 모든 것으로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위한 식품과 음료로서 식품첨가물, 식품 원재료, 식품 또는 음료의 전처리, 가공 그리고/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재료를 포함한다.
2. 가공식품이란 첨가물과 함께 또는 첨가물 없이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한 결과물인 식품과 음료이며, 특정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 방사선식품을 포함한다.
3. 식품첨가물(BTP)은 식품의 특성이나 형태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이다.
4. 등록이란 등록승인서를 받기 위한 가공식품의 안전, 품질, 영양 평가/시험 절차이다.
5. 등록승인서란 가공식품의 유통에서 식약청장에 의해 발행되는 가공식품 평가 결과 승인이다.
6. 라벨이란 그림, 글씨, 그 둘의 결합, 또는 다른 형태로 된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식품 포장에 동봉하거나, 식품 포장 속에 넣거나, 식품 포장에 부착하거나, 또는 식품포장의 일부이다.
7. 회사란 유효한 법령규정의 결정에 알맞은 사업면허를 이미 획득한 가공식품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또는 유통업자이다.
8. 등록자란 등록승인서를 받는 단계에서 가공식품 등록을 실시하는 회사 또는 회사에게 권한을 부여받아 등록을 실시하는 집단이다.
9. 등록과 평가 비용이란 가공식품 평가/시험 맥락에서 법령규정 결정에 적절하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10. 이사란 식품 안전 평가 이사이다.
11. 청장이란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 의약품 감독청(식약청)장이다.
12. 일(날)이란 근무일을 말한다.

## 제 II 장 가공식품등록 절차

### 1부 일반 등록

#### 제 2조

- (1) 등록요청은 등록양식을 기입하고 등록서류를 완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한다.
- (2) (1)에서 말하는 등록양식의 예시는 이 규정에서 분리되지 않은 부분인 첨부 1에 게재함.

#### 제 3조

- (1) 가공식품 등록양식 기입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한다.
- (2) 등록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 (3) 등록 양식과 서류는 등록양식과 서류 기입 안내에 적합하게 완전하고 올바르게 기입한다.
- (4) (3)에서 말하는 등록양식과 서류 기입 안내는 이 규정에서 분리되지 않은 부분인 첨부 2에 게재함.

#### 제 4조

등록자는 제 2조에서 말하는 요청을 (원본과 사본) 2장으로 등록과 평가 비용 확정과 함께 서류검사 실시를 위해 청장 또는 이사에게 제출한다.

#### 제 5조

제 4조의 서류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추가시험을 위해 받음;
- b. 완성을 위해 돌려줌; 또는
- c. 거절.

#### 제 6조

- (1) 서류검사 결과 추가 시험을 위해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며, 등록자에게는 은행 지불서가 부여된다.
- (2) (1)에서 말하는 은행 지불서는 법령규정 결정에 일치하여 비세금 국가수령액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등록과 평가 비용을 포함한다.

제 7조

- (1) 은행에서의 등록과 평가 비용 지불 증명과 함께 이미 구비 완료한 등록요청은, 추가 시험 실시를 위해 청장 또는 이사에게 제출한다.
- (2) (1)에서 말하는 등록요청의 제출은 제 6조의 (1)에서 말하는 등록자에게 은행 지불 소개서가 부여된 지 최대 1개월 내로 한다.

제 8조

제 7조에서 말하는 추가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등록승인서 발행; 또는
- b. 등록거절서 발행

제 9조

- (1) 제 8조에서 말하는 등록승인서 또는 등록거절서는 다음에 대해서이다:
  - a. 특정가공식품은 최장 150일 이내에 발행;
  - b. 기능성 식품/주장하는 식품, 허브가 들은 식품은 최장 120일 이내에 발행;
  - c. 방사선식품, 유전자변형식품, 향료식품첨가물, 유기농식품, 우유와 유가공품, 고기와 육가공품, 생선과 어육가공품, 알콜음료는 최장 100일 이내에 발행;
  - d. 향료 이외 식품첨가물과 다른 식품은 최장 60일 이내에 발행.
- (2) (1)의 d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이란 a, b, c에서 말하는 것 이외의 식품종류와 향료 이외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 (3) (1)에서 말하는 기간은 제 7조에서 말하는 등록양식 수령 이래로 계산한다.
- (4) 추가시험결과가 추가 데이터나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1)의 기간 계산은 임시로 중단되고 추가 데이터 요청서 날짜 이후부터 계산한다.
- (5) (4)에서 의미하는 임시 중단됐던 기간 계산은 데이터 추가 완료서 수령 날짜 이래로 계속된다.

제 10조

- (1) 추가시험결과가 제 9조의 (4)의 추가 데이터 그리고/또는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분리되지 않은 부분인 첨부 3에 게재된 것과 같은 서류 예시와 일치하는 데이터 추가 요청서가 발행된다.
- (2) (1)에서 말하는 데이터 추가 요청서 날짜 이후 최장 50일에, 등록자는 추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 (3) (2)에서 말하는 50일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등록자는 추가 데이터 완성 기간의 연장 요청을, 25일의 기간에 대해 최대 1번까지, 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4) (2)에서 말하는 50일의 기간 내에 또는 문장 (3)에서 말하는 25일의 기간 내에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자는 등록거절서를 받으며 요청파일은 폐기될 것이다.
- (5) 만약 등록자가 제출한 완성 데이터가 (1)에서 말하는 데이터추가 요청서에 일치하여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록자는 이 규정에서 분리되지 않은 부분인 첨부 4에 기재된 서류 예시에 적합한 추가 후속 자료를 받으며, 등록자는 데이터추가 요청서 날짜 이후로 최장 15일에 추가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조

등록승인서 형태의 결정은 이 규정의 일부인 첨부 5에 기재된 예시에 알맞게 등록승인서로 발행될 것이다.

제 12조

등록거절 형태의 결정은 이 규정의 일부인 첨부 6에 기재된 예시 서류에 알맞게 거절서로 발행될 것이며 거절 이유도 동반한다.

2부

가공식품 데이터변경

제 13조

- (1) 데이터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회사는 서류검사실시와 등록과 평가 비용 확정을 위해 식약청장 또는 이사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 (2) (1)에서 말하는 데이터변경 요청은 이 규정의 첨부 7에 있는 서류 예시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 14조

제 13조에서 말하는 요청서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추가 시험을 위해 받음;
- b. 완성을 위해 돌려보냄; 또는
- c. 거절.

제 15조

- (1) 만약 서류 검사 결과가 추가 검사를 위해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 등록자에게 은행 지불 소개서가 발급된다.
- (2) 문장 (1)에서 말하는 은행 지불 소개서는 법령규정 결정에 적합한 비세금 국가수령액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등록과 평가 비용을 포함한다.

제 16조

이미 완성한 가공식품 데이터추가 요청 파일은 은행 지불 증명과 함께, 추가시험실시를 위해 식약청장 또는 이사에게 제출한다.

제 17조

제 16조에서 말하는 추가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데이터추가 승인서 발행; 또는
- b. 데이터추가 거절서 발행.

제 18조

- (1) 회사명 변경, 수입자/유통업자 이름 변경, 상품명 변경, 특정기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변경, 제 17조에서 말하는 데이터변경 승인서 또는 데이터변경 거절서는 최대 10일에 발행된다.
- (2) 포함/첨부 형태의 변경 그리고/또는 영양가 정보 변경 그리고/또는 효능 주장의 추가, 구성 변경, 제 17조에서 말하는 데이터변경 승인서 또는 데이터변경 거절서는 다음을 위한 것이다:
  - a. 특정 가공식품 최대 60일에 발행;
  - b. 기능성 식품/효능 주장이 담긴 식품, 허브가 들은 식품은 최대 45일에 발행;
  - c. 방사선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식품첨가물, 유기농 식품, 다른 식품은 최대 30일에 발행;
- (3) (2)의 c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이란 문장 (2)의 a. b에서 말하는 식품, 방사선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식품첨가물, 유기농 식품 이외의 식품의 종류를 포함한다.
- (4) (1), (2)에서 말하는 기간은 제 16조에서 말하는 데이터변경 요청을 받은 이래로 계산한다.
- (5) 추가시험 결과 데이터 추가 그리고/또는 추가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2)에서 말하는 기간 계산은 잠시 중단되며 데이터추가 요청서 날짜 이후에 계산한다.
- (6) (5)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시 중단되었던 기간 계산은 데이터추가 요청서를 받은 날짜 이래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제 19조

- (1) 시험결과가 제 17조의 a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경 승인의 형태를 띠 경우, 이 규정의 일부인 첨부 8에 기재된 예시 서류와 일치하는 데이터변경 승인서가 발행된다.
- (2) (1)에서 말하는 데이터변경 승인은 승인된 라벨 계획을 동반한다.

- (3) (2)에서 말하는 결정의 예외로, 회사명 변경 또는 수입자/유통업자 이름 변경에 대해서는 데이터변경 승인에 라벨 계획이 동반되지 않는다.
- (4) 이전 데이터가 데이터 변경 승인서 날짜 이래 가장 6개월까지 아직 유통될 수 있는 경우, 프로모션 허가 단계의 가공식품 데이터 변경에서 제외한다.

제 20조

- (1) 추가 시험 결과 제 18조의 (5)에서 말하는 추가 데이터 그리고/또는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 규정의 첨부 9에 게재된 예시 서류와 일치하는 데이터추가 요청서가 발행된다.
- (2) (1)에서 말하는 데이터 추가 요청서 날짜 이후 최대 50일에, 등록자는 추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 (3) (2)에서 말하는 50일의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경우, 등록자는 추가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25일의 기간에 대하여 최대 1회의 기간 연장 요청을 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4) (2)에서 말하는 50일의 기간 내에 그리고/또는 (3)에서 말하는 25일의 기간 내에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등록자는, 데이터변경 거절서를 발급 받으며 요청 파일은 폐기될 것이다.
- (5) 만약 등록자가 제출한 완성 데이터가 (1)에서 말하는 데이터 추가 요청서와 일치하여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록자는 이 규정의 일부인 첨부 10에 게재된 예시 서류와 일치하는 다음 데이터 추가 요청서를 발급받으며, 등록자는 추가데이터 요청서 날짜 이후 최대 15일에 추가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제 21조

- (1) 제 17조의 b에서 말하는 데이터 변경 거절의 형태를 띤 결정에 있어서, 거절 이유와 함께 거절서가 발행된다.
- (2) (1)에서 말하는 거절서는 이 규정의 일부인 첨부 11에 게재된 예시 서류와 일치한다.

제 III장

비용

제 22조

- (1) 가공식품 등록, 가공식품 데이터 변경, 재등록 요청은 법령규정 결정에 일치하여 비세금 국가수령액으로서의 비용을 부담한다.
- (2) (1)에서 말하는 요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이미 지불한 비용은 반환 할 수 없다.



## 제 IV장 의견 경청

### 제 23조

- (1) 가공식품 안전 기준에 의한 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식약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 경청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 (2) (1)에서 말하는 의견 경청 요청은 데이터 추가서 날짜 이래 최대 25일에 제출한다.

## 제 V장 재고

### 제 24조

- (1) 등록 거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식약청장에게 서면으로 재고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 (2) (1)에서 말하는 재고요청은 거절서 날짜 이후 최대 50일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 (3) 재고요청은 필요한 지원 데이터와 함께 구비해야 한다.
- (4) (3)에서 말하는 재고요청에 대한 결정은 재고요청 날짜 이래 최대 150일의 기간 내에 부여된다.

## 제 VI장 재등록

### 제 25조

- (1) 가공식품 재등록은 효력 있는 등록승인서의 유효기간 만기에서 최장 6개월 이전부터 할 수 있다.
- (2) (1)에서 말하는 재등록은 일반 등록 절차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 (3) (1)에서 말하는 재등록 단계에 있어서, 회사는 가공식품 데이터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 (4) 재등록 단계에서 변경을 겪은 등록승인서 또는 등록거절서의 발급은 제 9조의 (1)에 게재된 기간과 일치한다.
- (5) 재등록 단계에서 등록승인서 또는 등록거절서는 변경을 겪지 않는데, 다음과 같다.
  - a. 특정 가공식품은 최대 75일에 발행;
  - b. 기능성 식품/효능 주장식품, 허브가 들은 식품은 최대 50일에 발행;

- c. 방사선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향료 식품첨가물, 유기농 식품은 최대 45일에 발행;
  - d. 향료 이외 식품첨가물과 다른 식품은 최대 30일에 발행.
- (6) (5)의 문자 d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은 (5)의 a,b,c에서 말하는 것 이외의 식품 종류와 향료 이외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 (7) 재등록 시의 평가 기간 계산은 제 9조의 문장 (3), (4), (5)에 기재된 규정에 일치한다.

## 제 VII장 재시험

### 제 26조

- (1) 이미 등록승인서를 받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청장의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 (2) (1)에서 말하는 재시험은 가공식품 안전, 품질, 영양, 그리고 라벨과 관련된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 (3) 재시험 결과는 서면으로 등록승인서 보유 회사에게 송부한다.
- (4) 등록승인서 보유 회사는 (3)에서 말하는 재시험 결과에 적합한 행동/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제 VIII장 경과 규정

### 제 27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제출한 가공식품 등록 신청에 있어서는, 명확히, 식품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No. HK.00.05.1.2569/2004 식약청장령에 기초해 처리한다.

## 제 IX장 맺음 규정

### 제 28조

이 규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할 때 식품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No. HK.00.05.1.2569/2004 식약청장령은 폐지하여 시행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제 29조

이 규정은 시행된 날짜 후 효력을 갖는다.

이 규정법령이 지시하는 것을 공지 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행물에 게재함.

자카르타

2011년 12월 5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약청장,

ttd.

KUSTANTINAH

2011년 12월 5일에  
자카르타에서 법제화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인권부 장관

ttd.

AMIR SYAMSUDDIN

No.811/2011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행물

## 부 록 5

가공식품수입감독 규정





가공식품수입감독 규정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약청

가공식품 수입감독에 대한

No. HK.00.05.23.1455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약청장

규정

인도네시아 식약청장,

식품 안전, 품질, 영양에 대한 No.28/2004 정부규정의 제 40항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수입감독에 대한 식약청장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1. 식품 안전, 품질, 영양에 대한 No.28/2004 정부규정(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107/2004,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관보 No.4244);
2. 비부서 정부기관의 지위, 의무, 권한, 조직 구조에 대한 No.103/2001 대통령령은 이미 몇 차례 개정되어, 최근에 No.64/2005 대통령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3. 비부서 정부기관의 조직 구성 단위와 업무 지위 I 에 대한 No.110/2001 대통령령은 이미 몇 차례 개정되어, 최근에 No.52/2005 대통령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4. 식품 생산과 유통에 대한 No.329/Menkes/Per/XII/76 보건장관 규정;
5. 방사선 식품에 대한 No.826/Menkes/Per/XII/1987 보건장관 규정;
6. 식품첨가물에 대한 No.722/Menkes/Per/IX/88 보건장관 규정
7. 식약청 조직 및 관리에 대한 No.02001/SK/KBPOM/2001 식약청장령은 No. HK.00.05.21.4231/2004 식약청장령으로 이미 개정되었다;

결정한다 :

확정한다 : 가공식품 수입감독에 대한 식약청장 규정.

## 제 I 장 일반 규정

### 제 1조

이 규정에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식품**이란 생물 및 수자원에서 연원한/파생된 모든 것으로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았으며, 인간의 소비를 위한 식품과 음료로서 쓰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첨가물, 식품 원재료, 식품 또는 음료의 준비, 가공 그리고/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른 재료를 포함한다.
2. **가공식품**이란 첨가물과 함께 또는 첨가물 없이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한 결과물인 식품과 음료이다.
3. **식품 안전**이란 식품을 인간 건강을 위협하고 손해를 끼치며, 방해 할 수 있는 생물학, 화학적, 다른 개체 오염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노력이다.
4. **등록승인서(등록동의서)**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식약청장이 발행하는 식품 등록 승인서이다.
5. **식품수입**이란 육지, 해양, 대기를 통한 인도네시아 영토로의 식품수입이다.
6. **매 사람**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형태를 띠거나 그렇지 않은 기업이다.
7. **청장**이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식품 의약품 감독청장이다.

## 제 II 장 가공식품 수입

### 제 2조

인도네시아 영토로 가공식품을 들여오는 매 사람은 가공식품 안전, 품질, 영양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제 3조

- (1)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여오는 가공식품은 법령규정의 결정을 충족해야 한다.
- (2) 문장 (1)에서 말하는 규정/결정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청장으로부터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문장 (1)과 (2)에서 말하는 결정은 또한 원재료, 식품첨가물, 보조제, 식품성분, 다른 재료 수입을 위해서도 효력을 가진다.

## 제 III장

### 조건

#### 제 4조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가공식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본국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안전, 품질, 영양 측면에서 이미 시험하고/하거나 검사하여 통과했음을 증명할 것;
- b. 문자 a에서 말하는 시험 그리고/또는 검사는 공인 실험실로부터의 분석 인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 c. 문자 a에서 말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유통 전 인도네시아에서 안전, 품질, 영양 측면에서 재검사 또는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 제 5조

- (1) 제 4항에서 말하는 조건 외에, 소매포장 유통을 위해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때 가공식품은 청장으로부터의 등록승인서를 보유할 의무가 있다.
- (2) 다음과 같은 소매포장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문장 (1)에서 말하는 규정으로부터의 예외로 인정함:
  - a. 상온에서 7일 미만의 보관기간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또는
  - b. 필요에 의해 소량으로 인도네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경우:
    1. 등록승인서 신청;
    2. 검사; 또는
    3. 개인 소비(자신의 소비).

#### 제 6조

- (1) 제 3항의 문장 (2)에서 말하는 수입 승인은, 인도네시아 영토 안으로 가공식품을 들여오는/수입해오는 신청자에게 부여한다.
- (2) 신청은 서면으로 청장에게 제출하며 규정에 알맞은 비용을 지불한다.
- (3) 매 신청은 1회 수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다.(every shipment)



## 제 IV장 감독

### 제 7조

이 규정 결정 이행에 대한 감독은 식약청에서 실시한다.

## 제 V장 제재

### 제 8조

- (1) 이 규정의 결정에 대한 위반은 법령규정 결정에 적합한 행정 제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2) 문장 (1)에서 말하는 행정 제재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서면 경고;
  - b. 만약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식품 폐기.

## 제 VI장 경과 규정

### 제 9조

이 규정의 확정으로, 이 규정과 충돌하거나 이 규정에 기초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미 있는 가공식품, 원재료, 식품첨가물, 보조제, 식품성분, 다른 재료 수입과 관련된 모든 법령규정들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

제 VII장  
맺음 규정

제 10조

이 규정은 확정된 날짜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공지될 수 있도록 이 규정법령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행물에 신는다.

2008년 3월 24일에  
자카르타에서 결정되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약청장

Dr. HUSNIAH RUBIANA THAMRIN AKIB, MS,  
MKes, SpFK

인도네시아 재무부



# 부 록 6

수입제품검사 규정





수입제품검사 규정

관세청(세관 일반 이사회)

사본

**수입제품 실물검사**

P- 07/BC/2007

관세청장(세관 일반 이사) 규정

관세청장

- a. 세관 분야 서비스 사무소의 감독 강화와 원활한 서비스 단계에서, No.10/1995 세관법에서 3조와 82조 규정을 시행하는데 이 법은 No.17/2006 세관법으로 개정되어, 제품 실물 검사에 대한 규정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 b. 문자 a에서 의미하는 숙고에 기초하여, 수입제품 실물 검사에 대한 관세청장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 1. No.10/1995 세관법(No.75/1995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3612/1995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은 이미 No.17/2006 세관법으로 개정되었다 (No.93/2006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No.4661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 2.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No.52/1987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 3. 수입 분야의 통관 절차에 대한 No.453/KMK.04/2002 재무장관령은 이미 No.112/KMK.04/2003 재무장관령으로 개정되었다;
  - 4. 임시저장소에 대한 No.573/KMK.05/1996 재무장관령;
  - 5. 임시저장소 임명에 대한 No.147/KMK.05/1997 재무장관령;
  - 6. 수입 분야의 통관 절차 실행 안내에 대한 No.Kep-07/BC/2003 관세청장령은 이미 몇 번 개정되어 최근에 No.P-06/BC/2007 관세청장규정으로 개정됨;

수입제품 실물 검사에 대한 관세청장 규정.

### 제 1조

이 청장 규정에서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수입이란 세관 지역 안으로 제품을 들여오는 활동이다.
2. 일반 이사회란 세관 일반 이사회이다.
3. 세관이란 관세 의무 이행 장소로 세관 일반 이사회 서비스 사무소이다.
4. 서류 검사 공무원이란 세관 신고 데이터에 대해 조사와 결정을 행할 권한을 가진 일반 이사회 공무원이다.
5. 제품 검사 공무원이란 실물 검사를 행하고 관세청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또는 세관 부서 공무원에 의해 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일반 이사회 공무원이다.
6. 컨테이너(*container*)란 제품 수송 장치 또는 기구로서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과 일치하는 기술 조건을 충족하는 상자이다.

### 제 2조

- (1) 물리검사란 관세 가격 결정과 분류의 필요에 따라 검사되는 수입 제품의 수와 종류를 알기 위해 제품검사 공무원에 의해 실시되는 활동이다.
- (2) 직능검사란 시행하는 법령을 충족하고 국가 권익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입자의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 기능에 따라(*ex-officio*) 세관 공무원이 실시하는 제품 실물검사이다.

### 제 3조

- (1) 수입 제품에 대하여 실물검사를 할 수 있다.
- (2) 서비스 단계에서의 실물검사는 제품검사 공무원이 행한다.

### 제 4조

실물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a. 광장 또는 임시저장소의 검사 창고, 세관 저장소, 또는 관련 저장소에서;
- b. 관세청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허가를 받은 수입자의 창고/광장에서; 또는
- c. 냉장 포장(*refrigerated container*) 속에 포장된 수입제품 또는 이 같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hi-co scan X-ray*를 통해서.

제 5조

- (1) 다음의 경우에 실물검사를 시작한다:
  - a.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수입 제품이 이미 검사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 b. 임시저장소(Tempat Penimbunan Sementara; TPS)의 고용주가 검사할 제품과 관련된 실물검사 기구와 알맞은 인력을 이미 준비하였다.
- (2) 수입자나 대리인은 실물검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 (3) (1)과 (2)의 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직능검사(ex-officio)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제 6조

- (1) 실물검사는 10%, 30%, 100%의 실물검사 등급에 기초해서 실시한다;
- (2) 실물검사 등급은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 a. 세관 PDE(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를 적용하는 서비스 사무소의 세관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또는
  - b. 세관 PDE(Pertukaran Data Elektronik)를 적용하기 전인 서비스 사무소의 세관 부서장.

제 7조

- (1) 실물검사 시행은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기초해 실시한다.
- (2) 실물검사 시행은 다음에 기초해 결정된다:
  - a. 컨테이너에 포장, 비 컨테이너 또는 벌크; 그리고
  - b. 포장에 번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제 8조

- (1) 서비스 응용 시스템은 포장에서 계산해야 하는 컨테이너 번호와 실물검사를 결정한다;
- (2) 서류검사 공무원 또는 세관 부서장은 번호 매겨진 포장 수입 제품에 있어서 제품 검사 공무원이 검사해야 하는 포장 번호들을 결정한다.
- (3) (1)에서 말하는 포장 번호들의 지명은 관세 가격 결정과 분류 틀에서 세관 부서장 또는 서류 검사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professional judgement*)에 기초한다.
- (4) (1)에서 말하는 지명되는 포장의 총량/총계는 실물 검사 등급 퍼센트에 결정된 양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조

- (1) 컨테이너 포장에 포장된 수입 제품에 대한 실물검사에서 10% 또는 30% 실물검사 등급은 다음과 같다:
  - a. 컨테이너 총량이 5개 또는 적을 경우, 고지된 전체 포장 총합에서 10% 또는 30% 실물검사를 하며, 최소 2개 포장.
  - b. 컨테이너 총량이 5개 보다 많을 경우, 고지된 전체 포장 총합에서 10% 또는 30% 실물검사를 실시하며, 최소 1개 포장.
- (2) 서비스 응용 시스템은 (1)의 실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포장 컨테이너 번호들 또는 번호를 결정한다;
- (3) 수입자는 지명된 컨테이너로부터 전체 포장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 (4) 문장 (1)의 a에서 말하는 지명된 컨테이너의 포장 총합이 검사 등급 퍼센트를 충족하지 못하는/않는 경우, 제품 검사 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다른 컨테이너를 결정한다;

제 10조

10% 또는 30% 실물검사 등급의 비컨테이너에 포장된 수입제품에 대한 실물검사는 고지된 전체 포장수로부터 10% 또는 30% 실물검사이다, 최소 2개 포장.

제 11조

수입 제품에 대한 100% 등급의 실물검사는 고지된 전체 포장에 대한 실물검사이다.

제 12조

- (1) 10% 또는 30%의 실물검사는 다음의 경우 100%가 된다:
  - a.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의 제품 양과 종류가 분명하지 않음;
  - b. 수입제품이 번호 매겨진 포장에 포장되지 않음;
  - c. 포장 번호 그리고/또는 포장 총량이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일치하지 않음;
  - d. 검사된 제품의 번호, 제품 총량(갯수가)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일치하지 않음이 발견된 경우;
- (2) 100% 물리검사는 다음에 대하여 실시한다 :
  - a. 직능 실물검사

- b. 직능 결과 증서(NHI)가 부착된 언급된 수입제품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 c. 벌크 형태의 수입제품.

제 13조

실물검사를 실시할 벌크 형태의 제품에 대하여, 제품검사 공무원은 전문적 지식 (*professional judgement*)에 기초한다:

- a. 포장명세서를 확실히 대조하고, 고지된 것과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일치하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선적초안으로부터 그리고/또는 다른 치수에 기초하여 제품을 확인한다; 그리고
- b. 만약 검사감독의 지시가 있으면 수입제품에 대해 임의로 제품샘플을 취한다 (*sampling*);

제 14조

- (1)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냉장포장 (*refrigerated container*) 속에 포장된 수입제품에 대한 실물검사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
  - a. 저위험 수입자(*low risk importer*)에 대하여 특수 수입자 창고에서, 또는;
  - b. *hi-co scan x-ray*를 통해서
- (2) 관세청장 또는 지명된 공무원은 실물검사가 수입자 창고에서 또는 *hi-co scan x-ray*를 통해서 실시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다.

제 15조

- (1) 실물검사는 한건의 제품 수입 신고에 대해 한명의 제품검사 공무원이 실시한다.
- (2) 제품의 수나 종류가 고난이도를 갖고 있어서 실물검사 실시를 지시하는데 있어 물류 (제품)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경우, 세관 부서 공무원은 1건의 제품 수입 신고에 대해 1명 이상의 제품검사 공무원으로 실물검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3) (2)의 제품검사 공무원 수의 추가에 대해서는 제품검사 공무원 또는 세관 부서 공무원 발의로 제안한다.

제 16조

- (1) 실물검사에서 특정한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할 때, 제품검사 공무원은 세관 부서 공무원에게 다른 집단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2) 문장 (1)에서 말하는 다른 집단이란 필요로 하는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부 집단 또는 외부 일반 이사회를 말한다.
- (3) 수입 분야의 결정에 있어서 실물검사 조건을 정하는 것은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며, 실물검사는 공동 실시할 수 있다.
- (4) 실물검사에 대해 (1)과 (2)에서 말하는 설명은 실물검사 과정 보고 또는 검사 결과 보고서(Laporan Hasil Pemeriksaan; LHP)에 기록한다.

### 제 17조

- (1) 실물검사 실시에 있어서,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 a. 실물검사 실시를 위해 제품을 준비한다;
  - b. 제품검사 공무원의 감독 아래 제품 실물검사 장소에 검사받을 (제품)포장을 꺼낸다 (*stripping*);
  - c. 검사받을 포장을 연다;
  - d. 실물검사를 감독한다; 그리고
  - e. 제품검사 공무원이 요청할 때 제품샘플, 제품사진, 검사받을 제품 규격에 대한 서류를 양도한다.
- (2) 수입자나 대리인이 (1)에서 말하는 규정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 a. 제품검사 공무원은 실물검사 실시가 불가능함과 그 이유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서 (LHP)를 작성한다; 그리고
  - b. 레드 라인 통지서(Surat Pemberitahuan Jalur Merah; SPJM) (발급)날짜 이후 3근무일 안에, 직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18조

- (1) 제품검사 공무원은 제품샘플, 제품사진, 제품에 동반되는 제품 규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는 개인 발의 또는 검사 감독과 일치하는 세관 평가 결정 또는 분류 결정의 필요를 위한 것이다.
- (2) 제품샘플 취합 작업 절차는 이 청장 규정 첨부II에 규정되어 있다.

### 제 19조

실물검사 작업 절차는 이 청장 규정 첨부 I 에 규정되어 있다.

제 20조

- (1) 제품검사 공무원은 이 청장 규정 첨부III에 규정된 수입제품 실물검사 과정 보고를 작성한다.
- (2) 수입자/대리인 또는 임시 저장소 주/세관 저장소 주/관련 저장소 주는 문장 (1)에서 말하는 수입제품 실물검사 과정 보고에 서명한다.

제 21조

- (1) 제품검사 공무원은 실물검사 결과를 실물검사 결과 보고서(LHP)에 입력한다.
- (2) 실물검사 결과 입력 작업 절차는 이 청장 규정 첨부IV에 규정되어 있다.

제 22조

- (1) 제품검사 공무원은 실물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의 양과 종류에 대해 책임지며 실물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2) 제품검사 공무원은 이미 검사된 포장에 머리글자 형태의 기호를 표시한다.

제 23조

이 청장 규정은 2007년 4월 9일에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2007년 4월 5일에  
자카르타에서 결정되었다

청장,

사본은 원본과 일치함

청장 비서

ttd.

u.b.

조직관리부장

**ANWAR SUPRIJADI**

NIP 120050332

Nofrial

NIP 060040274

## 수입제품 실물검사 작업 절차

### I. 수입자 :

1. 레드 라인 통지서(SPJM)를 받는다;
2. 검사 지침과 일치하도록 이미 지정된 장소의 실물검사 실시를 위해 제품을 준비한다;
3. 검사받을 수입제품의 준비를 보고하고 수입신고서(Pemberitahuan Impor Barang; PIB)와 더불어 세관 구비서류를 세관 부서장 부하 직원에게 양도한다;
4. 검사를 수행할 제품검사 공무원의 이름을 통지 받는다;
5. 제품검사 공무원의 감독 아래 제품 실물검사 장소에 검사받을 포장을 꺼내어 놓는다 (*stripping*);
6. 검사받을 포장을 열고 포장에서 물건을 꺼낸다;
7. 실물검사를 감독한다; 그리고
8. 제품검사 공무원이 요청할 때 제품샘플, 제품사진, 검사받을 제품 규격에 대한 서류를 양도한다.
9. 제품 실물검사 과정 보고(서)에 서명한다;

### II.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세관 부서장;

1. 수입자와 수입상품 프로필에 기초하여 검사 등급을 결정한다
2. 제품검사에서 의무 검사할 컨테이너 번호를 결정한다
3. 검사 지침(Instruksi Pemeriksaan; IP)과 레드 라인 통지서(SPJM)를 인쇄한다

### III. 서류검사 공무원 또는 세관 부서장;

1. 전문적 지식(*professional judgement*)에 기초하여 서류검사 공무원 또는 세관 부서장은 포장 번호들을 결정하고 검사자가-세관 평가 결과와 분류 단계에서 제품 실물검사자가 실시해야 하는 특정한 사항들의-검사에 역점을 둘 것을 요청한다.
2. 검사자가 검사 결과 보고서에 제품사진이나 제품샘플 같은 추가자료를 동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검사 지침에 대하여 1번과 2번의 결정을 따른다;
4. 불분명/불완전한 검사 결과 보고서(LHP)는 설명과 함께 돌려 보낸다;

IV. 제품검사 공무원

1. 세관 부서 직원으로부터 검사 지침, 포장명세서 (*packing list*)를 받는다;
2. 포장명세서 (*packing list*)에서 (제품의)수, 종류, 포장 설명을 조사한다.
3. 포장명세서 (*packing list*)에 있어서:
  - a) 포장 번호가 부착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 b) 제품 실물검사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제품의 개수나 제품 종류명이 불분명 할 때),  
제품 실물검사는 등급판정을 받아 100%가 된다;
4. 수입제품이 컨테이너 (*container*)에 실려 있을 경우, 제품검사 공무원은:
  - a) 컨테이너 번호, 크기, 개수, 종류를 검사 지침과 일치시켜 본다;
  - b) 컨테이너 인지(印紙)를 검사하고, 인지 손상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보고한다;
  - c) 10% 또는 30% 실물검사 등급에 있어서, 컨테이너 개수가 5개 또는 적을 경우:
    - i. 검사 지침에 이미 지정된 컨테이너로부터 전체 포장을 꺼내는 것 (*stripping*)을 감독한다;
    - ii. 포장 개수를 세고, 이미 꺼낸(*stripping*) 수입제품의 포장번호와 종류를 검사하고, 포장명세서 (*packing list*)와 일치시켜 본다:
      - a. 꺼낸(*stripping*) 컨테이너로부터의 포장 개수가 검사해야 하는 포장 개수 퍼센트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제품검사 공무원은 검사받아야 하는 포장 개수가 채워질 때까지 꺼내오기(*stripping*) 위한 다른 컨테이너를 결정한다;
      - b. 받은 포장의 개수와 번호가 적합할 때, 개봉한 포장의 개수와 번호는 실물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는(이때의 개봉한 포장은) 검사 지침에 지정된 포장이다.
      - c. 받은 포장이 개수에 있어서는 일치하나 포장 번호가 포장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을 때, 제품 실물검사 실시를 위해 열어야 하는 포장 개수는 100%이다
  - d) 10% 또는 30% 실물검사 등급이며, 컨테이너 개수가 5개를 넘을 때:
    - i. 검사 지침에 이미 지정된 컨테이너로부터 전체 포장을 꺼내는 것 (*stripping*)을 감독한다;
    - ii. 포장 개수를 세고, 이미 꺼낸(*stripping*) 수입제품의 포장번호와 종류를 검사하고, 포장명세서 (*packing list*)와 일치시켜 본다:
      - a. 받은 포장의 개수와 번호가 적합할 때, 개봉한 포장의 개수와 번호는 언급한 컨테이너 속의 포장 전부이다;
      - b. 받은 포장의 수는 일치하지만 포장 번호가 포장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을 때, 개봉하여 제품 실물검사를 실시할 포장의 수는 고지된 전체 컨테이너의 100%이다.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e) 100% 실물검사 등급일 때 :
  - i. 고지된 전체 컨테이너로부터 전체 포장을 꺼내는 것(*stripping*)을 감독한다
  - ii. 포장 수를 세고, 이미 꺼낸(*stripping*) 수입제품 포장 번호와 종류를 검사하고,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일치시켜 본다;
  
- 5.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은(*non container*) 고지된 수입제품의 경우에 제품검사 공무원은:
  - a) 포장 개수를 세어보고 포장 번호와 종류를 검사하며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일치시켜 본다
  - b) 받은 포장의 개수와 번호가 일치할 때, 포장 수와 종류는 제품 실물검사 실시를 위해 개봉하고, 이 실물검사는 검사 지침에 지정된 것과 일치한다;
  - c) 받은 포장의 수는 일치하나 포장번호가 포장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물 검사 실시를 위해 개봉하는 포장의 수는 100%이다
  
- a. 포장명세서를 확실히 대조하고, 고지된 것과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일치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선적 초안으로부터 그리고/또는 다른 치수에 기초하여 제품을 확인한다; 그리고
  
- 6. 벌크 형태의 수입제품의 경우, 제품검사 공무원은:
  - a.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의 단위와 제품설명을 검사한다.
  - b. 포장명세서를 확실히 대조하고, 고지된 것과 일치하는지 제품의 무게와 부피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 치수 지표와 선적 초안으로부터 셈한다.
  - c.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에 대해 임의로 샘플링(*sampling*)을 취한다.
- 7. 검사받을 각각 제품의 종류에서 제품 단위수를 검사한다;
- 8. 제품의 브랜드, 유형, 치수, 기술 정보 또는 규격, 상태를 검사한다;
- 9. 제품샘플 그리고/또는 (만약 있다면) 제품사진에 서명을 한다;
- 10. 이미 실물검사를 실시한 포장에 표시를 한다;
- 11. 검사한 제품의 개수와 종류를 포장명세서(*packing list*)와 일치시켜 본다;
- 12. 제품 실물검사 과정 보고를 작성하고 수입자/대리인 그리고/또는 임시저장소 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한다.
- 13. 검사 결과를 검사 결과 보고서(LHP)에 등록한다.
- 14. 세관 서비스 응용 시스템에 검사 결과 보고서 등록을 실시한다;
- 15. 실물검사 과정보고, 검사 결과 보고서, 포장명세서를 세관 부서 직원에게 제출한다.

청장,

서명.

**ANWAR SUPRIJADI**

NIP 120050332

사본은 원본과 일치함

청장 비서

u.b.

조직관리부장

Nofrial

NIP 060040274



## 제품샘플 그리고/또는 제품사진 취합 작업 절차

### I.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 a. 제품검사 공무원의 요청에 알맞게 이미 검사한 제품에서 제품샘플, 제품사진을 취합한다;
- b. 제품샘플, 제품사진을 제품검사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c. 수입자가 제품샘플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수입제품 실물검사 과정보고의 진술란에 작성한다.
- d. 수입제품 실물검사 과정보고에 서명한다;
- e. 제품검사 공무원이 서명한 수입제품 실물검사 과정보고 제 2장을 받는다.

### II. 제품검사 공무원:

- a.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품샘플, 제품사진 취합에 대해 알린다;
- b. 샘플제품을 취해야 하는 포장을 지명한다;
- c.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서 제품샘플/제품사진을 받는다;
- d. 제출한 제품샘플이 세관 평가와 분류 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품질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입증한다.
- e. 제품샘플에 머리글자표시를 하고 검사날짜를 첨부한다;
- f. 수입제품 실물검사 과정보고에 입력하고 서명한다
- g.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입제품 실물검사 과정보고에 서명할 것을 요청한다;
- h.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품샘플 수합 과정보고 제 2장을 제출한다;
- i. 제품샘플 그리고/또는 제품사진과 제품샘플 수합 과정보고 제 1장을 포장명세서, 검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세관 부서 직원에게 제출한다.

청장,

ttd.

**ANWAR SUPRIJADI**

사본은 원본과 일치함

NIP 120050332

청장 비서

u.b.

조직관리부장

Nofrial

NIP 060040274



8. 설명 : .....

공지한다: 제품검사 공무원  
수입자/대리인\*

.....  
NIP

임시저장소 주\*\*

.....

\* 필요없는 줄

\*\* 임시저장소와 관련될 때 작성

사본은 원본과 일치함

청장 비서

u.b.

조직관리부장

Nofrial

NIP 060040274

청장,

ttd.

**ANWAR SUPRIJADI**

NIP 120050332

## 실물검사 결과 승부 작업 절차

1. 실물검사 결과 보고서(LHP)는 다음과 같은 몇몇 요소들을 신는다 :

- a) 세관신고서(PIB) 번호와 날짜
- b) 실물검사가 실시된 장소와 날짜
- c) 실물검사를 감독한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
- d) 실물검사의 시작과 종료 시간(날짜, 시, 분)과 만약 우천이나 다른 이유처럼 기술적 방해물 때문에 실물검사 시간 지연이 있을 경우;
- e) 100%가 된 검사 등급의 변화와 그 이유를 포함한, 검사 등급;
- f) 제품이 컨테이너(*container*)에 실린 경우, 검사받은 컨테이너(*container*)의 번호와 치수;
- g) 검사받은 수입제품 포장의 개수, 번호, 종류;
- h) 충분하고 분명한 제품의 수와 종류 설명, 다음을 포함하여 :
  - i. 관련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의(단위로 된) 제품의 개수;
  - ii. 관련 제품에의 일반적 언급과 일치하는, 제품 설명;
  - iii. 제품 브랜드와 유형(있을 경우);
  - iv. 제품 용도에 적합한 기술 사양
  - v. 제품 상태(새 것 또는 새것이 아님)
  - vi. 세관 평가와 분류 단계에서 제품의 소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다른 설명.
- i)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 설명 :
  - i. 제품샘플, 제품사진, 제품사양/규격에 대한 서류가 제품과 동반된다;
  - ii. 실물검사가 실험실의 추가 검사를 필요로 한다;
  - iii. 실물검사가 관련기관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 iv. 실물검사는 공동검사의 결과입니다;
  - v. 실물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과 그 이유,
- j) 검사 지령에 게재된 검사 지시에 알맞게 검사받은 제품의 수와 종류에 대한 결론/요약
- k) 제품검사 공무원의 이름과 아이디(NIP)

- 서비스 사무소가(세관이) 세관 PDE(EDI)를 이미 적용하는 경우, 제품검사 공무원은 실물 검사 결과 보고서(LHP)를 서비스 응용 시스템에 입력해 넣는다.

청장,

ttd.

**ANWAR SUPRIJADI**

NIP 120050332

사본은 원본과 일치함

청장 비서

u.b.

조직관리부장

Nofrial

NIP 060040274



# 부 록 7

라벨 영양표시 안내







INFORMASI NILAI GIZI (NUTRITION FACTS)	
Takaran Saji (Serving Size)	35 g
Jumlah Sajian per Kemasan (Serving Size per Container)	6
<b>JUMLAH PER SAJIAN (AMOUNT PER SERVING)</b>	
Energi Total (Calories)	140 kkal
Energi dari Lemak (Calories from Fat)	18 kkal
<b>Lemak Total (Total Fat)</b>	<b>2 g</b>
Lemak Jenuh (Saturated Fat)	0 g
Lemak Trans (Trans Fat)	0 g
Kolesterol (Cholesterol)	0 mg
<b>Protein</b>	<b>6 g</b>
<b>Karbohidrat Total (Total Carbohydrate)</b>	<b>25 g</b>
Gula (Sugars)	10 g
Serat Makanan (Dietary Fiber)	5 g
<b>Natrium (Sodium)</b>	<b>236 mg</b>
<b>Kalium (Potassium)</b>	<b>275 mg</b>
Vitamin A	1250 IU
Vitamin B1 (Thiamin)	0.4 mg
Vitamin B2 (Riboflavin)	0.45 mg
Vitamin B3 (Niacin)	5 mg
Vitamin B6	0.5 mg
Vitamin C	15 mg
Vitamin D	100 IU
Vitamin E	5 mg
Magnesium	20 mg

Energi Total (kalori) memberikan informasi tentang jumlah energi yang akan diperoleh saat dikonsumsi sesuai dengan Takaran Saji nya. Informasi Jumlah kalori dalam produk akan sangat membantu dalam program pengaturan berat badan.

Serat Makanan dan Gula termasuk ke dalam kelompok karbohidrat. Sumber serat yang baik seperti buah-buahan, sayur-sayuran, dan gandum utuh dapat menurunkan risiko terkena penyakit jantung dan meningkatkan kesehatan saluran cerna.  
Namun demikian, batasi asupan harian gula. Meskipun tidak ada nilai % Angka Kecukupan Gizi nya, Departemen Kesehatan menganjurkan bahwa dalam 1 hari konsumsi gula hendaknya tidak lebih dari 2.5 sendok makan per hari

**%AKG (Angka Kecukupan Gizi)** membantu memberikan informasi mengenai kontribusi produk tersebut terhadap kebutuhan harian suatu nutrisi. Jadi misalkan %AKG menunjukkan nilai 50%, berarti kebutuhan nutrisi tersebut sudah terpenuhi 50% bila dikonsumsi sesuai dengan takaran saji.

Umumnya Informasi Nilai Gizi suatu produk berdasarkan pada **SATU kali Penyajian (satu serving)**. Jika mengonsumsi produk tersebut lebih dari satu kali penyajian, maka kontribusi jumlah asupan kalori dan semua nutrisi yang ada dalam produk tersebut akan lebih tinggi.  
Perhatikan! Saat membandingkan informasi nilai gizi dengan produk lain yang sejenis, lihatlah jumlah takaran saji nya. Ingat per 100g berbeda dengan per sekali penyajian (*per serving*)!

**Batasi Asupan Nutrisi Lemak dan Natrium.** Konsumsi lemak, lemak jenuh, lemak trans, kolesterol, dan natrium yang berlebih dapat meningkatkan risiko penyakit jantung, tekanan darah tinggi, obesitas, bahkan berisiko kanker.

Bagian ini memberikan informasi mengenai vitamin dan mineral yang terkandung dalam produk tersebut. Carilah produk-produk yang memiliki kandungan vitamin dan mineral dalam jumlah yang cukup

\* Persen AKG berdasarkan kebutuhan energi 2000 kkal.  
Kebutuhan energi Anda mungkin lebih tinggi atau lebih rendah.  
\* Percent Daily Value are based on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s maybe higher or lower.



# 부 록 8

ML 등록안내서





National Agency of Drug & Food Control  
 Directorate Of Food Safety E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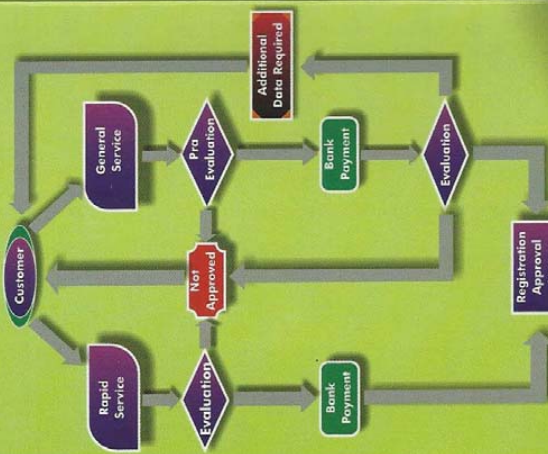
PKP

Deputy of Food Safety & Hazardous Substances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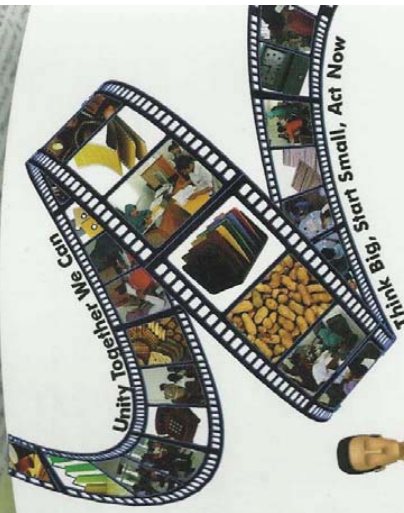
SAVE THE FOOD AND  
 FREE THE PRODUCT  
 FROM HAZARDOUS  
 SUBSTANCES



Process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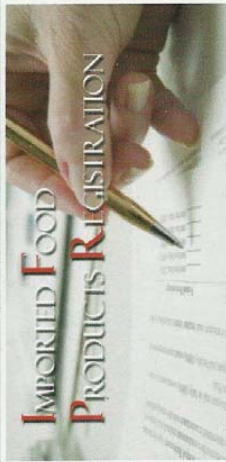
Directorate Of Food Safety  
 Evaluation  
 Building B 3rd Floor  
 Jl. Percetakan Negara No. 23,  
 Jakarta Pusat  
 Phone (021) 42800221 (Hunting)  
 Website : [www.pom.go.id](http://www.pom.go.id)  
 e-mail : [penilaianpangan@pom.go.id](mailto:penilaianpangan@pom.go.id)



IMPORTED FOOD PRODUCTS  
**REGISTRATION**







**REGISTRATION**

1. General Service is the assessment of medium and high-risk food products and food additives,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time and procedure.
2. Rapid Service is the assessment of low-risk food products and food additives with faster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time and procedure.
3. Renewal Service is the re-assessment of food products and food additives in which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approval has been expired. Renewal registration can be processed via Rapid Service or General Service depend on the type of the products.

**ADMINISTRATIVE REQUIREMENTS**

1. Letter of attorney for registration of food products
2. Trade Business License (SIUP) or Importer Registered Number (API)
3. Letter of Appointment / Authorization from company of origin
4. Health Certificate/ Free Sale Certificat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country of origin
5. Audit result of distribution facilities
6. Statement letter explaining relationship among companies (if applicable)
7. Original Registration Approval Letter (for renewal registration service)

**TECHNICAL REQUIREMENTS**

1. List of ingredients
2. Manufacturing process or certificate of GMP/ HACCP/ISO22000
3. Certificate of analysis of finished product (chemical and microbial contaminants, certain food additives, etc) issued by accredited laboratory
4. Information on shelf life
5. Information on production code
6. Label design (color)

**ADDITIONAL REQUIREMENTS**

1. Trademark Certificate (for products with ™ and ® logo on the label)
2. Product Certificate of SNI (for SNI-mandatory products: packaged mineral water, wheat flour, iodized salt, cocoa powder and refined sugar)
3. Organic Certificate (for organic products)
4. Statement on GMO-Free status (for products using soy, maize, potato, and tomato)
5. Statement on Food Irradiation (for irradiated products)
6. Letter of approval for inclusion of halal statement on food label (for products with halal logo on the label)
7. Appointment Letter as Registered Importer for Alcoholic Beverages
8. Other supporting documents

**LABEL DESIGN**

- Information on the label must be stated in Indonesian language label shall contain at least information on:
- a. Name of products
  - b. Net weight or net content
  - c.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 d. List of ingredients
  - e. Registration number (BPOM RI ML)

- f. Information on expiry date
- g. Production code

**REGISTRATION FEE**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48/2010 concerning Types and Tariff for Non-Tax State Revenue applicable to NADFC. Range: Rp. 200.000,- - Rp. 3.000.000,-



**TIMELINE**

Timeline for the issuance of Registration Approval Letter or Registration Refusal letter, based on the type of foods:

TYPE OF FOODS	TIMELINE (MAXIMUM)
Foods for Specific Purposes	150 Working Days
Functional Foods, Foods with claims, Foods with herbal	120 Working Days
Irradiated Foods, Genetically-Modified Foods, Food Additives (Flavours), Organic Foods, Milk and Milk Products, Fish and Fish Products, Alcoholic Beverages	100 Working Days
Food Additives other than Flavours, Other type of Foods	60 Working Days



## 부 록 9

할랄 인증기관 MUI 소개서









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



# LPPOM MUI PROFILE

Halal is My Life



Dr. Ir. M. Amin  
Aziz  
(1989 - 1993)

Prof. Dr. Hj. Aisjah  
Girindra  
(1993 - 2006)

Dr. Ir. HM Nadrattuzaman  
Hosen  
(2006-2009)

Ir. Lukmanul  
Hakim M.Si  
(2010-2015)

Direktur LPPOM MUI Tahun 1989 - 2015  
LPPOM MUI Directors 1989 - 2015

## Sejarah LPPOM MUI

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 (LPPOM MUI), dibentuk oleh MUI sebagai respon atas merebaknya isu lemak babi yang sangat meresahkan masyarakat. Isu tersebut berkembang sangat cepat dan dalam skala yang sangat massif sehingga jika dibiarkan berlarut-larut dapat mengganggu perekonomian nasional, karena banyak produk makanan dan minuman yang dijauhi konsumen.

Untuk menjaga sekaligus meningkatkan ketenteraman batin umat, maka pada tanggal 6 Januari 1989 didirikan sebuah lembaga bernama LPPOM MUI. Ini merupakan tonggak awal MUI memasuki babak baru di bidang penetapan status halal-haram pangan olahan secara konkrit.

Pada tahun pertama kelahirannya, sesuai dengan amanah MUI, lembaga ini mencoba membenahi berbagai masalah dalam makanan sehubungan dengan kehalalannya sehingga dapat menentramkan konsumen muslim khususnya dan konsumen Indonesia pada umumnya serta para produsen secara keseluruhan.

Kini, dalam usianya yang ke-23 tahun, LPPOM MUI semakin menunjukkan eksistensinya sebagai lembaga sertifikasi halal yang kredibel, baik di tingkat nasional maupun internasional. Sistem sertifikasi dan sistem jaminan halal yang dirancang serta diimplementasikan oleh LPPOM MUI telah pula diakui bahkan juga diadopsi oleh lembaga-lembaga sertifikasi halal luar negeri.

Dalam proses dan pelaksanaan sertifikasi halal, LPPOM MUI melakukan kerjasama dengan Badan Pengawasan Obat dan Makanan (Badan POM), Kementerian Agama, Institut Pertanian Bogor (IPB), Kementerian Pertanian dan Kementerian Koperasi dan UKM. Khusus dengan Badan POM, sertifikat halal MUI merupakan persyaratan dalam pencantuman label halal pada kemasan.

Ke depan, LPPOM MUI ingin mengukuhkan posisinya sebagai pemimpin dalam sertifikasi halal dan sistem jaminan halal secara internasional melalui lembaga-lembaga keislaman dunia, seperti World Halal Food Council (WHFC), Organisasi Konferensi Islam, dan Rabithah Alam Islami. ●

## The History

The Asses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the Indonesian Council of Ulama (AIDC ICU/LP POM MUI) had been established by MUI as a response on the 'pork fat' issue which caused social restless. Since the issue spread out fast in massive scale, if it had not been overcome quickly it would widely disturb national economic condition because many foods products had been avoided by our domestic consumers.

To maintain spiritual tranquility of ummah and increase it as well, then, an Islamic institution in halal certification called the Asses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the Indonesian Council of Ulama (AIDC ICU/LP POM MUI) had been established by MUI on January, 6, 1989. And it has been a milestone for MUI in entering a new role in stipulating the status of halal-haram foods, drugs and cosmetics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mandate by MUI, during the early years, this new institution tried to overcome many problems in food affairs, particularly those which are relating with halal status, so it can protect tranquility of muslim consumers especially, and Indonesian consumers generally, and producers as a whole.

And now, after 23 years of its dynamic and progressive works, LPPOM MUI, has exhibited its existence as a credible halal certification institution both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s well. Halal certification process and Halal Assurance System which has been designing and implementing by LPPOM MUI, has also been acknowledged and even been adopted by overseas halal certification bodies.

In the process and implementing halal certification, LPPOM MUI has built cooperative works and agreements with National Agency for Drugs and Foods Control (BPOM),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Bogor University of Agriculture (IPB), Ministry of Agriculture and Ministry of Cooperative and Small Scale Industry. Especially with National Agency for Drugs and Foods Control (BPOM), halal certificate of MUI becomes a requirement in including halal label on product package.

In future, LPPOM MUI will strengthen its position as the leader in halal certification and halal assurance system globally, through international Islamic institution, such as World Halal Food Council (WHFC),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 and Rabithah Alam Islami. ●



## VISI

**M**enjadi lembaga sertifikasi halal terpercaya di Indonesia dan dunia untuk memberikan ketenteraman bagi umat Islam serta menjadi pusat halal dunia yang memberikan informasi, solusi dan standar halal yang diakui secara nasional dan internasional.

## VISION

**B**ecoming trusted halal certification body in Indonesia and worldwide as well, to give tranquility life to muslim society and becoming the world halal center which extends information, solution and halal standard admitted both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 MISI

1. Membuat dan mengembangkan standar sistem pemeriksaan halal.
2. Melakukan sertifikasi halal untuk produk-produk halal yang beredar dan dikonsumsi masyarakat.
3. Mendidik dan menyadarkan masyarakat untuk senantiasa mengkonsumsi produk halal.
4. Memberikan informasi yang lengkap dan akurat mengenai kehalalan produk dari berbagai aspek.

## MISSION

1. Making and developing proper standard in halal auditing system.
2. Conducting halal certification process for products marketed and consumed by muslim society.
3. Educating and realizing the society concern to consume halal products.
4. Providing comprehensive and accurate information as well on halal products and various related aspects.

## Dewan Pengurus / Executive Board

### Dewan Penasehat / Advisory Council

Ketua / Chairman : Ketua Umum MUI Pusat / General Chairman of MUI  
Wakil Ketua / Vice Chairman : Wakil Ketua Umum MUI Pusat / Vice General Chairman of MUI

### Anggota / Member

- Menteri Agama / Minister of Religious Affairs
- Menteri Kesehatan / Minister of Health
- Menteri Pertanian / Minister of Agriculture
- Menteri Perdagangan / Minister of Trade
- Menteri Perindustrian / Minister of Industry
- Rektor IPB / Rector of IPB (Bogor Institute of Agriculture)
- Ketua MUI yang membidangi Komisi Fatwa / Chief of MUI supervising Fatwa Commission Board
- Ketua MUI yang membidangi Komisi Perekonomian dan Produk Halal / Chief of MUI supervising Economic

Sekretaris / Secretary : Sekretaris Jenderal MUI Pusat / General Secretary of MUI

### Dewan Pembina / Advisory Council

Ketua / Chief : Prof.Dr.Hj. Aisjah Girindra  
Sekretaris / Secretary : Drs. H. Zainut Tauhid Saadi, M.Si  
Anggota / Member : • Dr. H. Anwar Abbas, M.Ag. MM  
• Prof. dr. Ir. Tun Tedja Irawadi, MS  
• Ir. Mustofa Zuhad Mughni  
• Drs. K. A. Endin  
• Ir. Chilwan Pandji, M.Apt.Sc

### Dewan Pelaksana / Executive Board

#### Direktur / Director:

Ir. Lukmanul Hakim, M. Si

#### Wakil Direktur / Vice Directors

1. Ir. Hj. Osmena Gunawan
2. Ir. Muti Arintawati, M.Si
3. Ir. Sumunar Jati

#### Bendahara / Treasurer:

Dra. Hj. Chairunisa, MA.

#### Wakil Bendahara - Vice Treasurer:

Drs. H. Zuhdi

#### Kepala Bidang Auditing / Auditing Div.:

1. Dr. Ir. Mulyorini R. Hilwan, MS
2. Dr. Liesbetini Hartono, MS

#### Kepala Bidang Sistem Jaminan Halal / Halal Assurance System Div.:

Ir. Muslich, M. Si

#### Kepala Bidang Penelitian & Pengkajian Ilmiah / Scientific Assessment

1. Prof. Dr. Purwatiningsih
2. Dr. Budiartman Satiawihardja

#### Kepala Bidang Sosialisasi dan Promosi Halal / Socialization & Promotion Div.:

Lia Amalia, ST., SS., MT

#### Kepala Bidang Informasi Halal / Halal Information Div.:

Farid Mahmud, SH

#### Kepala Bidang Standard Halal dan Pelatihan / Halal Standard & Training Div.:

Ir. Hendra Utama

#### Kepala Bidang Pembinaan LPPOM Daerah / Supporting Provincial LPPOM MUI Div.:

Ir. Nurwahid, M. Si

#### Kepala Bidang Organisasi dan Kelembagaan / Organization & Institution Div.:

Dr. H. Akhmad Baidun, M.Si

#### Tenaga Ahli / Experts

Koordinator / Coordinator : Dr. Khaswar Syamsu

Sekretaris / Secretary : Dr. Fery Kusnandar

#### Anggota / Members

- Prof. Dr. H. Norman Razief Azwar
- Prof. Dr. Djumali Mangunwidjaja
- Dr. Hasyim, DEA
- Dr. Rarah Ratih Adji
- Dr. Heni Nuraini
- Dr. Sedarnawati Yasni
- Dr. Mirzan T Razak



## KOMISI FATWA

**K**omisi Fatwa MUI adalah salah satu komisi dalam MUI yang bertugas memberikan nasehat hukum Islam dan ijtihad untuk menghasilkan suatu hukum Islam terhadap persoalan-persoalan yang sedang dihadapi umat Islam. Sertifikasi halal yang dikeluarkan oleh MUI merupakan fatwa tertulis dari lembaga yang memiliki kompetensi dalam memberikan fatwa. Keanggotaan komisi fatwa mewakili seluruh organisasi Islam yang ada di Indonesia, terdiri dari para ahli di bidang syari'ah, dakwah, ulumul Qur'an, dan ulumul hadist.



## FATWA COMMITTEE

**F**atwa Committee of MUI or division in a whole MUI organization, which is functioned to provide religious decrees on muslim life affairs. In this case, the members of Fatwa Committee of MUI explore various aspect related to Islamic laws and jurisprudence to determine a fatwa (religious decree) concering various problems factually faced by muslim people. The members of Fatwa Committee of MUI represent all Islamic organizations in Indonesia experts in sharia, da'wah, Qur'anic sciences and Hadist sc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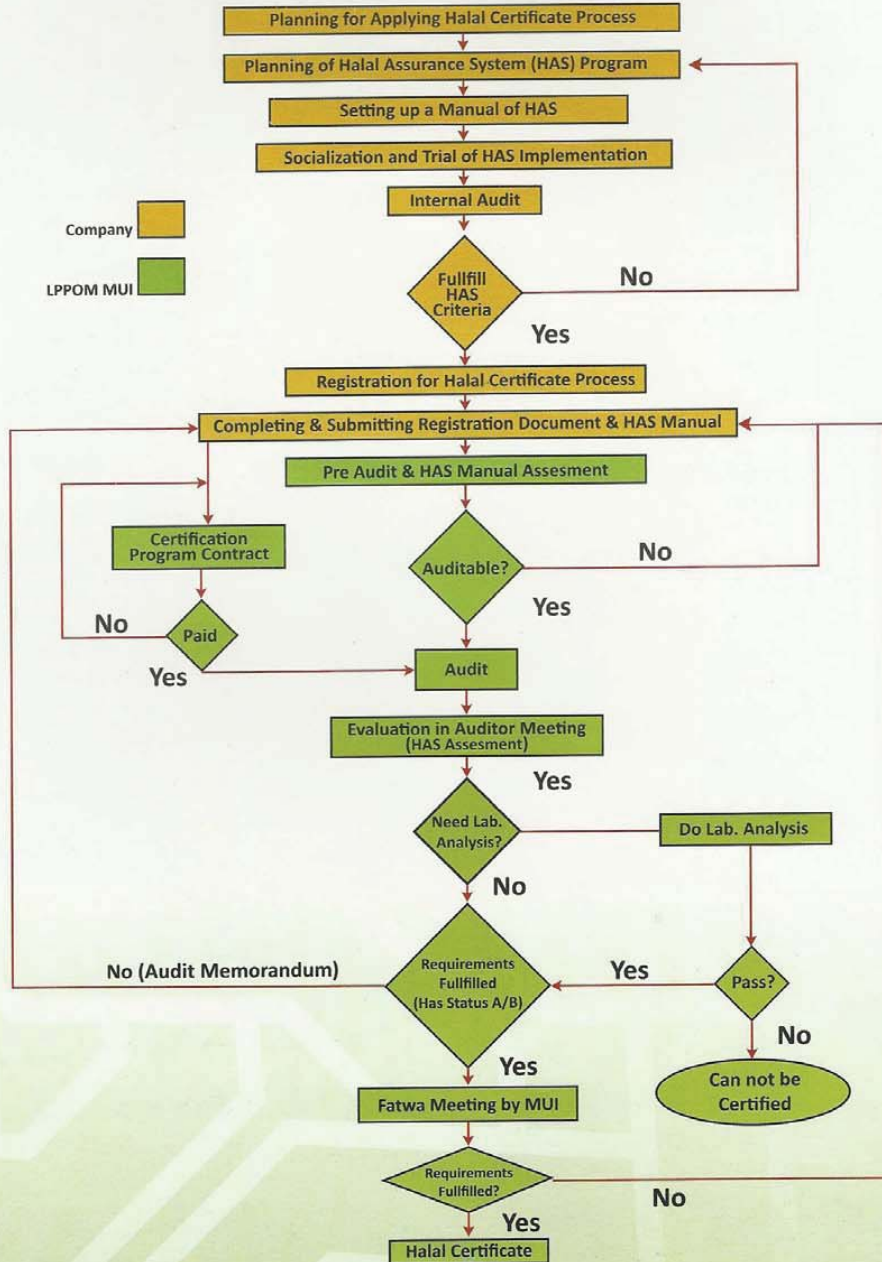
## AUDITOR HALAL

**A**uditor adalah pencari fakta aspek teknologi melalui proses audit. Auditor LPPOM MUI berperan sebagai wakil ulama dan saksi untuk melihat dan menemukan fakta kegiatan produksi halal di perusahaan. Terdiri dari para tenaga ahli di berbagai bidang ilmu, termasuk ahli pangan, ahli kimia, pertanian, biologi, fisika, dan kedokteran hewan yang tersebar di Pusat dan Daerah.

## HALAL AUDITORS

**H**alal auditors are appointed by LPPOM MUI through a process of selection on competency, quality and personal integrity, and then assigned to conduct halal audits properly. The halal auditor acts as representative of ulama (of Fatwa Committee of MUI), and also as the witness on behalf of ulamas themselves, to observe and make fact(s) finding on production process of any products directly in the site plant. Halal auditors of LPPOM MUI consisted of scholars and experts in various disciplines such as food sciences, chemistry, biochemistry, agriculture industrial, technology, biology, physics and veterinary.

## Flow Chart of Halal Certification Process







LPPOM MUI Pusat - LPPOM MUI Headquarter

- Jl. Proklamasi No. 51 Lt. 3 Menteng Jakarta Pusat  
Telp. +62-21 3918917, 3924467 Fax. +62-21 3918890
- Kampus IPB Baranangsiang Bogor  
Telp. +62-251 8358748 Fax. +62-251 8358747
- Ged. Aisjah Center, Jl. P. Asogiri Kav. 93 C1-2 Tanah Baru Bogor  
Telp. +62-251 8662931 Fax. +62-251 8656250

LPPOM MUI Daerah /  
LPPOM MUI of Provincial Levels

1. **LP POM MUI Jawa Barat**  
Jl. RE. Martadinata 105 - Bandung  
Telp. 022-7234148  
Fax. 022-7234148  
email: halal\_mui\_jabar@yahoo.com  
**Perwakilan Bogor:**  
Pusat Pengembangan Islam Bogor  
Jl. Padjadjaran, Bogor  
Telp. 0251-7156678
2. **LP POM MUI Lampung**  
PKUUI/Islamic Center, Jl. Soekarno Hatta  
Rajabasa, Bandar Lampung  
Telp. 0721-251003 0721-786937 0721-  
251003, 0721-786937  
email: murhadi\_burcik@hotmail.com
3. **LP POM MUI DKI Jakarta**  
Mesjid Islamic Center, Jl. Kramat Jaya,  
Koja - Jakarta Utara  
Telp. 021-70972352, 021-44835249,  
021-44835248  
email: mui.jakarta@gmail.com
4. **LP POM MUI Kepulauan Riau**  
Masjid Raya Batam Center,  
Jl. Engku Putri Batam - Kepulauan Riau  
Telp. 0778-469911, 0788-469911  
email: halalmu\_kepri@yahoo.com
5. **LP POM MUI Riau**  
Gedung MUI Provinsi Riau,  
Jl. Jend. Sudirman No. 717  
(Disamping Kantor DPRD Prov. Riau)  
Pekan Baru  
Telp. 0761-38955, 0761-29332  
email: lppommui Riau@yahoo.co.id
6. **LP POM MUI Sulawesi Selatan**  
- RS. Islam Faisal, Jl. Pangeran Pettarani -  
Makassar 90222  
Telp. 0411-853364, 0411-857010  
- Lantai Dasar Masjid Raya Makassar  
Jl. Masjid Raya No. 1 - Makassar 90153  
Telp. 0411-5063787, 0411-313136  
email: jamalsaleh34@yahoo.co.id
7. **LP POM MUI Jawa Timur**  
Jl. Dharmahusada Selatan No. 5 -Surabaya  
60285  
Telp. 031-5965518, 031-5965518  
email: lppommuijt@yahoo.co.id;
8. **LP POM MUI Bali**  
Jl. Pulau Menjangan No. 28 - Denpasar  
80114  
Telp. 0361-238079, 0361-227028, 0361-  
238079 email: aijpn@hotmail.com
9. **LP POM MUI Sumatera Utara**  
Jalan Majelis Ulama No. 3, Sutomo  
Ujung - Medan 20235  
Telp. 061-4514647, 061-4514647  
email: lppommuisumut@yahoo.co.id
10. **LP POM MUI Kalimantan Timur**  
Komplek Islamic Center Air Putih,  
Jl. Suryanata Air Putih - Samarinda  
75124  
Telp. 0541-7074692, 0541-7774074,  
0541-250606  
email: imanatresna@yahoo.com;  
halal\_kaltim@yahoo.com
11. **LP POM MUI Bengkulu**  
Jl. Beringin No. 24 Padang Jati -  
Bengkulu  
Telp. 0736-24707, 0736-22404
12. **LP POM MUI D.I. Yogyakarta**  
Jl. Kapas No. 3 Baciro - Yogyakarta  
Telp. 0274-7820626, 0274-3273811,  
0274-586021, 0274-586021  
email: lppommui\_diy@yahoo.com
13. **LP POM MUI Sumatera Barat**  
Jl. Muhamad Thamrin No. 2 - SumBar  
Telp. 0751-31356, 0751-811599,
14. **LP POM MUI NAD (Aceh)**  
Jl. Soekarno - Hatta Lampeuneurut  
Telp. 0651-22531, 0651-31823,  
061-44394  
email: simpang2mdn@yahoo.com
15. **LP POM MUI Jawa Tengah**  
Jl. Pandanaran No. 126 - Semarang  
50134  
Telp. 024-8413942, 024-8413942  
email: muijateng@yahoo.co.id
16. **LP POM MUI Nusa Tenggara Timur**  
Jl. Soekarno, Kupang
17. **LP POM MUI Banten**  
H. Rodani d/a Kampus IAIB,  
Jl. K. Fathoni No. 51 Pegantungan  
Serang Banten
18. **LP POM MUI Gorontalo**  
Kantor Jurs. Pendidikan Kimia UNG -  
Gorontalo  
Telp. 0735-823939, 0735-831662
19. **LP POM MUI Kalimantan Tengah**  
Komplek Masjid Raya Darussalam  
Jl. G. Obor - Palangka Raya 73112  
Telp. 0536-3308383, 0536-3226849,  
0536-3220982
20. **LP POM MUI Maluku**  
Gedung Asari Al-Fatah Lantai 2 -  
Ambon  
Telp. 0911-312783, 0911-312779  
email: rivai31@yahoo.com
21. **LP POM MUI Kalimantan Barat**  
D.A. Hadi Komplek Masjid Raya  
Mujahidin, Gd. Islamic Center Lt.  
2 - Pontianak 78121  
Telp. 0561-748885, 0561-7513913  
/ 0561-760368  
email: norasrg@yahoo.com
22. **LP POM MUI Sumatera Selatan**  
Jl. Kapten Anwar Sastro No. 1061  
Palembang, Sumatera Selatan  
30129  
Telp. 0711-355640, 0711-355829  
email: lppommui\_sumsel@yahoo.  
com
23. **LPPOM MUI Sulawesi Tengah**  
Jl. W. R. Supratman No. 15 Palu,  
Sulawesi Tengah  
Telp. 0451-458213, 0451-458213  
email: hamzens@gmail.com
24. **LPPOM MUI Sulawesi Utara**  
Jl. WR Supratman No. 10, Manado
25. **LPPOM Sulawesi Tenggara**
26. **LPPOM MUI Papua**  
Jl. Gerilyawan No. 54 A Depan  
Masjid As-Sholihin Abepura -  
Jayapura  
Telp. 0967 - 588935  
Fax 0967 - 588935
27. **LPPOM MUI Papua Barat**  
Masjid Darul Ulum Ambon  
Manukwari
28. **LPPOM MUI Kalimantan Selatan**  
Kompleks Masjid Raya Sabillal  
Muhtadin,  
Jl. Jend. Sudirman - Kalsel  
Telp. 0511-4368092, 0511-454833
29. **LPPOM MUI Maluku Utara**  
Jl. Jati No. 390 C Maluku Utara  
Telp. 0921-23305, 0921-23723
30. **LPPOM MUI Bangka Belitung**
31. **LPPOM MUI Nusa Tenggara Barat**  
Masjid Raya At-Taqwa,  
Jalan Anyelir, Mataram  
Telp. 0370-641108, 0370-634612,  
0370-632014
32. **LPPOM MUI Jambi**  
Ketua MUI Jambi, Jl. Jl. Slamet  
Riyadi No. 17A Rt. 02 Rw. 01 Jambi  
Telp. 0741 22951



## EVEN EVENTS



### LPPOM MUI Pusat LPPOM MUI Headquarter

- Jl. Proklamasi No. 51 Lt. 3 Menteng Jakarta Pusat  
Telp. +62-21 3918917, 3924467 Fax. +62-21 3918890
- Kampus IPB Baranangsiang Bogor  
Telp. +62-251 8358748 Fax. +62-251 8358747
- Ged. Alsjah Center, Jl. P. Asogiri Kav. 93 C1-2 Tanah Baru Bogor  
Telp. +62-251 8662931 Fax. +62-251 8656250

## 부 록 10

수입식품관련 규정(인니어) 링크





수입 및 식품관련 규정/법	관련 링크(인니어)
<b>가공식품 전자등록신청 규정</b>	<a hre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POM/Per%20KBPOM_No%201%20tentang%20penerapan%20pendaftaran%20pangan%20olahan%20secara%20elektronik_net.pd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POM/Per%20KBPOM_No%201%20tentang%20penerapan%20pendaftaran%20pangan%20olahan%20secara%20elektronik_net.pdf</a>
<b>식품법</b>	<a href="http://jdih.pom.go.id/produk/UNDANG-UNDANG/UU%20Nomor%2018%20Tahun%202012.pdf">http://jdih.pom.go.id/produk/UNDANG-UNDANG/UU%20Nomor%2018%20Tahun%202012.pdf</a>
보건법	<a href="http://www.dikti.go.id/files/atur/sehat/UU-36-2009Kesehatan.pdf">http://www.dikti.go.id/files/atur/sehat/UU-36-2009Kesehatan.pdf</a>
소비자보호법	<a href="http://jdih.pom.go.id/produk/UNDANG-UNDANG/UU8%20tahun%201999.pdf">http://jdih.pom.go.id/produk/UNDANG-UNDANG/UU8%20tahun%201999.pdf</a>
식품 안전과 품질 및 영양에 대한 규정	<a hre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PEMERINTAH/PP_No_28_th_2004%20plus%20penjelasan.pd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PEMERINTAH/PP_No_28_th_2004%20plus%20penjelasan.pdf</a>
<b>가공식품 수입 감독 규정</b>	<a hre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POM/HK.00.05.23.1455.pd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KEPALA%20BPOM/HK.00.05.23.1455.pdf</a>
수입제품의 검사 규정	<a href="http://bctembilahan.beacukai.go.id/content/dokumen/20130629142429_p-07bc2007_0.pdf">http://bctembilahan.beacukai.go.id/content/dokumen/20130629142429_p-07bc2007_0.pdf</a>
특정제품 수입조건에 대한 규정	<a href="http://www.google.co.id/url?sa=t&amp;rct=j&amp;q=&amp;esrc=s&amp;frm=1&amp;source=web&amp;cd=1&amp;ved=0CCgQFjAA&amp;url=http%3A%2F%2Finatrade.kemendag.go.id%2Fpreferensi%2Fdownload.php%3Ffiledown%3D153.pdf%26id%3D2&amp;ei=oRxsUv6pM87OkQXNtYHQDg&amp;usg=AFQjCNHZkmsQnIoMYLukIT-2qVjvx4B2nw">http://www.google.co.id/url?sa=t&amp;rct=j&amp;q=&amp;esrc=s&amp;frm=1&amp;source=web&amp;cd=1&amp;ved=0CCgQFjAA&amp;url=http%3A%2F%2Finatrade.kemendag.go.id%2Fpreferensi%2Fdownload.php%3Ffiledown%3D153.pdf%26id%3D2&amp;ei=oRxsUv6pM87OkQXNtYHQDg&amp;usg=AFQjCNHZkmsQnIoMYLukIT-2qVjvx4B2nw</a>
멜라민 식품의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 시행	<a hre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MENTERI/Permenperind_No.20_2012_-1%20melamin%20dalam%20pangan.pdf">http://jdih.pom.go.id/produk/PERATURAN%20MENTERI/Permenperind_No.20_2012_-1%20melamin%20dalam%20pangan.pdf</a>



## 2013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인도네시아)

---

2013년 8월 인쇄

2013년 9월 발행

편 저      한국식품산업협회

발 행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TEL: 02)6300-1397,1398    FAX: 02)6300-1615

---

본 책자의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T. 02-6300-1397,13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